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2020. 02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인쇄일	2020년 5월 12일
발행일	2020년 5월 12일
발행처	노동건강연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 303호 http://laborhealth.or.kr
문의전화	02-469-3976
FAX	02-6944-9055
E-mail	laborhealthh@hanmail.net
디자인	노동건강연대 / 헤이앤컴퍼니

이 보고서는 ‘ 아름다운재단 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2020. 02

연구진 (가나다순)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김세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목차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	6
3. 제도 소개와 선행 연구 검토	8
3.1. 산재보험 제도	8
3.2.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혁 과제에 대한 선행 연구	19
4. 산재 노동자 심층 면담 결과	29
4.1. 산재가 일어나기까지: 이미 내재된 취약성	29
4.2. 산재 발생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42
4.3. 산재 승인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통	75
4.4. 면담 내용 요약과 소결	103
5. 결론	107

<표 차례>

표 1 심층 면담 참여자 특성	7
표 2 초점집단 토의 참여자	7
표 3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현황	9
표 4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범위	10
표 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10
표 6 해외 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신규가입 현황	11
표 7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 기준	13
표 8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 기준	14
표 9 산재보험 보험 급여 지급 현황	15
표 10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이용률	20
표 11 산재 미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 추정액	21
표 12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	26
표 13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	27

<그림 차례>

그림 1 산재보험 관장 고용노동부 기구표	16
그림 2 근로복지공단 본부 조직표	17
그림 3 심층 면담을 통해서 도출한 현재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103
그림 4 심층 면담을 통해서 도출한 현재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가입 지점	108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1. 연구 배경과 목적

산재보험은 직업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으로 초래된 건강 문제, 경제적 손실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다. 휴업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직업 복귀를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에서 산재보험은 1964년 7월 1일부터 노동자 500명 이상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부터 시행되어 현재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장 오래 된 사회보험이다.

일 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손실은 크나큰 경제적 부담일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이기도 하다. 가족의 소득을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의 산재 사망은 가족 전체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한다. 이러한 위협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가입의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한국의 산재보험 제도 초기에는 노동자 500명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만이 의무 가입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2018년 기준으로 약 265만 개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약 1,9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¹⁾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부 업종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임의 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주로 의료기관 치료비 등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치료 중 임금 손실 부분을 보상하는 상병수당 개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²⁾ 장해 발생 시 장해에 대한 현금 보상인 장해급여, 산재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 재활 후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진폐환자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인 진폐연금 등이 있다.

산재보험 제정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여타 사회보험과 달리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데, 이를 통해 사업주는 사업주에

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9.

2)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 급여이다.

게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물론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이는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자본과 노동의 타협의 결과물이다. 사업주에게는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금전적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재해 노동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국가가 관리하며,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가 관장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 등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재결을 위해 행정심판 기구로서 고용노동부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고, 대부분의 행정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1977년 6월에 설립된 근로복지공사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산재보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5년 5월 1일에 발족하였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와 50개 지사,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업무상 재해 판정 및 보험 급여 지급 등 산재 노동자에 대한 요양, 보상, 의료, 재활과 관련한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부과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³⁾ 부과지제도 적용이 곤란한 건설업, 별목업 등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1964년 최초 시행 이래 한국의 산재보험은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며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왔지만, 아직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산재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 혹은 부담 전가이다.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과 질병은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보상 부담이 건강보험 등의 형태로 피해 당사자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다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좌혜경 등(2013)⁴⁾은 연간 최대 7,149억원의 재정부담이 산재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고 추계했고, 김진현 등(2018)⁵⁾은 산재 때문에 연간 최대 3,2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

3)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

4) 좌혜경, 임준, 정원. (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39), 274-296.

수한다고 추정했다.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에서 산재임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한 이들의 규모가 30-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볼 때, 상당한 재정 부담이 산재 노동자 당사자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용장벽의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산재보험 신청 시 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 동료 노동자들의 따가운 시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산재보험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서 아예 신청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신청 시 드는 행정적·시간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포기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 후 요양급여 확정시까지 필요한 의료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레 포기한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제도 개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보장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산재보험의 보장성은 건강보험에 견줘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상병수당 개념의 휴업급여와 직장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하지만 한국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는 산재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병원 진료비 중 산재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담이 적지 않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부분을 일부 급여로 적용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 규모가 작지 않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보장 수준 역시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산재보험 신청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가장 많은 영역은 업무상 질병 인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 역시 산재보험 보장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및 인정 절차, 입증 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업무상 질병 중 상당수가 힘들게 신청한 이후에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 인정이 되지 않아 좌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을 비롯하여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성 암뿐 아니라 이른 바 ‘과로사’로 불리는 직업성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인정 기준과 절차가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질병에 걸린 이들 중 소수만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인

5) 김진현 등 (2018).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자성이 강한 특수고용 노동자 중 상당수가 배제되어 있다. 당사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2008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중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점차 확대되어 2012년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2016년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2019년부터는 27종의 건설기계 조종사가 추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주가 100% 부담하는 통상 조건과 달리 일부의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그렇기에 본인이 원하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산재보험 가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들과 농업,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가사 노동자들에게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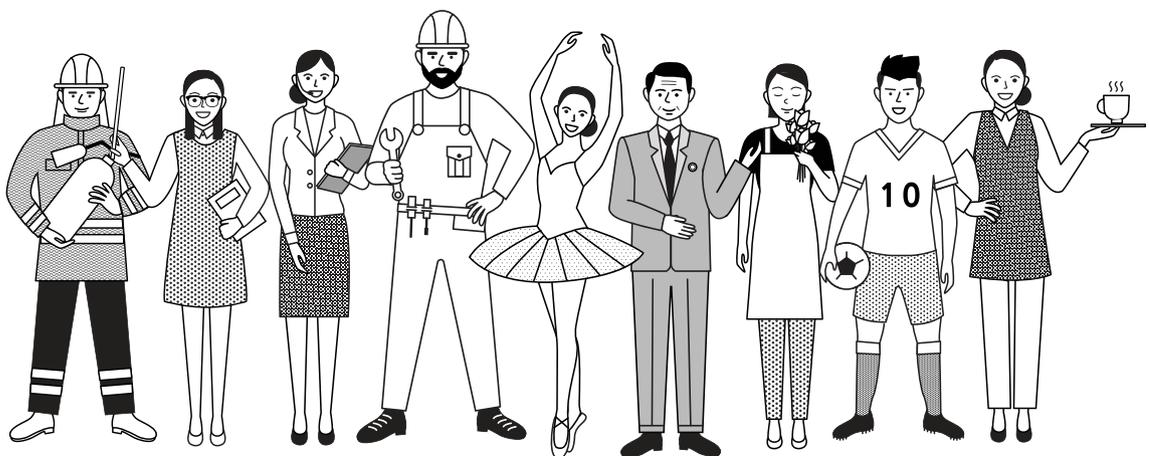
한편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 및 운영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특성상 산재보험 신청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 대상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 신청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행정의 경직성, 반응성 부족 문제도 지속적 민원 대상이다. 산재보험 신청 후 요양급여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 생활비 문제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4년 구성되었던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활동 이후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5개 분야, 42개 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시행된 이래, 산재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학계, 정부, 사회의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당시 충분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줄어들어, 해결되지 못한 산재보험 개혁 과제들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부족하나마 2007년 이후 발간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를 이용 장벽, 보장성, 사각지대, 행정 운영 측면에서 검토,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용 장벽 및 행정 운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산재보험 신청 경험이 있는 산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산재보험 개혁의 상, 목표,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현행 산재보험 제도를 평가하고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을 지양했다.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 했으나 포기한 생생한 사례들을 심층 조사함으로써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현재도 남아 있는 산재보험의 문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를 이용자 중심(patient-centered, people-centered) 관점에서 보다 동적(動的)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도출한 과제들이 전문가들이나 행정가들이 생각하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의 오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불충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잘못된 인식조차 제도의 실재(實在)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산재보험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개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구조화하여 정리한 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단기적 과제들은 그 자체로 근본적 개혁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을 개혁해나가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혹은 마중물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국내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업무 관련 사고성 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 산재보험 관련한 자문과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활동가들과의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이 연구는 환자 혹은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과의 심층 면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연구 참여자는 생계비 지원 사업에 신청한 이들 중에서 사고성 재해를 경험하고, 산재를 청구한 경험이 있으면서,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주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했다. 그렇기에 아예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은 연구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진이 후보로 선정한 이들을 개별 접촉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한 이들에 한하여 개별 면담을 시행했다. 면담에는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는데, 산재 발생 이전 단계부터 산재의 발생과 산재보험 청구, 치료, 재활과 사회 복귀 전 과정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심층 면담에는 총 20명이 참여했으며, 남성 17명, 여성 3명이었고 연령은 32~74세였으며 평균 나이 47.15세였다 (표1 참조). 녹취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 2인이 개별적으로 녹취록을 읽고 테마를 추출하고 범주화한 후, 토론을 통해 범주를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을 마친 후, 현장 전문가들과의 초점집단 토의를 통해 개선안과 추후 연구 과제를 도출했다. 초점집단 토의 참여자들은 <표2>와 같다.



표 1 심층 면담 참여자 특성

ID	이름 (가명)	성 별	연 령	상 병	직 업	재 해 경 위	기 타
1	김래석	남	41	경추폐쇄성골절	(자영업 +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테리어	추락	우울증, 수면장애
2	김호식	남	32	우측 무릎 절단	(사내하청) 용접	추락	현재 역도선수
3	이하식	남	56	고관절골절	(파견직) 분쇄	미끄러짐	산재불승인
4	이유이	여	40	추간관 탈출	건설 현장 자재관리 및 청소	중량물 작업부담	
5	이규식	남	45	중골골절	외벽청소 로프공	추락	
6	김라희	남	50	하지마비	목수	추락	지체1급
7	김주석	남	35	사지마비	렉카 운전	교통사고	
8	이허식	남	56	경추 신경손상, 어깨인대파열	택시기사	교통사고	
9	김하은	남	34	흉골, 갈비뼈 골절	납품 영업	교통사고	
10	김희석	남	74	목 척추를 심하게 다친	(일용직) 배관	추락	장애 4급
11	박희태	남	45	허리디스크	수하물 조업직	중량물 작업부담	
12	이경호	남	46	우측 팔꿈치 상과염	유리제조 생산직	중량물 작업부담	
13	김태현	남	53	골반골절, 견관절 부상	(일용직) 목공	교통사고	
14	이진호	남	43	화상	전기실 내 수배전반	감전	
15	이진희	여	46	발목 인대 파열	CCTV 관제센터 요원	미끄러짐	
16	도환희	남	45	손등 피부 찰과상, 새끼손가락 분쇄	분쇄 컨베이어벨트 아래 청소	넘어짐	
17	김미희	남	69	회전근개파열	병원 폐기물 수거 박스 운반	미끄러짐	
18	김진이	여	50	정강이 외에도 발목, 어깨 등 엘카와 부치면서 다침	마트 캐셔	부딪침	
19	김오규	남	34	아킬레스건 파열	특수체육교사	발을 접질림	
20	이정래	남	49	수은 중독	철거업체 중간관리직	설비 철거 중 수은 중독	

표 2 초점집단 토의 참여자 (가나다순)

-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 문상흠 (안산비정규센터 노무사)
-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
-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정해명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
- 최승현 (노무법인 삶 노무사)
- 하해성 (건설플랜트노조 노무사)

3. 제도 소개와 선행 연구 검토

3.1. 산재보험 제도⁶⁾

3.1.1. 산재보험 적용 현황

■ 당연적용

당연적용이란 사업⁷⁾이 개시되어 산재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다.⁸⁾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해당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하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 누구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 자신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적용 제도 하에서는 설사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것이다. 산재보험은 적용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할지라도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증명되면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고용노동부, 201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9.를 요약, 정리하였다.

7)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자 개인이 가입 단위가 아니고 ‘사업장’이 가입 단위이다. 사업장이 가입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8) 일부 사업은 법에 의해 적용 제외 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가구내 고용활동

③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표 3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당연적용	2,367,186	17,969	2,457,225	18,432	2,507,364	18,560	2,654,107	19,073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한 이들은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자,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장실습생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자는 이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임의가입

임의적용 사업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가입 사업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는 당연적용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 가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주, 해외 파견 노동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등이 있다.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표4>와 같다.

9)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아래와 같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 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표 4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범위

1. 보험 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 수송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1차금속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은 각각 <표5>, <표6>과 같다.

표 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중소기업 사업주(전체)	18,671	17,996	19,886	19,210	21,692	20,965	25,041	24,249
화물운송차주		790		1,153		1,516		1,93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주		111		108		102		158
건설기계 사업주		1,371		1,427		1,950		1,637
퀵서비스업		614		904		1,167		1,846
예술인		410		529		578		647
대리운전기사				3		4		4

표 6 해외 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신규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	노동자
해외 파견 노동자	985	3,478	928	3,520	810	3,088	910	5,171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노동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사업주, 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 화주 단체, 그 밖에 노동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사무를 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보아 징수 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2. 산재보험 급여 현황

■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치유할 때까지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현물로 지급한다. 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노동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 시설이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통해 현물로 보상받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수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에서 급여되는 것이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는 207,456명에게 총 1조 151억 3천 8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산재 노동자가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산재 노동자가 요양으로 인해 노동을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 소득보장 급여이다.

평균임금의 70%가 당해연도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이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또한 위의 모든 경우에 대해 산정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지급액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의거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 급여로,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해당 산재 노동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 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나뉘고,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 방법을 달리한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 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산재 장해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산재 장해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표7 참조).



표 7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 기준

장해등급	연금	일시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90.1%)	평균임금의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79.7%)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70.4%)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61.4%)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52.9%)	869일분
제6급	164일분 (44.9%)	737일분
제7급	138일분 (37.8%)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중증요양 상태인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 급여이다. 이는 장기 요양 중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요양에 따른 부담비용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보험 급여로, 휴업급여보다 보상 수준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그 지급 수준을 달리하며, 제1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의 329일분(평균임금의 90.1%), 제2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91일분(평균임금의 79.7%),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7일분(평균임금의 70.4%)이 지급된다.

■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사망 노동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유족에게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고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유족보상연금

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된다. 기본금액에 가산금액(연금수급권자 및 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데, 그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지 못한다(즉, 유족보상연금의 최고상한선은 급여기초연액의 67%이다) (표8 참조).

표 8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 기준

구분	급여액	가산금액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
1인	52%	5%
2인	57%	10%
3인	62%	15%
4인	67%	20%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증상의 고정으로 요양을 종결한 노동자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2000년 7월에 도입되었다.

■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과거에 예산 사업으로 수행했던 직업 훈련 지원 사업, 원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등을 요양과 재활의 연계 강화를 위해 법정급여화한 것이다.

이러한 급여 항목들 각각과 산재보험 전체 지급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산재보험 보험 급여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36,254	38,513	37,954	39,265	40,791	42,800	44,360	50,339
요양급여	7,616	7,180	7,233	7,406	7,832	8,380	8,437	10,151
휴업급여	7,200	7,242	7,313	7,794	8,169	8,767	9,212	11,074
상병보상연금	1,729	1,952	1,694	1,665	1,626	1,589	1,526	1,541
장해급여	15,092	17,129	16,290	16,672	17,108	17,725	18,326	19,986
유족급여	3,763	4,075	4,419	4,769	5,090	5,387	5,892	6,562
장의비	223	233	249	245	243	249	278	323
간병급여	483	517	552	546	573	561	549	550
직업재활급여	149	185	204	168	150	142	140	148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생략하였음. 이에 총계 아래 칼럼의 합이 총계와 다를 수 있음.

3.1.3. 산재보험 관리운영 조직

■ 고용노동부

2018년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 등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을 위해 행정심판 기구로서 고용노동부 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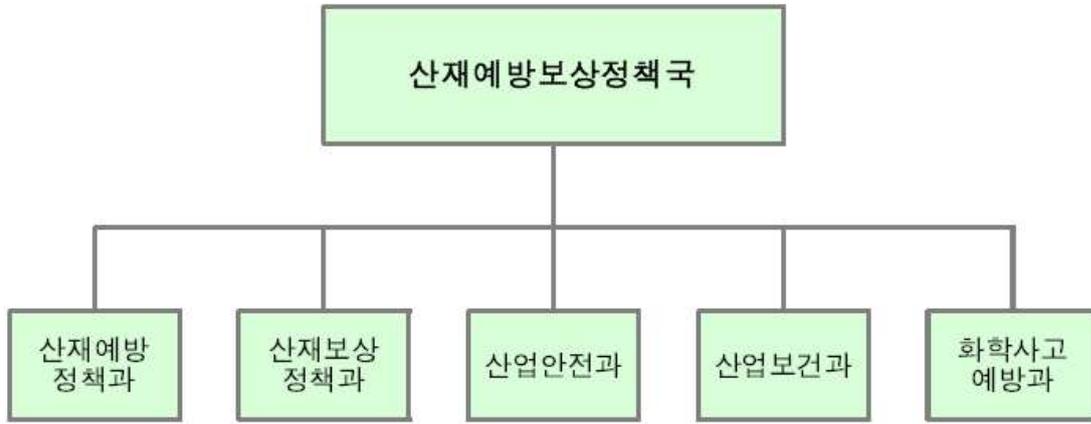


그림 1 산재보험 관장 고용노동부 기구표

■ 근로복지공단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와 50개 지사,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개 인재개발원, 1개 콜센터, 10개 병원, 1개 연구원, 2개 연구소로 조직되어 있다. 업무상 재해 판정 및 보험 급여 지급 등 산재 노동자에 대한 요양, 보상, 의료, 재활의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 고용보험 부과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건강보험공단 징수), 부과지 제도 적용이 곤란한 건설업·별목업 등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림2).





그림 2 근로복지공단 본부 조직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단위(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운영지원부를 두고 있다.

공단 소속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급여 청구를 받으면 해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소음성난청, 석면폐증, 전문 조사를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또는 특별 진찰 결과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COPD 등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인 이내로 하되, 이 중 2/3는 노·사 단체가 추천한 이들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산업 위생 관리 또는 인간공학 기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심의회는 위원장 외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3.2.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혁 과제에 대한 선행 연구

3.2.1. 이용 장벽으로 인한 산재보험 미이용¹⁰⁾

■ 실태와 현황

박지은(2016)¹¹⁾의 연구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을 추정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바 있다.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산재 이용률은 최저 7.0%에서 최고 78.7%로, 연구마다 편차가 컸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평균 24.1%에서 34.3%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10).



10) 이하 내용은 주로 김진현 등 (2018).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요약, 정리하였다.

11) 박지은(2016). 산재보험의 의료보장성 평가 :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표 10 산재 성립 신고 산재보험 이용률

출처	산재보험 이용률	비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2000	30.9%	
노동건강연대, 2001	45.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43.9%	
대한전문건설협회, 2006	36.0%	협회 자체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24.5-39.8%	소규모 현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9a	7.0%	철콘업종 재해 및 공상처리설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9b	13.1%	전문건설업 실태조사(133개 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2010	33.5%	협회 자체조사
원종욱 등, 2010	10-50%	의사 및 환자 면담
홍상자 등, 2011	8.9%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제조업 사업장
신상도 등, 2011	생존자: 11.4-16.1% 사망자: 46.7%	직업성 손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신상도 등, 2012	9-26%	직업성 손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정재훈 등, 2012	57.4-78.7%	재해 및 질병 치료시 처리 방법
주영수 등, 2014	7.2-20.3%	산재위험직종산재 유경험 하청노동자
평균	24.1% - 34.3%	

자료: 박지은(2016)

※ 자료 : 김진현 등(2018)에서 재인용.

김진현 등(2018)은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여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 재정 규모를 추계했다. 거시적 추계(1) 결과, 주상병만 포함할 경우 연평균 1,484억 원, 부상병 포함 시 2,257억 원의 재정누수 금액이 산출되었다. 거시적 추계(2)에서는 산재 은폐율에 따라 연평균 최소 62억 원에서 최대 767억 원의 재정누수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거시적 추계(1)과 미시적 추계의 1/3 수준이다. 미시적 추계 결과 주상병만 포함할 경우 연평균 1,577억 원, 부상병을 포함할 경우 2,504억 원의 재정누수 금액이 추계되었다 (표11).

표 11 산재 미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 추정액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계	평균
거시적 추계(1)	ST상병	30,311	32,853	35,952	99,116	33,039
	주상병 기준	134,974	145,778	164,547	445,299	148,433
	부상병 포함	203,047	221,885	252,202	677,134	225,711
거시적 추계(2)	산재 은폐율 0.056	5,723	6,146	6,669	18,538	6,179
	산재 은폐율 0.210	25,643	27,539	29,886	83,068	27,689
	산재 은폐율 0.287	38,831	41,701	45,255	125,787	41,929
	산재 은폐율 0.260	33,894	36,399	39,502	109,795	36,598
	산재 은폐율 0.424	71,011	76,260	82,759	230,030	76,677
미시적 추계	주상병 기준	156,844	148,659	167,721	473,224	157,741
	부상병 포함	246,317	235,794	268,972	751,083	250,361

※ 자료 : 김진현 등(2018).

산재임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어느 보험으로도 처리하지 않고 ‘일반’ 환자로 치료하는 것은 산재 노동자 치료·재활·직업 복귀의 재정적 부담을 환자 본인이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 재정이 100% 사업주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업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장 책임을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도 아닌 ‘일반’으로 처리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충분한 요양과 재활,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담을 산재 노동자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 산재보험 미이용의 원인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꺼리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신청 시 근로감독 등 각종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산재보험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¹²⁾ 제도 때문에 산재 발생 시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져 산재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역시 산재보험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도 건설업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PQ 심사의 평가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률이 포함되며,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경우 최고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산재 발생 미보고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행위 1건당 0.2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원청이 하청업체 선정이나 평가 시 산업재해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청업체가 원청과의 계약 체결이나 유지를 위해 당사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막는 경우도 흔하다.

한편, 산재보험에는 휴업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충분히 치료, 요양, 재활을 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직장 복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산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빨리 직장에 복귀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 요인 외에도 산재 노동자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꺼리는 경우도 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재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경우 노동자가 산재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밀린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막는 경우가 많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산재 신청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 역시 산재보험이 무과실 주의에 근거해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까지 산재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리 단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12) 현재 개별실적요율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사업, 즉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에서 ①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수지율에 따라 당해 업종 산재보험료율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인하해 주고 있다. 2018년도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통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수는 156,057개소이며, 인상된 사업장수는 14,291개소이다. 제도 설계상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고 짐작하여 지레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많지 않아 산재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산재 노동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산재 신청해 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또한 산재 신청 시 동료 노동자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볼 것을 염려해서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산재보험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 산재보험 이용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우선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을 행정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시 산재보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통계를 활용하여 위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는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¹³⁾

산재보험 청구와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임준 외, 2007).¹⁴⁾ 현행 산재보험 청구 절차와 인정 기준에 의하면 직업성 손상과 질병에 이환된 노동자가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하여 산재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야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공백 기간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좌혜경 등(2013)¹⁵⁾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절차를 없애고, 최초 요양단계부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사후 평가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직업성 손상과 질병에 이환된 환자의 산재보험 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의료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밖에 김진현 등(2018)은 산업재해 통계 자료 개선, 산업재해 조사표 개선, 산업재해 관리 지표 개선, 산업재해 관련 패널티 개선,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산재 은폐시 처벌 강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홍보 강화, 산재보험 신청시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정산 업무 행정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13) 김성희 등(2012).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의 효율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4) 임준 등(2007).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5) 좌혜경 등(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39, 274-296.

3.2.2. 산재보험의 보장성

■ 비급여로 인한 산재 노동자 본인 부담 의료비

한지영 등(2015)의 연구¹⁶⁾는 2015년 6월에 지급된 진료비성 요양비 중 지사별로 조정금액이 10%에 해당되는 내역을 대상으로 총 821건(입원 468건, 통원 353건)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진료비 비급여율은 44.2%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비급여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공단이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면, 산재 노동자의 실제 본인부담률은 32.46%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건강보험 급여와 산재보험 급여 체계가 연동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경우 심사 청구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에 한충현(2015)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료 효과가 인정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비급여 항목, 신의료기술이나 인정비급여(급여코드가 없는 급여) 항목을 발굴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화상 등 본인부담이 많은 특정 상병을 중심으로,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 혹은 경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에 포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로 인해 산재 환자에게 비급여가 발생했다면 해당 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경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산재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활치료 수가와 항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과잉 진료를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 휴업급여의 보장 수준

독일은 규칙적으로 획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보험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한, 그것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세금 등을 공제한 순소득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노동자의 총 임금에 일부 후생비를 포함한 액수의 60~75% 수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노동자가 재해를 입을 당시의 임금,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수준

16) 한지영 등(2015).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근로복지공단.

17) 한충현(2015). 요양급여 범위 확대 방안. 산재보험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

이 다르다. 다만, 일시부분장해로 부분 휴업하는 경우에는 재해 노동자 임금의 5% 이상 삭감 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며, 현재 임금과 재해 당시 임금 차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휴업보상급부로 지급되고, 사회 복귀 촉진의 일환으로 급부기초일액의 20%가 휴업특별지급금 형태로 추가 지급된다.

국내에서 휴업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부분휴업의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초 임금이 국가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한국의 휴업급여는 독일보다 낮고 미국과는 대동소이하하며, 휴업특별지급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 장해급여의 보장 수준

박은주(2019)¹⁹⁾에 의하면, 한국에서 장해 1-7급의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장해 1-3급은 의무수급대상이고, 장해 4-7급에서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

OECD 국가에서 연금 지급이 가능한 최소 노동능력 상실률을 보면, 스웨덴 6.7%, 핀란드, 프랑스, 터키 10%, 헝가리 14%, 이탈리아 16%,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영국 20%, 라트비아 25%, 멕시코 26%(26-50%는 일시금 선택 가능),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30%, 칠레, 슬로바키아 40%,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50% 등이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일정 비율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칠레 (15-39%), 덴마크(50% 미만), 프랑스(10% 미만), 아이슬란드(10-49%), 아일랜드(20% 미만), 이탈리아(6-15%), 멕시코(25% 이하), 포르투갈(30% 미만), 슬로바키아(10-40%) 등이다.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로 환산하여 장해 7급을 60% 정도라고 본다면, 국내의 연금 수급 가능 대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그 범위가 좁은 편이다. 게다가 60-90%인 장해 4-7급에도 노동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선택권 부여는 일부 노동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시금은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일시에 해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향후 산재 장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장해 정도와 실제 노동 가능성을

18) 이광택 등(2009).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노동부

19) 박은주(2019). 제도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산재보험 장해급여 현황 고찰. 근로복지연구원.

검토하여 일시금은 제한적으로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장해연금 산정 기준 소득에 대한 검토, 하한과 상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차액일시금 제도에 대한 검토, 연령별 장해급여 차등 지급 필요성에 대한 검토,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추가급여 필요성에 대한 검토,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급여 간의 중복급여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2.3.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가 되어 있는 사업 혹은 사업장은 <표12>와 같다.

표 12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별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 노동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률이 50%이고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개별적인 문제 제기와 실태조사를 통해 열거식으로 추가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폭넓은 ‘노동자’ 개념으로 규정하자는 제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아닌 제3의 개념으로 규정하여 적용하자는 제안이 존재한다.²⁰⁾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의제가 담긴 ‘가사노동

20) 박은정(20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

협약'이 채택되었다.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을 고려하면,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3.2.4. 산재보험 행정과 운영의 문제

산재보험 행정·운영 상의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 승인, 급여 지급 등의 전 과정에서 관료적 태도로 일관하여 산재 노동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시 승인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것이다.

김병훈(2019)²¹⁾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159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꼈으며 산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개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산재 처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산재 인정 기준 확대, 산재 처리 절차 간소화,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한 노동자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그 다음이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2019)²²⁾ 발표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업무 처리 기간은 2018년에 평균 166.8일이 걸렸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의 처리 기간이 길었다 (표13).

표 13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 (단위: 일)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80.2	90.5	125.3	149.2	166.8
근골격계	66.9	70.1	76.5	84.3	108.7
뇌심혈관계	62.8	66.2	75.6	84.2	103.0
직업성 암	261.7	319.8	391.6	395.8	341.6
정신질병	122.5	155.3	191.6	204.3	179.8
기타	135.8	160.5	224.8	235.9	270.7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 신청 및 판정위원회 심의건수 증가와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21) 김병훈(019), 업무상질병 요양업무 처리기간과 업무과정에 따른 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 노동자 권리 보장,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2019). 산재 신청 및 절차 등 요양업무 제도개선 추진방안.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 노동자 권리 보장,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업무관련성 특진 등의 조치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조사, 유해인자 등 관련자료 확보와 자료 수집, 직업성 암의 경우 외부 전문 조사로 인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2019)²³⁾은 온라인 산재 신청 확대 등 산재 신청 채널 다양화, 의료기관의 산재 신청 대행 활용 강화, 현장 조사 등 재해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동희(2019)²⁴⁾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주치의와 공단 자문 의사의 업무관련성 인정 시 당연 승인 결정, 특별 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당연 승인 결정, 직업성 암 당연 인정 기준의 확대, 법령상 노동자의 권리 및 자료 요구권 등 명시, 서면조사에서 대면·현장 조사 원칙 수립, 심의 판정기관 구성의 변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사업주 진술권 부여 중단, 위원회 심의 공개, 공단 및 전문 조사기관의 행정 서비스의 변화, 재할보상부 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2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2019).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상 질병 개선방안.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 노동자 권리 보장,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4) 권동희(2019), 산재요양 절차, 기간, 공정성과 노동자 참여 확대에 대한 개선 방안.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 노동자 권리 보장,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4. 산재 노동자 심층 면담 결과

산재 노동자와의 개별 심층 면담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산재 발생 이전부터 산재가 발생하기까지, 산재 발생 이후 긴급한 치료적 대응과 산재 청구 과정, 산재가 승인 혹은 불승인되고 나서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4.1. 산재가 일어나기까지: 이미 내재된 취약성

산재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열세에 놓인 이들에게로 전가되며, 노동자 각자가 경험해온 취약성의 궤적이 이러한 조건과 마주친 곳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면담한 노동자들의 다수는 언제 산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작업 환경들을 거쳐 왔고, 이미 과거에도 크고 작은 산재를 경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 개인들의 취약성은 산재 위험 뿐 아니라 이후 산재보험을 청구하고 치료와 생계를 보전하는 과정,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1. 구조적 요인

■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위험 업무의 외주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지위는 산재 위험과 이후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원·하청 관계가 확산되고, 안정적인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면서 이는 급여나 복리후생의 차이뿐 아니라 안전보건 환경에서의 차이도 만들어냈다. 2차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중소, 영세기업 소속의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으며, 한 사업장 안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짧은 공사 기간 등과 같은) 시간적 압박, (안전장비를 구입할 공사 대금 부족 같은)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김호식의 경우 조선소 생산 시스템의 가장 말단에 있는 하청업체를 통칭하는 ‘물량팀’ 소속 용접 노동자였다. 거대한 배의 건조 중 일부 작업을 일정기간 내 무조건 끝내야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안전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줄 하나에 의존해 용접을 하다 추락하여 우측 무릎을 절단하게 된다. 이규식 역시 사기업,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짧은 공사 기간, 적은 공사 대금이라는 조건에서 일하며 적절한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또 실제로 착용한 상태로 일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유가 또한 본인의 산재 경험은 아니었지만, 건설 현장에서 자재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전장비를 다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김호식(32세, 남) || 이게 배잖아요. 몇 천 명이 투입이 돼요. 이 배가 갔어요. 그럼 물량팀은 빠지라고 해요. 빠지면 우리는 다른 데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제도나 A조선소나. 거기에서 출타기로 연락이 오면, 여기 물량 있는데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 들어가던가 아니면 B중공업에서 조선사업부, 해양사업부, C조선, 세 개가 있는데, 해양사업부에서 배 도쿠가 하나 끝나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물량팀이에요.

이유이(40세, 여) || 예를 들어서 안전 고리를 매요. 이 사람들도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FM대로 했지만 삼○직원들이, 그 사람들도 힘들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망을 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온다 그러면 그때 안전모를 얼른 착용하고. 저는 그런 게 일을 하면서 못 마땅했거든요.

이규식(45세, 남) || 다 있죠. 그 안전장치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싫어하고 작업능률이 안 오르니까. 가령 하루에 작업을 끝내야 될 게 하루 반 걸린다든가 그러니까 잘 안 하고 두 번째 이유가 하루 반나절 걸리면 견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단가를 인정을 안 해주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일에 오더를 주는 업체도 정해진 단가 내에서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업주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규식(45세, 남) || (아까 다친 건물이 공공기관이었는데 그런 곳 마저도 그런 시간을 견적에 반영 안 시켜주는 거예요?) 반영이 되죠. 근데 공공기관 최저가 입찰하는데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쉽겠어요? 그거 다 반영해서 10만원 내는데 재들은 5만원 냈으면 5만원 내는데 주는데 그 업체에서 제대로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무방비로 일을 하시는 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니...) 근데 이게 일상이에요. 가령 국가 공공기관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른 관공서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도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도청 시청에서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도청, 시청이면 안전관리 간간하게 신경 써야 할 텐데 거기도 신경 안 써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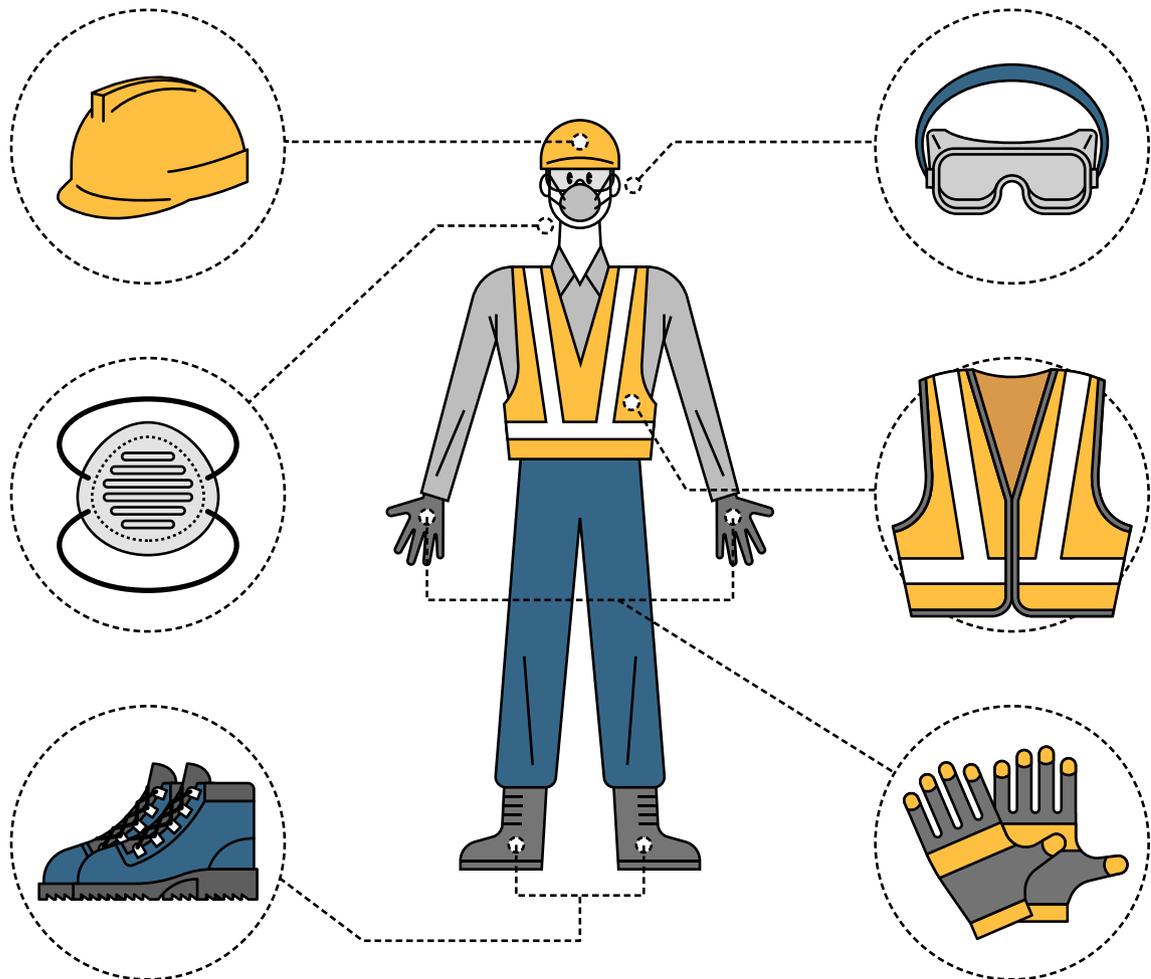
■ 위험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다단계 원·하청 구조

원청 대기업,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원·하청 구조는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맡길 뿐 아니라 위험의 관리와 책임마저도 영세업체와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영세 사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위험을 파악할 지식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노동자 개인이 대처하거나 감수해야 한다.

이정래의 경우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그는 중간 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철거하고 있던 공장에서 극독성 물질인 수은을 다수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수은중독으로 쓰러졌다.

하청업체 대다수가 중소·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지만, 충분한 역량이 있는 원청 기업은 위험에 대한 대비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도환희, 김라희, 이유이 등의 경우도 작업을 중지할 정도의 위험을 인지했지만, 사실상 작업을 중지할 수도, 위험에 대해 회사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노동시장 분절화는 산재 이후의 대응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김래석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사고 당시 소속 기업이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 주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었다. 김주석의 경우도 산재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업체의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산재 이후 회사가 폐업해버림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는 이정래, 김래석 등 영세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



이정래(49세, 남) || 사람들도 몇 명 일하다 쓰러지고. 근데 그때는 이게 먼지가 이렇게 심한가? 그렇게만 계속 알고 있었죠. 다른 분들은 일용직이다 보니까 몸 아프면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의 철거를 통째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지시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아파도 참고 했죠. 저희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이 저희한테 독이 된 거야. 그 A전구 애들이 뭐라고 하나면, 본사에서, 니들이 공장에서 사람이 다쳤으면 얼른 니들이 하도급을 맡겼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 ...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게 수은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그들한테 물어보니까 먼지때문에 그런다고 지들이 이야기해놓고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그래서 처음에 경찰서가서 다 조사 받았고 노동부가서도 조사받았는데 저희는 무혐의로 다 풀려났거든요. 하도급업체들은 무혐의, 발주처하고 원청은 처벌받았고

도환희(45세, 남) || (아 기계를 세웠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세우고 한 걸 못 봤거든요. 엄청 크게 아닌 이상은 기계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정도는 그냥 했거든. 기계 돌아가는 데 아무 이상은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끼니까 나무가 걸리니까 나는 뻘다고 뻘 건데, 회사는 나보고 그거 뻘 놔봐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누가 일부러 거기에 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딴다고?

김라희(50세, 남) || 돈 들어가니까 (차량을) 좀만 더 타봐라, 좀만 더 타봐라. 그리고 나서 뭔가가 오차가 생길 때 그때 해줘요. 타이어도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타이어 내가 이야기 하면 아직은 괜찮으니까 타봐라. 그때도 타이어가 찢어져서 너덜너덜했어요. 저는 목포 가던 길이라, 저는 출장을 많이 나가면 그게 있어요. 장거리 많이 뛰는데 고용자들이 정확한 그게 없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차에 대한 검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유이(40세, 여) || (전날 회식하고) 나 출근 안 하겠다고. 위험해서 출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를 끌고 회사에 가는 거예요. 음주 측정하는 것도 있어서 부는데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근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나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붙어서 나왔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김래석(41세, 남) ||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후산재예요. 나는 후산재가 된다고 하더라고. 난 산재란 걸 몰랐었어요. 원래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1년에 150 들어가거든요. 200 정도 나가요. 그 돈 아낀다고 소상공인들은 잘 안 들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안 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공장이 주물공장이 되게 커요. 당연히 원청에서 해줄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또 아니래요. 저는 억울한 게 남들 말 들어보면 보상도 많이 받고 그런다던데 저는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있지만 그런 것도 못 받는대요. 원청의 원청한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상담도 하고 있고 아는 형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산재가 승인 나서 처리 중이에요.

김주석(35세, 남) || (궁금한 게 있는데 보험 가입은 고용될 때 알잖아요, 내가 보험을 드는지 안 드는지. 그 업체에 소속될 때 보험은 드셨던 거예요?)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거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아요. 들지도 않고.

4.1.2. 노동자 주체 요인

■ 사회적 취약성: 생애 과정에 걸쳐 지속되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자본의 열세

노동시장 분절화와 다단계 원 · 하청 구조의 확산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기 쉬운 회사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산업재해 이후

정보의 부족 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애초에 가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적절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 사업 실패, 신용불량, 이혼을 경험하는 등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의 부재 상황에 직면했다. 개인들의 취약성은 산재 발생 이후에도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가족이나 친구 등 지지·옹호집단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촉진시켰다.

이하식, 김태현, 김래석, 이허식 등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 순탄치 않았던 유년시절을 겪으며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낮은 학력과 미숙련 상태로는 안정적인 안전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김하은, 이진호, 박희태 등의 경우도 사업 실패, 이혼 등 성인기 이후 겪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산재 발생 이전에도 이미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져있는 상황이었다.



이하식(56세, 남) || (다른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 도움은 못 받으시는 상황인가요?) 제가 고아라서. 친척이 없어요. (자녀분들은 아직 돈벌이를 못하시는 상황인가요?) 아들은 이제서 겨우 취업했어요. 취업한지 한 달 되었어요. (광주에서부터 혼자 사셨어요? 광주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고아원 시설에서. (혹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안 계셨나요?) 제가 고아원 들어간 것은 9살부터. (그 전에는)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고?) 이혼 하셨죠. 할아버지 밑에 있다가 9살 때 들어간 거 기억나요. (고아원 들어가시면서 학교는 꾸준히 다니시고? 고등학교 까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불리 손도 벌릴 수가 없고, 자꾸만 서로 대화하기도, 친해지려고 하면 저쪽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니가 고아 출신이니 더이상 너랑 상대하기 싫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서로 친구같은 것도 제대로 못 사귀고 그랬죠.

김태현(53세, 남) ||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입학은 했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강제 자퇴당하고. 사립학교를 가다보니까. 그때부터 사회에 나와서 열네 살 때부터 사회 생활 시작했어요. 남들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 나는 중국집 배달, 빵집에 빵도 만들어봤고, 신문 배달도 해봤고, 닥치는 대로 다 해봤어요.

김래석(41세, 남) || 고등학교 때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유치장에. 친구들 몇 명하고. 한 두 달간 학교를 못 갔는데 잘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서 졸업은 했어요. 졸업을 하고 세상이 쉽게 보였나 봐요. 지금은 많이 후회하는데. 그리고 음주도 많이 해서 사람도 치고, 하여튼간 물질적으로나 뭐나 진짜로 죽고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선원 모집한다는 걸 보고 그래서 배를 타러 갔죠.

이허식(56세, 남) || 그때는 오토바이 면허부터 있었는데 중2 때 학교를 그만둬서 면허가 있어서 피자집, 중국집 같은 데 배달하다가 아는 피자집에서 배달하지 말고 그냥 네가 좀 배워서 관리하면서 가게 좀 맡아볼 생각있냐, 알았다고 해서 맡아 보다가, 평촌, 산본 이런 데 2호점을 냈어요. 거기서 갈래 인천에 있을래 물어서 제가 인천에 있겠다고 해서 혼자 관리하다가, 사장은 평촌으로 내려가고 저는 인천을 맡고 일했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면허 따기 전에 차를 어떻게 사서 조금씩 타고 다니다가, 면허 따자마자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거기서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가 배달 일 하는 건 다 떼고 피자집에서 주방 보다가 다 떼고 좀 있다가 배달대행업체라고 있어요, 부평구 살다가 그걸 차려서 한 2년 좀 넘게 하다가, 애들이 너무 말쑥피우고 그래서 그만두고 팔고나서 렉카차를 하다가 2013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김하은(34세, 남) || 일본에서 한 15년 있다가 그거 정리하고 와서 한국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 까먹었죠. 집에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한 거예요. 택시는 그날 나가면 몇 만원이라도 벌여오니까. 진짜 쌀이 없었어요. (방에 있는 아내 들을까봐 목소리 작게)

이진호(43세, 남) || (그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빚이 워낙 많았고 제 앞으로 압류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을 두 개 세 개 이상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한테 애들을 맡기고, 청주 본가. 제가 태어난 고향. 애들을 맡기고 저는 일만 한 거죠. 아침부터 밤까지. 끝나면 제가 택시 운전도 했다고 했잖아요. 대리도 맡고. 택시도 맡고.

박희태(45세, 남) || 이혼은 2016, 2017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진행은 해야지, 아이들 양육은 해야지, 와이프하고 관계는 안 좋지, 따로 살고 있지, 힘든 거예요,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걸려도 오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했어요. 외국계 항공사를 찾다가 A 쪽 계열사에 B주식회사 일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번 경험 삼아서 현장직이라도 하다보면 그쪽 공항 생리를 알 수 있고 나중에 다른 항공사를 기다라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한다는 개념으로 사실 들어온 거예요.

■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 수용

인터뷰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취약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였

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했고, 일자리 특성상 단기간 근무하는 작업에 종사하거나 오래 근무한다 해도 숙련도가 쌓여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일자리들이었다. 이미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당장 소득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처우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자리(야간, 유해물질 노출 작업 등)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숙련·저임금에 위험한 일자리였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건강상의 장애 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하식의 경우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이후 여러 업체를 전전하다 27, 28세에 고무 롤 다루는 작업에서 통해 손목과 인대를 다쳤고, 이후 일하기 시작한 전자회사에서 천식을 얻었다. 그가 일했던 공장에서는 맨손으로 신너를 다루기도 했다. 청년기와 성인기를 이렇게 보내온 그는 노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다 넘어져 고관절골절을 겪게 된다.

사회적 취약성은 재해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면담한 노동자들은 추락, 교통사고 등 비교적 입증이 쉬운 사고성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재보험 승인 전까지의 생계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 더욱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직종에서 일했거나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 혹은 자영업을 하며 일용 노동을 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자체가 어려웠고, 이들은 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와 요양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 은폐와 ‘공상 처리’라는 회사의 유혹 혹은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회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김라희, 박희태 등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목공일을 하던 이들은 자영업과 건설 일용직을 오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해 들었다. 사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던 김라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고 직전 사보험을 해지한 상황이었고, 박희태의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김래석(41세, 남) || 그걸 선별할 동안 잠을 못 자요. 선별을 하고 다시 어창에다 일리고. 그걸 끝내야 하나 까. 6박 7일 동안 낱밤 까는 거예요. 자면 쪽잠 자고. 고기가 썩으니까. 그때 술도 무식하게 배웠어요. 냉면 그릇에다. 배타고 나서도 한동안 막 술 진짜로 무식하게 먹었어요.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업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한 명이 술을 갖고 날라줘요. 우리 50명, 큰 주전자에 냉면 그릇에다 술을 따라줘요. 처음에는 먹기 힘들지만 먹으면 맛있어요. 힘드니까. 다 마셔요.

김호식(32세, 남) || 군대 전역하고 현장 일만, 노가다, 건설 현장 일만 했어요. 차 도색하다가, 아스콘 깔러 다니고, 그런 힘든 일만 많이 했어요. ... 네. 아침에 손을 들라고 해요. 잔업 할 사람. 거의 대부분, 돈이 안 되니까, 주간만 하면 돈이 안 돼요, 야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주말에도 풀로 나가던가,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래야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하식(56세, 남) || 27, 28살 되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고무제품 원료를 해가지고 사출해다가 찍어요.

리모컨 모양만 찍어가지고 그걸 찍으면 걷어다가 오븐기에 200도 열을 가하거든요. 연기가 심해요 냄새도 심하고, 가루도 심하고. 거기서 1년인가 있다가 보니까 손에 이상한 피부반점이 생겨서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다 거기서 퇴사하고 ... 원래는 일차적으로 천식이 왔어요. 그 후에 합병증이 와서 부신피질이 또 망가진 거야 ... (그게 일 하시는 업종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화학제품 같은 거 다루시다보니까?) 네. 옛날서부터 고무제품을 오븐기에 쪼요. 판판하게 판 만들어서. 그럼 연기하고 냄새하고, 하얀 가루도 나와요. 항상 마스크도 지급을 안 해주니까. 장갑만 줘요. 철판이 뜨거우니까. 2-300도까지 올라가니까. 장갑 두 겹 정도 끼어도 뜨거워요. 그래서 1년 전엔가 보니까 손에 이상한 반점이 생겨요. 피부병 같은 거.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치료 해준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퇴사를 했거든요.

이유이(40세, 여) || 근데 하다보니까 좀 그래도 한 달에 80만원 받다가 200만원 넘게 받으니까 그래도 저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80만원밖에 안 받으셨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회사를 잘 못 들어가요. 뭘 해야...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중퇴해가지고 갈만한 데가 없으니까.

김희석(74세, 남) || (노가다 같은 거 다니셨어요?) 노가다도 다니고 아무 일이나 다 하죠. 청소도 하고. 무슨 뭘 목수 일도 하고. 하라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하다가 박씨라는 그 분이 나를 소개해가지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박희태(45세, 남) || 힘들어요.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했었어요. 알바도 해보고 우체국 가서 정리하는 것도 해보고 노인 분들이 하는 지하철 택배도 해보고, 예전에 경험 안 했던 것들을 일부러 막 하려고 막 하다가, 지인 분이 완구회사 와서 같이 하자고 해서, 그때 나이가 마흔이 넘었으니까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완구회사를 했는데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나와서 공무원을 해볼까, 평생직장으로 할 수 있는, 나이 제한 없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다가 공항근무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경호(46세, 남) || (자격증이나 기술 가진 거 있으세요?) 기술? 유리 재단밖에 없는데 (유리회사는 다시 안 가신다면서요?) 몰라, 힘들면 또 갈 수도 있죠...

이하식(56세, 남) || (그럼 개인적으로 보험이나 실비보험 그런건?) 그런 건 없어요.

이유이(40세, 여) || (사보험은 따로 없으세요? 실비보험이나?) 실비가 있긴 한데요. 제가 들은지가 얼마 안돼요. 돈을 그나마 밀려가지고 돈을 못 내다가 @@ 가는 해지를 하고 새로 했는데 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70%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호식(32세, 남) || (그 기간 동안에 70%의 급여를 받으셨던 거고. 개인보험 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이규식(45세, 남) || (당시에 사보험은 있으셨어요?) 저는... 좀... 사는 게 순탄치 못해서 그런 거 없었어요. 다 해지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김라희(50세, 남) || (선생님 산재보험 말고 개인 사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다 해약하고 다쳤어요. (아.. 왜 해약하셨어요?) 그때 여러 군데 일을 벌였던 게 잘 되지 않아서 한창 어려워졌을 때 그때여서.

이경호(46세, 남) || (산재보험 공단 말고 혹시 다른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셨어요?) 그때 없었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보험 들었어요.

김태현(53세, 남) || 내가 건설 직종이 위험 직업군이라서 상해실비보험을 못 넣었어요. 92년도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위험군 1군이어서 보험을 못 들었어요. ... 상해실비는 못 든 상태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태예요.

4.1.3. 구조와 주체 요인이 만나서 나타난 결과

■ 위험한 작업 환경과 반복적 산재

노동시장 분절화, 다단계 하청구조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취약성이라는 주체 요인의 결합은 개별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 환경’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나타났다. 소음, 미끄럼,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의 1인 근무, 안전장비 미지급 등 심층 면담을 통해 만난 대부분 노동자의 작업 환경은 언제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본인의 왜 위험한 작업 환경에 처해 있는지, 위험한 작업현장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 도환희의 경우 “잘못하면 가는 거야. 그냥”이라고 이야기하며 본인 작업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회사에 자신과 같은 업무를 하다 사망한 동료도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규식은 본인이 일하는 곳이 산재 사고가 자주 일어나 ‘중점 관리 대상’ 업체이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면담 참여자의 다수는 저숙련·저임금 등 노동시장 지위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다고 해도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받기 어렵거나 개선 프로세스 자체가 없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감수하며 일을 하다 보니 이들에게 일을 하다 다치는 것은 드물지 않은 경험이었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오래 근무하며 이른바 ‘골병’이 드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골병은 특정한 재해 사건에서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병원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일을 했던 김미희는 업무량이 점차 늘어나고 무거운 폐기물 운반 작업을 주로 하면서 팔 등이 지속적으로 아팠지만 업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었다. 그는 자비로 병원 치료를 이어가다 결국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특수체육교사인 김오규의 경우도 주말마다 운영하는 등산 교실에서 발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사보험으로 처리하고 일을 계속 이어갔는데, 결국 회사 행사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 도환희의 경우도 자신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해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산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기계에 팔이 끼어 피부가죽이 다 벗겨지는 부상 등 동일한 회사에서 여러 번의 산재를 입었지만 모두 공상 처리 등을 하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김호식(32세, 남) || (비오는 날에 일을 했던 게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소장이 비오는 날 일 시킨 것도 문제고. 원래 지시하면 안 되는 건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하식(56세, 남) || (작은 공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디게 미끄럽겠네요. 그럼 작업을 할 때 신발은 어떤 걸 신으세요? 그냥 운동화. (그런 미끄러운 환경에서 신을 수 있는 작업화나 이런 건) 그런 건 지급을 안 해요. 심지어 마스크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수원역 밑에 가면 마스크 파는데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사가서 작업했어요. (마스크를 항상 본인 돈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지급되는 안전장비는 뭐가 있나요?) 그건 귀마개 하나. (귀마개는 왜요?) 소음. 분쇄할 때 소음이 엄청 심해요. (작업복은 따로 지급되나요?) 네. 처음에는 지급이 안 되더니 1년 있으니까 그때서 주더라고요. (그럼 사복입고 일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죠.

도환희(45세, 남) || 그 밑에 나무 꺾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청소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쌓이고 종이도 많이 쌓이고, 먼지가 엄청 나요. 기계도 엄청 시끄러우니까 귀마개도 해야 하고, 기본이여. 그것이. 사람이 한 번 다치면 몰라. 혼자 일하기 때문에 소리 질러도 안 돼. (시끄러워서요?) 시끄러워서. 잘못하면 가는 거야. 그냥. (목에 손을 대며 죽는 시늉을 한다)

김미희(69세, 남) || 세월이 오래 갈수록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병원이 확장되고 커지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던 거 두 사람이 하고.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러니 힘들어요. 구루마 같은 데는 물통 박스를 보통 서른두 개 실으면 끌기도 힘들어요. 그런 게 제일 어렵지. ... 팔은 원래 아팠지. 계속 일을 하니까. 무거운 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병원에 침도 맞고 그랬지 뭐. 주사도 맞고. 대충 했지. 많이 아프면 약 사먹고.

이경호(46세, 남) || 유리회사는 사고 많이 나요. (그 일(시공)이 주로 위험한가요?) 네, 시공하는 거. 창문이나 바깥에서 달아야 돼요. 사다리차에 유리를 많이 실은 데다 사람도 많이 탔어요, 원래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 사다리차가 완전히 자빠져버렸어, 그 자리에서 다 사망했어요.

이규식(45세, 남) || (이 일자체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일이네요.) 네. 거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전관리 장치 자체도 다양한 것도 아니고, 이 일 자체는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업체에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중점 관리 대상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안 됐다고 보다는... 그거 하는 거보다 돈 보는 게 더 쉽게 때문에. 그거 해서 손해를 가령 천만 원을 본다고 해도 안 했을 때 큰돈을 벌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안전한 장치, 바람이 불어도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하고 작업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나요?) 네. 많아요. 거의 1.5배 (시간이) 늘어난다고 봐야 해요. 1시간 작업할 거 1시간 반. 그렇게 커요. 그 비중이.

김오규(34세, 남) || 주말 프로그램도 등산 교실도 진행했구요. 등산하다가 다치기도 했거든요. ... 그거 다치고 메르스가 터져서 다행히도 복지관이 15일 동안 문을 닫아서 제가 충분히 쉬었거든요. 이용인들이 출입하면 안 되니까 15일 동안 문을 닫고, 직원들만 출근하고 행정 업무만 한 거죠. 그때 근데 그 이전에 등산 교실 진행하다가 발을 접질리고 애들 데리고 다니다가 발을 크게 다쳐서 그냥 자보힘으로 수술하고

■ 산재가 발생한 구체적 정황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사고 당시의 상황은 직업과 업무에 따라 달랐지만,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위험 작업 환경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은 단순히 위험한 장소와 기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회사의 안전관리 미비와 안전장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이하식의 경우 이번에 넘어져 크게 다치기 전에도 이미 몇 번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미끄러운 현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김호식의 경우도 비오는 날에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작업이 중지되어야 하지만 공사시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작업을 강행했고, 결국 추락 사고를 겪었다. 이유이의 경우도 2인 1조 근무에 혼자 일하면서 무거운 릴선을 들다 다치게 된다. 김희석은 식사 도중에 빨리 일을 마쳐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작업에 임했다 맨홀로 추락한다.

경제적·시간적 압박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다 크게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하식의 경우에는 원료를 흘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자루를 잡고 있다가 큰 부상을 입었고, 박희태도 본인이 옮기던 고객의 여행 가방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버티다 더 큰 부상을 입게 된다. 또한 차량 노후화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급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다.

김래석(41세, 남) || 미팅 끝나고 내려가려는데 지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할 틈도 없이 지붕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면서 저랑 저희 직원이 떨어졌죠. 그래서 2년간은 경추 4,5,6인가 여기 뼈가 50개 있는데, 2년간은 전신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김호식(34세, 남) || 원래 조선소는 비오는 날은 작업이 중지가 돼요. 철판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전만 하고 들어가자 했는데 자재 올려다놓고 계속 올려다놓는데 거기서 미끄러진 거예요.

이하식(56세, 남) || 거기도 똑같이 제품을 사출하잖아요. 사출하면 불량이 나올거 아니예요? 기계에다 찍으니까. 그걸 건어내서 분쇄를 해요. 잘게. 그걸 다시 푸대에다 담아요. 그 푸대를 손으로 재봉질해가지고 쌓아놓으면, 재생원료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빼 놓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고서 제품 분쇄하고 나서 자루에다 담았어요. 재봉틀로 지익하고. 운반하면서 밖에 쌓아놓는데 가지고 갔는데, 쌓아올리면서 갑자기 싹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끌어안고 주저앉아버렸어요. ... 거기는 항상 원료통이 있기 때문에 원료가 항상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원료 담은 사람들이 잘 정리하고 쓸어내야 하는데 안 쓸어내면 미끄러워요. 몇 번 넘어졌거든요.

이유이(40세, 여) || 2018년 12월 28일날 릴선이 있어요. 릴선이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무게인데요. 그걸 하나씩 나르다가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때 사고가 났어요.

이규식(45세, 남) || 이 일 자체가 워낙 위험한 일이잖아요. 가벼운 사고들이 종종 나긴 하는데 제일 많이 나는 사고 중에 하나를 제가 당했는데, 떨어지는 거, 낙상. 같이 그날 현장에 동료하고 두 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5월달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거든요. 봄철이라. 바람이 세게 불면 고층 건물은 바람을 엄청 많이 타요. 고층에서 바닥까지 줄을 내려야 하는데, 타고 내려올 줄을, 바람이 불면 줄이 밑에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꼬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제가 해야 될 작업, 줄 자체를 같이 있던 동료가 내려줬어요. 자기가 할 건 자기가 직접 다 세팅을 하고 작업 준비를 하는데 바쁘면 서로서로 오래 일하다보면 도와주고 해요. 서로를 믿는 거죠. 같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믿어야 되니까, 그 친구가 내렸던 줄이 짧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고, 이 일이라는 자체가 급하게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쪽의 일이라, 내려오다가 바람 불다가 인지를 못하고 2층 정도, 3층에서 2층 내려오다가 줄이 짧아 버리면 사람이 중력에 의해서 점점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작업을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쪽 떨어지면서. (3층 높이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네. 2층에서 3층 높이에서. 그렇게 된 거죠.

이규식(50세, 남) || 충주에서, 교회 식당 신축 공사인데, 무리하게 겨울에 일을 시작하게 돼서 좀 위험하긴 했었죠. (겨울이 많이 위험한가요? 그런 일을 하기에?) 그 식당 건축 재료가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이기 때문에 기본 골조가 철골조이고, 겨울이면 철이 얼어서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지붕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살얼음처럼 얼어있는데 미끄러져서 떨어졌죠. (어느 정도 높이에서요?) 한 4미터 정도

김희석(74세, 남) || 아침, 식당에서 밥 먹는데 A라는 부장님이 와가지고 이 이미 설치하는 기초 배관, 그게 뭔가 하면 맨홀 설치한 자리죠. 맨홀 설치한 자리. 거기다가 거꾸집을. 이미 거기다 갖다 놔죠. 갖다 놔는데 그걸 내리라고 해서, 빨리 내려서 거기다 설치하라고 해서. 어제도 비오고 아니 어제도 날이 흐리고 비가 약간씩 오고 오늘도 날이 흐리니까 이걸 빨리 설치해서 맨홀을 얹히고 공구리를 쳐야 거기에 물이 안 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게 오늘 비 오기 전에 어떻게든 이걸 끝내라. 그래서 내하고 B씨가 밥 바빠 먹고, 아침밥 먹고 7시 전에 현장에 도착했죠. ... 이게. 여기 와서 그래서. 나는 이 첫물에서 하고 이 사람은 두 번째 머리서 하는데. 여기 거꾸집이 일곱 개, 이쪽이 일곱 개죠. 안에 것이 석 장, 밖에 것이 녀 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쪽까지 하게 되면 7개 쪽지는 조그만 개. 거기다 내리라고 해서 거기다 다 내리고 내가 맨 마지막 장을 내리다가 딱 여기가 깊지 않아요? ... (맨홀에 빠지신 거예요?) 맨홀에 떨어졌죠. ... 힘 쓰는 충격을 멈추질 못했죠. 발이 미끄러우니까 멈춰도, 뒷발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 고리가, 배관에 뒤에 박았죠. 박고 그 다음에는 목이 그러니까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허식(56세, 남) || 2013년 5월 13일인데요. 5월 12일에 만리포로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13일 낮에 인천에 도착하고 나서 여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차에서 잤어요, 저희는 24시간 대기라, 차에서 자다가 초저녁부터 콜이 나와서 출동가고 출동가고 하다가, 저녁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1시인가 좀 넘어서부터 콜이 떨어져서 거기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출동하다가.

박희태(45세, 남) || 그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있는데, 제가 물건을 넣고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작업자가 컨테이너를 빼버린 거예요, 제가 백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휘청한 거죠,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백이, 버티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서 터진 거예요.

이진호(43세, 남) ||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문 닫고 돌아서는데 당연히 패드가 있으니까 턱이 있잖아요. 바닥이 있고 패드가 있고 애(수배전반)이 있으니까 그 사이가 턱이 있어요. 이만큼씩. 사람 발한 발짝 정도 되는. ... 그런데 제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문 닫으려고 몸을 돌아설 때. 패드에서 발이 접질리면서 미끄러진 거죠. 그러면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바로 밑에 유도전류가 흐르거든요. 그게 22,900볼트거든요. 거기에 손이 딱 스쳤어요. 오른 팔이. 스쳐서 지지직 타고 들어와서 쭉 다 태우고, 등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머리로 터져나가고 손이 터져나가고.

도환희(45세, 남) || 거기 인저 그거 나무가 분쇄하다가 그런 거지. 끼어서 안 나와서 톱으로다가 잘랐어요. 이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거기서 망치로 쳤어요. 안 나왔어. 정 같은 거 비쭉한 걸로 치다가 빨려 들어간 거. (손이요?) 네.

김미희(69세, 남) || 10개씩 한 다발. 그거를 이제 두 개씩 하면 좀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10개를 들고 올라가려는데 밑에 바닥에 나무 판을 놓아서 높여놓고 갖다 놓거든. 나무판자를 갖다 놓고. 그래서 돌아서서 올라가려는데 그 다이에 우측 발이 걸려가지고 박스를 안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 팔을 짚고 넘어졌는데 어깨가 정통으로 확.

이정래(49세, 남) || 네. 그런 수은이 쏟아지는 기계가 150대가 있었어. 이만한 기계인데 모터같이 생겼어요. 그 기계가 한 150대에서 수은이 쏟아지는데 그걸 그냥 수은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건 상관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산소절단기로 자르다보니까 수은이 녹아서 기화가 되잖아요? 기화가 되니까 그걸 급속도로 저희가 마셔버린 거죠. 그래서 급성 수은 중독이 된 거죠. 한 예로 거기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틀 만에 바로 죽더라고요. 그 당시는 애가 쥐약을 먹었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위험하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한 경우,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는 했다. (회사가 만들어놓은) 위험한 환경이라는 구조적인 요인보다 최종적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실수를 한 노동자 탓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실제로 치료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심지어 기업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택카 운전을 하는 김주석의 경우 노후된 차량으로 빗길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추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 모두에서 재해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된다. 건설 노동자인 김태현의 경우에도 본인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다단계 하청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요인, 개인의 노동시장 취약성이 만나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 직면하고 그곳에서 산재를 당하지만, ‘무과실책임주의’라는 산재보험의 원칙은 사라지고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이다. 이는 이후 산재보험 접근성 (근로복지공단 신청 과정과 질병판정위원회 등),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김주석(35세, 남) || 빗길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좀... 잘못이 크긴 하죠. 블랙박스가 없다보니까 속도는 고속도로 거의 끝무렵이었으니까 100정도 나왔는데, 앞 차를 추돌했는데 제가 빗길에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한 100m 전에 밟았는데도 안 먹히더라고요. 차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100m 전에 밟았는데 타이어가 미끄러지니까 앞차를 추돌했는데 그 앞차의 앞차들이 정차가 되어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탕 탕 탕 이렇게 갔는데 그 앞차들이 임의적으로 박았는데 저로 인해서 추돌해서 탕 탕 탕 탕 박았는지 증거가 안 나오더라고요.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이 제 과실로 끝났죠.

김태현(53세, 남) || 건설직은 내가 출근을 안 해버리면 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공정이, 엘리트 직업, 그러니까 계단 시공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단 시공이라고 하면 건설업계 목수 중에 최고 목수라고 이야기해요. 계단을 시공하고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 다 쓸 날짜는 회사에서 정해져있고, 내가 하던 공정은 얼마만큼 남아 있었고, 그래서 늦어도 출근은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카풀 시간 맞추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를 하고 가는 와중에 반대 차량하고 부딪쳤어요.

4.2. 산재 발생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4.2.1. 산재 발생 직후 긴급 대응 단계

■ (응급)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쳤든 다른 생활공간에서 다쳤든 적시에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응급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자원의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라희의 경우 추락 이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한 후, 수술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 병원에서 받아야 했다. 도환희의 경우에도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큰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런데 그 곳에서도 응급처치만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접합 전문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격차는 화상을 입은 이진호의 사례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이진호의 경우 구미에서 감전으로 인한 화상 사고를 당했으나 가장 가까운 화상 진료기관이 대구에나 있었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후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고 직후 제 시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도환희의 경우처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김라희(50세, 남) || (구급대가 왔을 때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바로 서울로 가신 거예요?) 아니오. 충주에 가서 시간을 다 보내고 (허비하고) 결국 충주 가서 수술을 하게 됐죠. (큰 수술은 충주에서) 네.

이진호(43세, 남) || 그때 당시 119 대원이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는 거죠. 그때 당시 대구가 제일 가까웠어요. 서울하고 부산이 원래 화상 전문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살리고 봐야 하니까. 멀리 가면 죽을 거 아닙니까? 대구는 얼마 걸리냐고 했더니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환희(45세, 남) || 처음에 왔을 때는 B병원 갔는데 애들이 여기서 못 한다고 빨리 C병원 아니면 큰 병원 D대 병원 가라고, C에 갔더니 C는 붕대 풀기 전에, 아 가기 전에 주사 두 대 맞고 소견서 써 갔거든요. 그래서 C병원이 F병원 가라고. 처음에는 뭐 걸음으로 보면 괜찮게 보이지. 아마 조금 심하니까 이거 피부이식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근데 여기 손가락은 그때만 해도 의사도 처음부터 판단 못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웃긴 게, 이삼일 있으니까 여기가 (새끼손가락부분) 새까맣게 죽더라고.

■ (응급)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사고 이후 산재 노동자가 겪는 치료 접근성 문제는 ‘의료의 질’에서도 드러난다. 산재 노동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치를 받지 못해서 수술 지연, 통증 지속, 합병증 발생과 상태 악화 등을 경험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산재나 산재 노동자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산재보험 신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환자에게 적합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등 낮은 반응성(responsiveness)을 보이는 경우도 흔했다.

이하식의 경우 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되었으나 회사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는 타박상으로 오진되어 진통제 처방만 받았다. 이후 상태가 심각해져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여러 병원을 거쳐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김희석의 경우는 맨홀에 추락했지만, 고령과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해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진이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부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이후 산재 신청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의 비협조는 당사자를 매우 힘들게 했다.

김호식(32세, 남) || 지인 분이 산재 노동자였는데, A대 한 번 가볼래?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선 할 수 있대요. 수술해서 지금은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내 삶이 그전보다 너무 행복해요. 좀 더 빨리 수술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하식(56세, 남) || (처음에 다치셨을 때 응급조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지. 주저앉아 있다가. 이틀인가 지나니까 막 통증이 오더라구요.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회사 바로 앞에 지정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X레이 찍으니까 타박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병원 이름은?) B병원. 타박상이라면서 진통제 주었죠.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통증이 좀 더 심해지면서 이상하게 걸음걸이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C병원으로 가니까 X레이 찍고 CT 찍으니까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구요. 왜 사람이 이 정도 될 때까지 뭘했냐고. 더 이상 놔두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고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지도 모르니까 수술하자고 하더라구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들하고 상의해봤어요. 한 번 더 큰 병원 가서 알아보자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던가 하자 해서 C병원으로 갔어요. (C병원, 아까도 다니셨다는 그 병원이요?) 네. 거기 가서 다시 X레이 찍고 확인하니까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구요.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걸음도 못 걷고 다리 절단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장 돈이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수원의료원 그 쪽으로 한 번 가보라고 하더라구요 의사 선생님. 거기서 상담하니까 일단 응급수술 들어가고서 국가가 보증한 다음에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1월 8일에 응급수술 들어갔어요. ... (그때 CT 바로 찍어보고 심각하다는 거 알고 수술을 빨리 했으면 많이 나아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B병원에서도 그러더라구요. 처음에 이렇게 심해질 정도 되셨냐고. 처음서부터 진단이 잘못 되었다고.

김희석(74세, 남) ||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술한 걸 다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수술했잖아요. 내가 지금 대단히 후회돼요. Z가 이런 목 수술이나 한 번이나 해본 사람이 이렇게 했는 건지. 이 엄중한 수술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그 병원(D대병원)에서는 이 목의 수술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 수술을 할 때, 안에다가 이런 걸 대가지고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E병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침대에 ‘산재’라고 다 써놨어요. 산재라고 써놓고 수술하면서 돈은 다 받아놓고는 지금 와서는 산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놈이 어딴어요? ... 근로자들 열이 다쳤으면 하나나 둘은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당한 사람이 있겠죠? 다 의사들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다 이렇게 써놔서. 이런데에 대해서... 벌써 이런 문제 나 나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리부터 방지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대단히 나빠요 사회가. 이

사람이 도덕성이 문제 있고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의사질을 하는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는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써주는 것도 다 영어로 써줘요. 우리들은 못 알아보게.

김진이(50세, 여) || (드레싱만 하고 사후 처치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처였던 거예요?) 상처는 그냥 꼬매면 될 정도로, 크게 안 찢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는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여기저기 어깨 목 엉덩이 허벅지 이런데 다 부딪쳐가지고 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그거는 별 대수롭게 생각 안하시고 가볍게 보시더라구요. 발목도 욱신거리고 쿡쿡 찌르고 밤에 쥐도 나고 그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시적으로 다쳐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리고 진료를 양말 벗겨가지고 진료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 업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

일을 하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퇴를 하거나 바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도 많았다. 재해가 발생했는데 방치 당하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였다. 심지어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노동자 본인이 자비를 들여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CCTV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이진희의 경우 평상시에도 휴무를 위해서는 자비를 들여 대체인력을 구해야 했다. 이는 이진희가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진희는 사고를 당한 이후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하고 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마트에서 일하는 김진이는 출근 직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출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김오규의 경우 복지관 행사에서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지만 행사 진행 내내 방치되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본인의 재해 원인을 알지 못했거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은에 중독된 이정래의 경우 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10개월이나 지난 이후에야 병원에 방문했고, 치료시기를 놓쳐 이후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박희태 ||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1시인데도 허리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4시간 후에는 출근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팀장, 파트장, 차 운전하는 사람, 그날은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이 한 팀이예요, 팀에서 내가 빠지면, 3명이 보통 한 팀인데 한 명이 빠지면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어떡해, 내가 운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출근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팀장, 파트장, 체커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그 새벽에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나 출근 못할 것 같애, 도저히 안 될 것 같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까지 쉬게 될 줄은 몰랐죠. 새벽 다섯 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진희 ||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근무 중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원들 부축으로 올라가서, 휴무인 직원한테 빨리 나와라 하고 제가 일당을 주고 직원을 부르고 그 사람이 제 대신 근무를 하고 저는 바로 병원에 갔

쥬.

김진이 || (그날 워낙 가게가 바쁘다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 내가 가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뚝거리면서 갔어요. ... (그러면 그 다음날도 출근을 계속했어요?) 네 계속했어요. 5일 동안은. 제 휴무가 아니었어요. 휴무날 맞춰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결근은 안하는 사람이에요.

김오규 || 워낙에 장애인복지관이니까 물리치료 선생님이 많아서. 아킬레스건 파열인지, 근육파열인지 몰라서. 제가 안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넘어져서 쓰러지고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가 있었는데, 얼음으로 조치는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후송조치나 이런 건 없었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 다쳤는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계속 경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모기만 다섯 여섯 방 물렸나봐요.

이정래 ||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바로라도 치료 했으면 괜찮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치료시기를 놓쳐버렸잖아요? 수은 중독되고 저는 10월에 처음 병원 갔으니까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만 빨리 치료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조금 열나고 몸살감기 걸린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마디마디가 좀 아파. 그때도 뼈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상하다 하고 병원 갔더니 수은 중독인 거여. 그래가지고 산재를 신청을 했죠. 그때 시간이 많이 넘어버렸지.

■ 경제적 부담: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특히 수술과 입원 등으로 한 번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주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였던 면담 참여자들은 당장 부담해야하는 치료비에 커다란 부담을 느꼈다.

얼른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대안이겠지만, 불안정 노동자들이 소속된 기업들은 노동자의 산재보험 청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산재보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구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만한 사회 네트워크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

산재보험 수급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 전까지 당장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난 취약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미 산재 전에도 빠듯한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가족에게 손을 벌리거나, 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는 산재가 유력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병원에 지불 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올 때까지도 산재보험 급여가 제공되지 않거나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두드러졌다.

이규식 || 응급실에서 딱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진통제만 맞고 통증만 가라앉히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야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이었는데 응급실에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수가도 높고 해가지고, 그럼 나 나가겠다고, 응급실에서 나올 때 진통제 달라고 해서 진통제 강한 거 달라고 내일 다른 병원에 외래로 입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쪽에서 간이 깎스 해주고 진통제 주고 다음날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외래로 접수해서 입원을 했죠.

김라희 ||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병원비는 어떻게 조달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이 모아서

김하은 || 처음엔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애네들이 산재를 하게 되면 수가가 올라가잖아. (보험료가.) 못 내고 있었죠, 병원비가 1,300만원이나 나왔는데.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쌀이 없어서 운전하던 놈이. 그러면 내가 한 300만원 낼 테니까 당신네가 나머지 좀 내라, 그래서 회사가 낸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나온 뒤에 갚았어요. (일단 회사에서 내줬군요)

박희태 ||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650만원. 650만원이면 사업하는 사람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단 카드로 무이자 3개월, 그러고는 매월 200만원씩 내야 되는데, 없잖아요, 갖고 있던 돈 다 털고, 통원 치료해야죠, 양육비를 제가 매달 100만원씩 줘야 돼요. 보세요. 병원비 200만원씩 3개월 나가야 되죠, 양육비 100만원씩 나가죠, 그것만 300이죠, 월세 50만원, 이것저것 핸드폰 비 내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나가는 돈이 400만원이에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어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매달 400만원이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조달했냐 하면, 어머니하고 여동생, 매제가 빌려줬죠. 부모님하고 제 동생한테 빚이 거의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가족의 고마움을 느꼈죠.

김태현 || 제 생돈에서 (계속 내면서 병원에 계셨던 거세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죠. (나머지 병원 입원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처음 입원했을 때 100만원, 180만원, 190만원, 나머지... 거진 한 600만원 가량을 병원비로 들였고요. 2차병원에서 그만큼 들였고. 그 다음 퇴원한 후에 통원 치료하고 있는 상태. 그건 계속 외상으로 하고 있어요. (병원도 외상이 돼요?) 내가 산재 소송을 해놓았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 경제적 부담: 휴업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

치료비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계비가 없는 것도 산재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였다. 이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평소 모아놓은 돈이 부족했고, 당장의 소득이 없다면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 물론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산재 승인까지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했고, 가족이나 지인, 혹은 회사의 도움이 매우 절실했다.

박희태 ||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매달 400만원이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조달했냐 하면, 어머니하고 여동생, 매제가 빌려줬죠. 부모님하고 제 동생한테 빚이 거의 천만 원이에요,

김오규 || 그때는 수술 후에 부종이나 이런 것이 무리가 가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았고, 재파열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8주 동안은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그때는 무급으로 계속 있었죠. 산재도 인정이 안되고.

■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도움: 긴급생계비 지원과 응급의료 대불 제도

산업재해 이후 치료비 부담과 휴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이외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도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 이후 입원·휴업·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중장기적) 빈곤 상태에 처한 이들에게 높은 문턱이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수술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극소수였다.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는 대부분 본인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과 돌봄을 진행하는 와중에 행정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유이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일부와 생계비 일부를 보전 받았지만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다. 여러 사회보장 제도를 확인해보았지만, 불친절한 설명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이하식 || (혹시 그러면 병원비는 긴급 수술비 지원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생계비나 병원비를 지원받으신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 카드로. 카드빚만 잔뜩 쌓이고 있어요.

이유이 || 저는 긴급생계비 지원도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하도 시청에서 너무 잘 알려주지도 않고 비협조 적이라서 복지부인가? 간호 뭐 있어요. 거기 전화를 해봤어요. 129인가? 거기 전화를 하니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저기하는지 기다리라고 하고, 서류 작성하라는 것도 많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아픈 상황에서 서류를 업쳐 떼다가 해야 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신청을, 뭐 떼오라는 것도 많고요.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김하은 ||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는 A 때문에 알았어요. 의사상자 제도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노무사들 때문에 알았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하길래 이렇게 다쳤다고 하니깐 그거 신청해도 되겠다고. 의사상자라는 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 (그 당시에 병원비가 없으셨을 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긴급지원 같은 건 혹시) 긴급지원도 산재는 안 된대요. 병원에서 좀 도와줬죠. B대병원에서.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이래요. (얼마 정도?) 300만원 ... (혜택 못 받으시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이때 긴급지원을 300만원을 받은 거예요. 구청에서. 이때는 의료급여니까

■ 산재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

산재로 인한 손상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초래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김래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추락의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본인 상태에 대한 절망으로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철거 작업 중 수는

에 중독된 이정래의 경우도 수은 중독의 증상과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매우 심한 상태로 한 시간의 인터뷰조차 진행하기 어려웠다.

김래석 ||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처음엔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한두 달 세달,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기억이 없어요. 떨어지면서 되게 아팠어요. 눈 뜨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아무 것도 못 움직이고, 절망적이었거든요.

이정래 || 다른 거하고 이상했던 것은 온 몸에 껍질이 한 번 다 벗겨지더라고요. 싹 벗겨졌어요. 아프죠. 온몸이 피부가 싹, 피부 보시면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건데, 피부가 벗겨지다보니까 가렵고, 아토피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온 몸이 전부다. 하나도 안 빠지고. 드러난 데 손목부터 시작해서 싹 번지더라고요.

4.2.2. 산재 청구 단계의 장애물

■ 주체 요인

① 산재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와 권리의식 부족

면담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부족했다. 산재보험은 가장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낯선 제도이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혹은 기업은 가입되어 있지만 본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산재보험을 들어본 적이 있어도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재보험을 들어봤거나 산재보험을 청구할 마음이 있는 이들 중에서도 워낙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이나 주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제도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제도를 이렇게 잘 모르는 이유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임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적용 제외 대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에 이해도가 낮은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이 쉬운 용어, 간소한 절차, 적절한 설명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이 든 노동자가 신청 자체를 꺼리거나, 신청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도 불필요하게 중간 브로커에게 의지하여 수수료를 떼이거나 제대로 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유이, 김라희, 김주석, 이경호, 도환희 등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알고는 있지만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산재보험 처

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온 터라 본인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김오규의 경우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본인의 회사 생활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걱정에 청구를 꺼렸다.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장벽이 이렇게 높지만 지원하는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유이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산재를 청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등으로 인해 신청 자체가 어려웠음을 이야기한다. 이진희의 경우 산재 청구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본인이 아픈 와중에 모아두었다가 노동조합과 노동·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른바 산재 브로커라 불리는 사람들은 산재 노동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청구 과정을 대행해주며 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대시킨다. 김래석의 경우 산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산재 브로커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여럿 보았으며, 그 원인이 산재보험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산재 브로커를 통한다고 해서 산재보험 청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김태현의 경우처럼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청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사실상 정해진 산재보험 승인 과정을 ‘형식적으로’ 대행하면서 오히려 산재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고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학습된 산재보험 ‘장벽’과 ‘문턱’의 경험은 박희태처럼 산재보험 청구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낳기도 한다.

김래석 || 지금 여기저기 상담도 하고 있고 아는 형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산재가 승인 나서 처리 중이예요. ... 노무사는 아니고 노무사 밑에 부장. 다치고서 알았지. 엄청 많아요. 병원에 오니까 인사는 하잖아요. 브로커라고 그러냐? 노무사 명함주면서 부장이라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 할 걸 생각하다가. 의외로 환자들이 많이 이용해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저도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좀 알아요. 누구한테 상담해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면 산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돈 쓰고, 모르니까 등급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 10%, 15% 떼더라고요. 요즘은 올랐다고도 하던데. 근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산재보험이 될 사람은] 보험은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예요. 근데 심사보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거든요. 위하는 척 하고. 처음에는 위안이 많이 돼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위안이 돼요. 계속 병원에 오니까. 걱정해주고 같이 병원에 따라가 주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이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아 잘 아는 구나 그렇구나. 이 사람이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잘 나온다고. 그럼 알았습니다 해. 결국은 그 과정은 도움을 많이 받는데 결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써주는 거거든. 결국은. 난 그걸 알아. 그 과정은 도움이 돼요. 근데 장해 심사는 담당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잖아.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 브로커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뽀찌도 안 통하는 시대니까. 예전엔 뽀찌대요. 예전에는 뽀찌가 돈 쥘러주는 건데 뽀찌. 요즘은 안 되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의사들이 돈 많이, 일부러 아는 병원에 데려가고.

이유이 || 대화를 하는데 뭐 소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주변이 없다보니까... 저도... 괜히 말하는 내 자신이 학벌 쪽으로나 뭐나... 이게 말도 못하겠고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거여서 그렇기도 하고 뭐 마땅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들어도.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쉽게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 진짜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까 하고 끊어버려요.

김주석 || 제가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직장을 이런 데를 안 들어가 봤으니까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산재에 대한 큰 의미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4대 보험 직장이면 4대 보험 돈 내라 그러면 그거 어디다 쓰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4대 보험 왜 내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고, 나에게 혜택인데 형이 산재 신청하라고 했을 때 하고는 싶었죠. 왜냐면 나중에 산재 안 하면 너가 후회할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일단 나는 그 별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 정보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나서 형이 왜 산재 처리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들은 대로 이야기 했죠. 별점 이리이러하니까 이랬다. 형도 모르잖아요. 아 그래? 산재가 제일 좋은데. 지금에서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이 산재 처리 하라고 했잖아.

(산재에 대한 정보가 노동자분들에게 없는 거네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산재 처리 4대보험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걸요. 회사에서 넣으라고 하니까 넣는 거지.

김라희 || (혹시 그 전에는 산재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개인사업자일 때는 보험 들면서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러셨구나.) 나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별로 할 말도 없고.

김희석 || 내가 핸드폰 살려고 할 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점장이죠. 얘기 나누다보니까 그 사람 아버지도 산재였대요. 5년 동안 받아먹다가 5년 동안 후에는 못 받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많이 했더구만. 그래서 다 알더만. 그래서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 그러냐 했더니 못 이긴다는 거죠. ...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해봤자, 혼자서 날 뭐 이 언변도 그닥 한데, 근본 답변을 못 하면 판사가 소리치면 쓴 소리 말라고 소리친다는 거지.

박희태 || 좀 그렇긴 했어요, 산재를 한 번 받았는데 또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근데 다친 건데 어떡해요, 받긴 받아야지.

이경호 ||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신청해보지 뭐, 신청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종합병원에서 A병원에서 손해사정사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재 신청하는 게 나올 것이다, 자동차는 합의하면 끝이지만 산재로 들어가면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재활되고 난 다음에 보상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그 정도까지는 안 준다. ... 솔직히 공단에서 판정 내린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변호사 사서 바로 싸웠겠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될 거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니까. 다 되는 분위기였으니까.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불승인되니까 황당하고 힘든 거죠. ... 산재 건이 원청으로 올라가면, B회사에서 다음에 계약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단종에 소속되어서 산재를 신청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들도 계속 수주를 해야 하니까 산재 처리 안 하고 공상 처리를 해요. 장애를 입을 정도가 아니면. 몇 개월 보상해주고 합의하고 말아요. 저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이 들어가니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라는 걸 뒤에 가서 알았죠. 나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에스케이에서 우리 회사 출근하다 사고났다는 걸 좋게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걸 또 좋게 이야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불이익 당할까 있어서. 그런 조건에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진희 || 병원 서류 이런 건 제가 다쳤을 때부터 모아왔고, 통원 치료 서류라던가. 근데 제가 모을 게 그런 병원 서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도통 모르겠어서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 동료들은, 제가 그런 첫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번 케이스로 인해서 산재 신청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지만

이번 기회로 좋은 판례로 남기자, 해서 산재 신청하라고 다들 그랬죠.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도환희 ||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산재보험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네요?) 그건 백프로여. 산재 개념도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김오규 || 산재 신청하면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사업장 내 직원으로서는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 회사에서 다쳤든 회사 이외에 출퇴근을 하면서 다쳤든 내가 먼저 산재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회사나 이런데서 사업주가 먼저 ‘자네 이렇게 되었으니까 산재를 써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죠. 산재 신청하면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사업장 내 직원으로서는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사업주가 산재를 권유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② 도움 자원의 부족과 시민사회의 역할

정부나 기업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역량 부족은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이용 격차, 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증대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면담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청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이나 서류 작성 등에서의 대행이 필요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조력 없이 노동자 혼자 산재보험을 청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유처럼 가족, 동료 등의 지지와 법률적 지원이 없는 경우 승인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거나, 김주석의 경우처럼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이후 서류 대행 등을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희석의 경우처럼 산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본인이 정보를 찾아 나중에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제도의 복잡성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조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지만,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이들을수록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부족했다. 더욱이 김라희, 이하석의 경우처럼 본인이 중증 재해를 입어 병원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 회사, 공단 등이 지원해주지 않고 가족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은 노무사와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노무사나 변호사를 소개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수소문해야 했다. 또한 김태현의 경우처럼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률 전문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뜻하고, 이는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돕는 것은 노동조합과 지역의 노동·시민단체였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연결된 시민사회 단체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청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미희의 경우 울산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퇴사 이후 산재 청구를 할 수 있었고, 서류 준비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회사의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김오규의 경우에도 A 지역 여성노동자회를 통해 산재보험 청구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유이 || 그냥 했어요. 들다가 그렇게 됐다. 전 노무사 비용 낼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 아니라서. 꿈도 못 꿬요.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하고 넣은 거예요. 수술 후에 서류를 넣었을 거예요. (회사 측에서 보상 안 해줬어요?)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안 해주려고, 안 해주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만저만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노무사 끼고 한 대요. 저는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노무사를 어떻게 할 비용도 전혀 없어요. 생계가 지금, 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회사랑 싸워요. 거기는 막 A 업체에다가 같이 저거해가지고 저는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 제가 준비해야 할 거는 그 쪽의 불합리라던가 과실을 따져야 되잖아요? 내가 과실이 크냐? 회사 과실이 크냐? 그걸 비율을 정해서 주는 거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노무사를 낀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 그것도 혼자, 혼자 해야 되잖아요. 혼자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 ... 의논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한테 의논할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내가 내 주장만 앞세우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주석 || (산재 신청할 때 서류 작성하실 때 도와주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그냥 이거 보고 쓰라던데. 그 옆에 종이보고 쓰면 된대요. 쓰다가 모르면 물어보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 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돈 다 법원 일 보면서 다 썼어요. 왜냐면 법원에서 이의 신청할 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장이 이렇게 서류를 썼을 때 이게 아니다 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하겠다 라는 신청을 쓰려면 제가 법에 대해 모르니까 법무사를 꺾어야 해요. 한 번 쓰는데 30만원, 좀 길면 40만원, 시간제로 받으니까. 이의신청하고 또 그 차가 폐차된 차를 찾으러 가면서 기름도 많이 쓰고, 왜냐면 폐차장을 다 뒤졌어요. 사장한테 어디다 폐차했냐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차 넘버를 아니까 낱짜랑,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찾으러 다니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그 차에 연식이나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아본 거죠. 이 차에 연식에 현재 시가가 얼마고, 잔존가치가 얼마고 알아보려고, 사장이 나한테 750인가 찾값을 요구했는데 잔존가치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격이 틀려요. 거기에서 이 가격에 사장이 이만큼 오바했다. 나는 이 가격에서 오바된 거니까 차르고 이 가격에 대한 걸로 논하겠다 라는 이의신청이었어요. 차 찾는데 3일 걸렸어요. 폐차장 다 돌아다녔어요. 전화하고 어찌고 광김에 있는 건 다 찾아봤죠. 보험회사도 안 알려줘요.

김라희 || (아내분이 산재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산재에 관해서 하셨던 일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웃음) 글썄요, 그냥 뭐, 산재가 되기 위해서 찾아다녔겠죠. (근로복지공단?) 그런 데는 아닌 것 같고, 회사하고. 그 회사만 찾아갔겠죠. 산재 처리하기로 하고 딱 거기서 서로 안면식이 있는 사이니까, 거기까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더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서류 같은 거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건 집사람이 알아서 했으니까 저는 잘 몰라요. (노무사의 도움이나 그런 건 없이) 네,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허식 || 처음엔 불승인 났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님이 해서 저는 잘 모르구요. 저는 사지마비였으니까 제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저는 거의 혼수상태라 아무것도 몰랐고 저희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김하은 || 노무사를 선임했죠. (그때는 의식은 또렷하게 있으셨나 봐요)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가 전망도 보여 가지고, 전망이 뭐냐면 환청, 환각이에요, 수술 크게 받은 사람한테 나타난대요. 전망 증상도 겪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B라는 노무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된 거죠. ... 네, 대신 산재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대요, 재판은 변호사밖에 못한 대요. (행정소송을 나홀로 재판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노무사가 서류 해주면 내가 갖다 내고, 언제 재판 열리면 가고, 가면 또 몇 마디 안 해요, 몇 마디 안 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인천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서너 번 가다가 마침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판사가 좋았어요. 나 진짜 억울합니다, 다른 건 인정하겠는데 척수손상은, 감정의도 그랬거든요, 척수손상의 흔적이 보이므로 이 척수가 한 번 다치면 평생 안 낫는대요, 이거를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가 판사님한테, 그것만 인정해주세요, 그래도 산재는 이득이에요.

김희석 || 이번에 신청할라고 생각은 몇 번 했는데, 어째서 신청을 했는가. 원래 신청이라는 거를 나는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있잖아요. 이걸 신청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백문백답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누가 보신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봤죠. 백문백답. (산재 백문백답이라는 거를?) 그런 책이 있어요. 변호사와 노무사가 셋이서 모여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 마누라가 말해서 내가 생각했죠. 그래 하는데 야, 시간이 너무 넘었는데, 3년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3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벌써 신청이 안 된단다. 우리는 그저 허벅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산재를 이거를 다시 준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깐 걸어치우자 이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백문백답을 받아 왔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백문백답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게 뭐이인가 하면 10년이 되어도 산재 신청 할 수 있다. 그때는 병이 자꾸 엄중해지면 일도 못하니까 그때사 산재 신청을. 정책이 있으니까 고민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책 때때기 보지 않으니까. ... 어디가서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 노친네가 산재 신청하겠다고 뽐아놓은 자료가 있었던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뽐아놓은 자료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땐 어찌 뽐았는가 하면, 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그래 뽐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재 신청은 혼자서 하신 거예요? 아님 어디서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없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디다 물어봐도 다른 사람은 안 아르켜 줘요. 아무데 가도,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하는가 말로는 착착박 하지만.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이 신청도 다 우리 자비로 한거죠. ... 네. 저희 자비로 한거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누가 해줄라 해도 안 하고. 노무사도 찾아봤는데 말이지. 돈 안주는 그런 노무사 있잖아요. 근로복지공단 그 위에 본부에서 무료로 상담하는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몇 번 봤었어요.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우리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안 소개해줘요. 그리고 우리 갔던 법률사무소도 있는데, 거기다가 말하니까 뭐냐하면, 이걸 3년이 지난 거라고 안해주죠.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아신건데요?)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는 그 어딘가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게 무슨 청에 가 신청하려고 하니까 그 본부에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면담 돈 안 주고 하는. 그래서 거기 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알게 되죠. 우리 공사 기간은 몰랐죠. 어디가 어디멘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다니다보니까 다 알았죠. ... (여러군데 찾아보셨어요?) 여러군데 찾았죠.

김태현 || 나중에 판정 받고 난 다음에 노무사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다 해줄 줄 알고 믿었는데,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록 재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3개월이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자기가 조사를 좀 더 할 거라면서. 내가 보기엔 이미 행정 기관에서 불승인 난 것은 어차피 싸움은 재심 싸움이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얻고 그런 게 아니고 법적인 싸움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이 노무사가 자신이 없는지, 자기를 못 믿는데 어떻게 같이 하느냐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내가 쫓던 자료들 다 돌려주면서 안 할란다, 계약금도 돌려주면서 바로 뱉어내버리더라고. ... 네. 퇴원 임박해서, 내가 목발 짚고 쫓아다니면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 휠체어 타고 집사람이 밀고 다니면서 법원 근처를 막 찾아다니면서 대한법률 거기도 가보고 일반 변호사 회사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상담만 해도 돈을 줘야 되더라고. 5만원. 5분이든 10분이든 무조건 상담만 했다 하면 5만원을 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당장 현찰이 드니까.

이진호 ||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

살기 바쁘고, 또 그런 말 해도 좀 껄끄럽기도 하고, 돈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하는 편이고. 제가 있는 거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하고.

도환희 || (산재 사고 입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공단에 전화하라고. 공단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공상이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다친 건 공상 처리 하는 게 낫고, 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회사는 큰 회사 노조 있는 회사 들어가야 한다고. 그건 백프로여.

김미희 || 조합에서 많이 도와줬죠. 복지공단에서 현장 점검 할 때도 일일이 얘기하고, 혼자 하던거 둘이 해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협조를 많이 해주지. 조합원이기 때문에. ... (노동건강연대에 신청하시는 것도 노동조합에서 알려줘서 하신거예요?) 조합에서도 그렇고, 여기(울산노동인권센터)도 알고 있더라고. (여기는 평소에 노조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도 해주고. (하창민 선생님이지?) 연관이 돼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줘요. 산재서류도 많이 협조를 받았어요. 처음에 하려면 당황하잖아요.

김진이 || (산재 신청을 실제 서류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그런 건 언제 하신 거예요?) 출근 안 하는 26일날. 26일날 저보고 병원 측에서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니깐 본인이 직접 가서 처리하면 더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절뚝거리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했어요. (다른 사람 도움 받지는 않고 직접 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MRI 찍은 CD랑 판독서 들고 갔어요.

김오규 || (입원하던 기간 중에 산재 신청하시려고 애초에 생각은 하셨어요?) 그렇죠. 주변에 자문을 엄청 했어요. (자문은 주로 어디에 하셨어요?) 와이프도 아는 분에게 물어봤고, C지역 여성노동자회에도 물어봤고. 그리고 전에 계셨던 국장 과장님. 전 운영 법인에 있던 분들.

③ 후유증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산재 신청을 결심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동기는 후유증과 그로 인한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였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권유했음에도 병원에서 후유증과 관련한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경우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호식의 경우 사고 이후 공상 처리를 하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후유증이 심각할 수도 있다는 병원의 이야기에 산재보험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경호도 회사의 공상 처리 권유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산재 청구를 권유하거나, 미디어와 동료 등이 정보를 알려주어 산재 청구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유는 근로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재를 청구하지 않으려 했으나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이정래의 경우처럼 본인과 동일한 일을 하거나 같은 유형의 재해를 당한 사람이 산재보험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청구에 나서기도 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진희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재계약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산재보험 청구를 하지 않다가 퇴직 이후 산재보험을 신청한다.

이는 사고 이후 회사가 본인에게 가했던 불합리한 대우(재계약을 빌미로 산재보험 은폐 권유, 신청 이후 본인에게 가해진 동료에 대한 압박과 비협조 등)에 대한 심리적 해소를 위해서였다. 이진희뿐만 아니라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사고 이후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함, 산재 은폐를 위한 압력, 엄살이라는 등의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 등에 의해 상처를 받았고, 산재보험 승인은 이러한 억울함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기도 했다. 박희태의 경우에는 아픈 동료가 많았지만 산재를 신청하기 어려운 회사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으면서 동료를 위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산재보험이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에게 당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위한 ‘결정적 계기’나 ‘결심’이 필요하며, 노동자는 재해 이후 치료비, 복직과 같은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요양, 재활, 급여 보전 등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공상, 혹은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사보험과 경쟁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호식 ||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싫어했지만. 그럼 9월에 울산에서 서울로 오기 전에 산재 신청은 이미 하셨던 거네요?) 아니죠. 서울 왔다가 다시 울산에 가서 거기서 수술하고 A정형외과에 있으면서 그때 제가 해달라고 칭얼댄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전까지는 공상 처리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B병원에서 안 좋다고 하니깐 더 그러셨던 거군요. 병원에서 이게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이유이 || 이렇게 터질 거다. (디스크가?) 네. 언제부터 그러냐고? 12월 28일 무거운 거 들고서부터 그렇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디스크수술을?) 네. 저는 수술 못한다. 회사에 다녀야 하고 생계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안 된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들다가 다쳤으니까 산재하라고, 전 그때 알았어요. 산재.

김주석 || 이젠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산재가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근로자니까요. 산재를 밟아야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산재를 못 밟은 게 지금에 후회가 되요. 산재를 밟으면 회사에서도 인정한다는 게 있잖아요? 보험 처리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인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 게 되더라고요. 그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산재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산재가 우선이고 사고가 나면 사장하고 잘 이야기를 하는 방안이 좋죠. 물론 일을 계속 할 거면. 근로자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거면 좋은 쪽으로 하고 일 안 할 거면 산재하면 되죠.

박희태 || 잘 모르지만. 산재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다친 사람은 가끔 발생하지만, 산재 신청하는 사람이 저 때문에 많이 늘었을 수 있어요, 제가 산재 승인 받아서 휴업급여를 받는 걸 봤으니까.

이경호 || 산재를 해야, 이게 빨리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아프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 돈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산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할 건지 산재로 할 건지 물어봤어요. 이러저러해서 산재 쪽으로 해야지 해갔고, 회사랑 통화해보니까 회사 사장이 다 해주대요. ... 병원 다니면서 일하면서 산재 처리 잘 안 하고, 산재 처리하면 손해잖아요, 월급 70프로 밖에 못 받고, 몸을 생각하면 산재를 해야겠지만 돈만 생각하면 아파도 그냥 주사 맞고 약 먹고 다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산재 처리를 했죠. 몸도

중요하니까. 돈을 그만큼 못 받더라도.

이진호 || 저 같은 경우에는 4일간 코마로 누웠잖아요. 제가 사고나자마자 알려졌으니까 회사에서 임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상태가 너무 많이 다쳤고, 개인적으로 할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서 근재보험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제 상태 보니까 금액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바로 회사에서 산재로 정리했더라고요. ... 저 다치기 1-2년 전부터는, 산재를 강화시키는 법이 되어가지고 무조건 사고가 나면 근로자가 다쳤으면 회사에서 무조건 산재를 처리해주게끔 되어 있고, 그거 안 하면 회사에서 패널티를 물려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수주 입찰할 때 불이익을 줘요

이진희 || 저는 치료비 보상 때문에 신청한 게 아니라서 저는 산재 승인 난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돈이야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어서.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 하나로 만족해요.

이정래 || (산업재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어떤 뉴스였나요?) 우리 작업자 중에 군산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산재를 해야겠다고,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그 분이 제일 먼저 산재를 신청했는데 인정이 안 돼서 싸우고 있었어, 처음에 인정이 되고 연락이 오더라고. 이런 데 너네도 빨리 병원 가봐라.

■ 노동자의 산재 청구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

① 사업주의 회피/은폐와 비협조

산재보험 청구 단계의 어려움으로 면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회사가 산재 은폐를 권유하거나 강요한다는 점이었다. 산재 이후 다수의 노동자는 회사와 사업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청 받았다. 그 대신 ‘공상’ 처리를 약속했다. 몇 개월의 임금과 치료비 지원을 내걸며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말라고 권유받았으며, 때로는 매우 강한 압박도 이어졌다. 산재보험을 청구한 노동자의 회사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근로복지공단 측에 노동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회사의 비협조는 노골적이기도 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청구를 기피하는 것은 노동시장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계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상을 권유받았고,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사이의 관계 문제 때문에 공상 처리를 권유받았다. 김호식의 경우 대형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 근무했는데, 사고 이후 회사 지정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상 처리를 권유받았다. 이하식은 파견 노동자였는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사이에 일정한 조정을 통해서 공상을 권유받았다. 이규식의 경우에도 거래처가 끊긴다며 사측으로부터 공상 처리를 권유받았다.

또한 여차피 산재보험 승인이 어려우니 공상 처리를 하자고 권유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 스스로도 사업장에 만연한 산재 은폐와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상 처리에 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유이의 회사는 변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회사가 협조하지 않

는다면 사실상 산재 승인이 어렵다는 압박을 가해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 김태현의 회사도 회사 날인 등 사측의 협조가 없으면 산재 승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산재보험 미처리를 권유받았다.

산재 이후 회사의 은폐 시도는 ‘권유’ 수준이 아니라 해고 등 ‘협박’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이유이의 경우 노골적으로 재계약 불가라는 해고에 가까운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유이의 동료도 산재보험 청구를 위한 진술을 하려고 할 때도 해고 협박이 이어졌다. 김주석의 경우 운행 중 있었던 과실을 빌미로 산재보험 미처리를 강요받았다.

회사의 권유나 강압으로 공상 처리를 했는데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 약속한 치료비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가 지급을 요청하거나 산재보험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 다시금 권유와 협박이 이어졌으며, 재해 직후보다 더 큰 압박을 가하고는 했다. 이규식의 경우 공상 처리하기를 합의했지만 사측으로부터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산재 청구를 하겠다고 하니 사업주는 심한 욕설과 더불어 이후 산재 청구 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하식의 경우도 공상 처리시 약속한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자 퇴사를 강요했다. 김희석과 김호식처럼, 사측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예 (위장)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도환희의 경우, 사측이 공상 처리를 약속했으면 서도 급여와 진료비를 미지급한 경험이 있었고, 산재보험 청구 의사를 밝혔더니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결제 취소하는 등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

기업은 적대적 방해 뿐 아니라 산재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처음에는 협조하는 척하다가 실제 산재보험 청구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라희, 김하은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회사에서 별 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았고, 박희태의 경우처럼 회사 출입을 막아 서류 준비와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오규의 경우 산재보험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당시의 상황을 왜곡해서 보고함으로써 산재보험이 불승인 되도록 하기도 했다.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에는 상시적인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산재보험 청구에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김호식처럼 별도의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측의 비협조로 근로자재해보험 등을 수급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은 사측이 아니라 재해 노동자 본인이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측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동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정보 부족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회사의 승인과 협조가 없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김호식 || 그렇죠. 원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노동조합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재 사고가 나면 C중공업에서 계약을 안 해요. 만약에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계약을 안 해버려요.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난 회사는 아예 폐업을 시켜버려요. ... 노동조합 안전보건팀에서 나와서, 이걸 일하다 다쳤으니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회사 지정병원으로 넘어갔어요. A정형외과였어요. 그런데 공상으로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대표가 왔어요. 대표, 총무, 부장이랑 같이 와서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질테니 공상 처리하고 산재 처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산재 처리를 안 하면 당신네들이 나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물었더니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해 9월에 서울 양천구 집에 가 있으래요, 공상 처리해줄 테니까 집에 가 있으래요.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 거기서 우연치 않게 B월드라는 회사를 본 거예요. 저한테는 회사가 망했다고, 저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전화도 안 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화 준다고 해놓고 전화도 안 주고. 근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산재 사고가 났을 때 개인보험처럼, 자동차보험처럼 타먹을 수 있게 회사가 들어놓는 거예요. 그거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재보험을 안 들면 C중공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 (그럼 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복직도 시켜줄 것이고 평생 같이 가는 거라고 (평생 너의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네 (호식씨는 왜 땀을 피우셨어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왔는데, 앞을 생각해봤어요. 애네가 정말 나를 책임져줄까? 안 되겠다, 땀을 부려서라도 해달라고 해야겠다, 무조건 안 된대요, 그래도 해달라고. 내가 울산 근로복지공단 찾아간다고 말을 했죠. 내가 직접 찾아간다가 그때서야 해준 거예요. ... 화가 나죠. 나는 진실되게 말하는데, 솔직히 개네 입장도 이해는 가죠, 그래도 자기네 입장만 생각한다는 게. C중공업에서 다치는 사람이 많은데,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회사 트럭으로 나르고, 내가 그걸 수도 없이 봤는데, 그런데 다 눈 감아요. 그게 현실이예요. 산재를 협력사에서 안 해주려는 게 대다수예요.

이하식 || 포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D회사 거기서 다리 다치고 나서, 거기서도 그러더라구요. 처음에는. 산재를 신청하는 대신에 우리가 치료비를 대주겠다, 생활비하고. (아, 산재 신청하지 말고?) 네. 대주겠다고 해서 그 말 듣고 나왔죠. 5월달까지는 나를 파견한 업체의 회사, D로 파견한 회사 있잖아요, E라고. ... D테크 사장님이 자기도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한 몇 개월까지만 생활비를 자부담으로 해주겠다 하더라구요. (올해) 5월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산재 신청을 들어갔잖아요.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왜 산재를 신청했냐, 우리가 대주기로 했는데. 나는 '처음에 약속하고 틀리다. 처음에는 치료비를 대주기로 해서 나는 영수증을 다 제출하면 치료비를 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산재 신청하자마자 180만원인가를 한꺼번에 입금시켜 줬더라구요. 그걸 치료비라고. (생활비는 매달 월급으로 주긴 했던거예요? 근데 병원비는 따로 주지는 않았고?) 네. 그러다가 산재 신청이 들어가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쪽으로 연락이 갔을거 아니예요. 그때서야 180만원인가 얼마 통장으로 급하게 집어넣더라구요. ... (다치시고나서 D테크에서 생활비로 얼마 정도 주신거예요?) 100만원인가 120만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원래 월급은 150만원 정도 되었다고 했죠? 병원비는 그냥 그 전에 모아두신 돈으로 내신 거예요?) 아니예요. 지금 병원비는 묶여있는 상태. 응급적인, 국가에서 응급 수술을 들어가면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청구한다 하더라구요. (그럼 지금 지불하신 치료비는 어느 정도예요?) 처음 퇴원했을 때 160만원 집어넣고, 다달이 40만원씩 몇 달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럼 수술비 900만원 넘게 포함해서 큰 돈들은 아직 지불을 못하신 거네요. 국가에서 보증 서워서 응급수술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지불을 해야 하고. 근데 회사에서는 치료비로 고작 180만원. 원래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라고 하나요, 그걸로 처리하려고 했던거예요?) 그런가봐요. 자기네들은 생활비랑 치료비를 지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별로 안 지킨거죠. ... (그렇게 사고 나셨을 때 회사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작업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그런 건 없었죠. (그냥 아프면 병원가봐라, 그 정도?) 정 아프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 원래는 관리팀 부장이라고 있어요. D업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산재 신청 안하는 대신에 생활비랑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들도 암만해도 꺾그러워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 같더라구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회사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암만해도 준 거 같더라구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사고났을 때 대비한 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거 같아서.) ... 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든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산재 신청한 건 원청업체 사장이 ‘산재 신청하지 말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테니’. 근데 가만해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료법률센터 있어요. 거기서 상담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산재에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고 하더라고요.

이유이 || 1월 9일 10일날? 그 정도에 했을 거예요. 벌써 표정부터 안 좋죠. 이거는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이게 밖에서 다쳤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못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려면 저보고 하라는 식으로. ...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갔죠. 사람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매의 눈을 가졌으니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상황이 바뀌어져 있고, 치운 것도 있고, 자재가 가벼운 것들만 있고,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 F업체 말고 G업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냥 공상 처리 해라. 산재를 하려고 하나? 하지 말아라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난 할 거다 되든 안 되든 할거다. H업체에서도 변호사 10명이라고 약 올리긴 했어도 소송 이거 비급여 어떻게 할 거냐? 근재보험인가 있다고 하던데, 근재도 안 들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소송밖엔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규식 ||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응급차가 왔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업에서 근무를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소방차를 부르거나 경찰이든 소방서든에 전화를 해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거래업체에서 잘릴 수밖에 없어요. 거래를 더 이상 못해요. (하청업체가 사업장을 잃는 상황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고도 제가 절룩거리고 기어서 이렇게 갔어요. (어디를요?)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꾸역꾸역 갔어요. 직장 동료는 자기가 해야 할 일 끝나고 올라와서 직장 동료랑 병원에 갔어요. ... 그런 건 아니죠. 이쪽 업계 자체가 그... 그렇죠.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거래처 자체가 떨어져 나가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많다보니까 되도록 그렇게 안 하려 그러죠. 아주 큰 사고가 아니라면. (사장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죠. 사장은. 사람 목숨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근데 암묵적인 비유? 그런 것들, 사고 나면 빨리 나한테 전화를 하던지 알려서 움직이고 되도록 119나 이런 건 안 썼으면 좋겠다. 쓰지 말라고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이야기 하죠.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떻게 다쳤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일하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산재 처리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접수가 돼요. 다쳤다고 하면 무조건. 일반적으로 접수를 해서 산재 처리 불승인 나면 일반보험수가를 적용해서 개인한테 다 돌아가요. 산재 처리가 되면 산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일하다 다쳤다고 하면 산재로 접수가 되더라고요. ... (산재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회사에서 해주셨나요?) 산재가 회사에서 처리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공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보상으로 하려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산재 처리 좋아하는 회사가 어딴겠어요? ... 그래서 업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업주가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다친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전화질이냐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다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전화해야 되냐고? 아님 한 달 있다가 전화해야 되냐고? 전화하는데 기간이 있냐고? 내가 다친 것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 현장도 지금 난리가 났고,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알았다고. ...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상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예전에 그 업주도 종골 골절을 당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수술하고 핀 박고 해서 고생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깁스 두 달 하고 두 달 물리치료 받고 그래서 4달치 급여를 줄테니까 공상 처리를 하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 왜 기준이 본인이나?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쌍소리 하면서. 그동안은 그렇게 지내온 게 있어서 좋게 좋게 원만하게 끝나려고 했어요. 근데 산재가 원만하게 끝나기가 힘들어요. 한 번 사고가 나면. 거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나 산재 처리 할 테니까 3주 넘게 기다려줬으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법대로 가겠다, 그러면 법대로 가라고 해서 알았다고, ... 산재 처리를 하려고 병원에서 서류 하는데 사업장 주소하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사업장관리번호, 그건 저기밖에 모르니까 내가 전화하고 싶진 않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산재서류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알려달라고, 근데 3, 4일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 그러니까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업장관리번호나 산재 번호는 주소나 상호나 전화번호로 하면 검색이 돼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사업장관리번호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물어보니까 2개를 다 쓰라고 그럼 산재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산재 신청을 해서 끝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고원인 조사표인가가 있어요. 산재 사고가 나면 1달 내에 그걸 작성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 돼요. 1달이 넘으면 벌금이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류 작성하자고 했던 그 날짜가 29일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끝끝내 벌금내야 되는 그 시기에 저

한테 전화해서 서류 처리 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산재라는 과정을 미리 알고 계신 하셨네요. 워낙 사고가 많은 업체였으니까.) 근데 산재로 안 하고 공상으로 하는 업체가 많아요. 근데 후유증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라서 가령 다리를 빼앗거나 팔을 빼앗은 경우는 대부분 공상 처리 하죠. 물리치료비용 주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장기간으로 갈 거라면 근로자들은 산재로 가려고 하고 업주는 공상 처리하려고 하고, 근데 산재 처리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산재 은폐하면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죠 대부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산재 신청한 것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돈으로 쪼여서 공상으로 유도를 하려고. 산재는 돈이 얼마 안 나오고 조금조금 나오는데, 공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너한테 500 줄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니까. 통장 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70만원인가, 80만원 들어왔더라고요. 하아 (헛웃음)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어서 바쁘다 뭐하다 말하는 동안에 엄청난 머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김주석 || 산재 처리하려고 했죠. 사장이랑 과장이 그랬어요. 산재 처리 할 거면 나중에 너가 고속도로에 추돌 사고 낸 별점이라던가 너가 고속도로에서 피해를 냈으니까 별점이 있으니까 그 별점을 합산하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겠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 사장이 제가 꽤 씩씩했나봐요. 일도 그만두고 자기도 피해를 봤는데 너가 산재 신청을 하느냐는 리액션이죠. 사장님이 법원에다가 민사를 저에 대해 건거예요. 차에 대한 보상하고 자기가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그 합의금이 한 이천 얼마를 자기가 손해를 봤는데 자기는 나한테 200의 돈을 받아야겠다.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민사에다가 그걸 같이 건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억울하니까 저도 노동청에 고발했죠. 퇴직금을 안 준다. 어떻게 퇴직금을 민사에다 거냐? 그런 식으로 했죠. 소부 보려고 노동청 취하할 테니까 사장님도 민사 취하하라, 그런 식으로 저도 하려고 맞다이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노동청에서 사장님 조사 조금 받고 어찌고 하더니만은 무슨 손해는 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니까.. 노동청에서 지금 돈 준다는데 김주석씨 안 받을 거냐? 지금이라도 돈 준다고 하는데, 왜냐면 사장님 만에도 민사에다 그런걸 같이 거는 걸 몰랐나 봐요.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퇴직금을 언급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나 봐요.

김라희 || (그러면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 회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 분이 계속 서류 넣고 이런 작업을 다 하셨고 그걸 도와준 분이 교회 목사) 네. (그 업체에서 나서서 그 일을 해주진 않으셨던 거죠?) 네

김하은 || (근데 일하신지 1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산재를 요구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엔 산재라는 걸 몰랐다가, 병원에 있다 보니 걱정이 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열흘쯤 지나니까 환자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쳤다고 하니가 산재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산재가 뭐예요? 하니가 회사에 얘기하면 된다고. 처음엔 회사가 다 해줄 듯이 이야기했어요. 병원비, 보상도 해줄 듯이. 암만 기다려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네들은 내가 내 돈 내고 나가라는 거죠, 산재 안 해주고. 내가 마지막 날 찾아가서 성질내고 그랬죠.

김희석 || 병원에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짝 모여 있었어요.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술한 명패(명함)을 버려가지고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걸 회사에서 말했죠. 이걸 신청하겠다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럼 회사가 망한다고. 회사가 망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니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너와서 명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지도 모르고, 옆에서 막 산재 신청 하라니까 하고는 싶은데, 회사에서 못 하니가. 한쪽은 (한편으로는) 또 뭔가하면 나도 속으로는 미안한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사고 쳐서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나도 참 마음에서.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아니죠. 그저 내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준다는데 두고 보자. (회사에서 해준다는 것은 산재 신청 안하는 대신 뭔가를 해준다고? 치료비라도 대주겠다고?) 돈이라도 대준다고. 그래서 나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끊어요. (조금은 주셨어요?) 4월 5일날 사고를 쳤는데, 7월 2일에 가서 이 돈을 중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 안줬어요. 안 주고 미루고 미루다가 돈을 주니까. 우리도 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재 신청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죠. (7월에 돈을 주셨을 때는 얼마를?) 그때는 130만원? 180? 200? 128만원? 그거밖에 안 주죠. 그렇게 몇 달 주다가. 하여튼 그렇게 줬어요. 숫자가. 몇 달 주다가 그

다음에 이게 수술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술 들어갔는데, (7월 한 달만 주고 말았던 건 아니고 몇 달 연속해서 주기는 했어요?) 다섯 달 간은 컸죠. 4,5,6,7,8 그렇게. 9월달까지 여섯달. ... 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여수시. 여수에 있다고 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적이 있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전화번호대로 갔는데 사람 명이 나왔는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지. 집에다 써놓은 주소까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니까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회사 아니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왔죠.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이 회사가 몽땅, 내 있을 때 있던 그 회사 직원들이 몽땅 가버렸죠. (가 버렸다는 게 다 그만두고 사라져버렸?)

박희태 || 무급 처리하는 기간을 연차를 쓰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연차는 직원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회사가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연차를 막 써버려요. ... 4월 10일이 월급일인데, 3월 1일부터 23일까지는 일을 했으니, 일을 하지 못한 날은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고 그걸 돈으로 계산에서 월급에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근로자들 모르게 이뤄지니까. ... 팀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황당해요. 7월 20일 문자인데 “김포공항 출입증이 무효화되었으니 내일까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말투 보세요, 완전 사무적으로. 갑자기 무슨 말이야. 공항 출입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제가 산재 진행할 때 계속 출입할 필요가 있던 말이에요. 공항이 특수한 공간이라 출입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 출입증을 받아서 제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못 들어가요, 임시 출입증을 받으려면 팀장의 허가,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이고, 그 이전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통을 ‘네이버 밴드’로 해요. 갑자기 밴드에서 강퇴가 됐어요. 6월 21일이 병가 만료일인데 그 날과 7월 20일 사이였어요. 팀장 입장에서는 병가 다 컸다, 그러니 박희태는 직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퇴를 시킨 거예요. 거기에 모든 스케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를 일하고 하루 쉬는 스케줄인데, 하루 쉴 때 다음 이를 일할 스케줄이 올라와요, 스케줄 확인은 밴드밖에 못해요, 어느 날부터가 확인이 안 돼요, 제 이름이 없어요, 동료한테 나 스케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했더니 제 이름이 없어요. 나 강퇴 시킨 것 같은데? 밴드 장이 누구지? 팀장이죠. 저는 자료 수집을 계속 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때부터 어렵게 된 거예요. 산재 신청도 어렵게 만든 거죠.

김태현 || 처음엔 안 해주려고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고는 밖에서 났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출퇴근 산재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요청해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출퇴근 산재는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무리 그 회사 업무시간 안의 사고는 회사 산재로 들어가는데 출퇴근 산재는 그 회사를 상대로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했다, 이 사람이 출퇴근하다가 사고 났다, 이걸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더라고요. ... 나는 그것도 회사에서 승인해줘야 하는 줄 알고 서류 요청 했었어요. 그런데 주소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회사 주소, 주소 자체도 안 가르쳐줘요. 내 소속은 I엔지니어링이지만 산재 가입한 것은 (원청회사인) J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I에서 해주는 줄 알았더니 J라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선에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끌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명을 찾아봤더니?? 주소도 안 나와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안 나와 있고, 전화를 거니까 좀 이따 연락해줄게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회피하고.

이진희 || 그 소장이 병원에 와서 그냥 공개적으로, 산재 신청하면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신랑 저희 친정엄마 저희 딸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겠어요. ... 제가 그때 받은 모욕과 설움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산재는 3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고용승계 때문에 신청을 못했는데, 3년 안에는 신청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 (회사에서 산재 승인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처음엔 불복했어요. 불복한 서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전화오고,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알겠다고는 했어요. ... 본사에 있는 그 대리는, 제가 다친게 11월이잖아요. 그럼 12월 말에 계약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 고용승계할 때 문제가 될 것이다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서 오늘 당장 결정을 내리래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 하고 카톡으로 그럼 산재 신청 안 하겠습니까 했죠. ... 이번에 산재 신청하면서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된대요. 그때 제가 점심 먹으러 같이 갈 때 동료직원이 2명 있었는데. 당연히 진술서를 써 줄지 알았어요. 목격자

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봤으니까 써달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얘기했더니. 못써준대요. ... 이게 제가 고용승계 때문에 산재를 못 냈던 것처럼, 목격자라고 진술서를 써주면 나중에 고용승계할 때 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그러는 거예요.

도환희 || 내가 경위서 쓰면서 승질을 냈더니 그 사람이 사무실 사람들하고 내가 산재 처리 할 까봐 사장이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 이거 해봤자 안 될 거라고. 안 될 확률이 높다고, 그때 사고 때 당신이 바로 갔어야지. 이게 농사 짓다가 더 악화된 건지. 제가 집에서 조금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짓다가 악화된 건지 알 수 있냐고 그러는 거여. ...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산재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래. 자기들이 산재 하지 말란 소리를 하진 않았다고. ... (공상하자고 3번 쫓아온 거예요?) 공상하자는 조건이 치료비 다 대주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성형까지 해주고 근데 나중에 손가락 자른 것도 안 해줘. 그래놓고 월급을 준대. 월급도 기본급 100% 185만원 준대요. 근데 그것도 알아봤더니 산재로 나오는 것보다 더 조금 주는 거. 그래놓고 생색을 내는 거. 이거 저장된 거 (문자) 있었는데 승질 나서 지워버렸어. 그것도 문자가 온 게 있어요. 자기 계산 두드려보니까 그게 나왔다고.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계산법.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우리 형이 승질 내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30일치 다 주는 거지 누가 24일치 주는 게 어딨냐고 (사고 나고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날이죠.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8시간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 전날 12시부터 안 먹었으니까. 다음 10시가 넘어서 죽 하나 먹었으니까. 그때도 힘들었고. 이거 손가락 한 마디 자를 때. 그때 공상 처리 하자고 왔을 때도 힘들었고. 내가 그때 짜증나더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 아무리 열 받아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열 받은 거. 와가지고 내가 성질 안 내고 감정이 안 나겠냐고.

김오규 || 산재 불승인 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와 입장이 너무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더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있는 자료만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전문가님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 가서 정보공개일체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낸 입장이 이래요. “사고관련 체육대회는 근로자가 개인휴가를 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한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모두 개인의사에 따라 휴가를 내고 사업주의 강제성 없이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운동경기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렇게. 주변에 자문을 호소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저도 그 전까지도 긍정적이었다가 정보공개청구를 보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입원해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또 아프기도 했고. ‘사업주확인서 및 유관기관 제출자료’라는 내용도 보면 “사업장 확인서상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종사자 동호회에서 추진하였으며 [재단 산하기관 근로자들이 참여함. 행사비용은 I재단 산하기관장들의 개인 사비로 충당됨. 그러나 체육대회 참석은 직원들의 자발적임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동호회 활동에서 인사 급여 상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걸 보고서 불승인이 난 거예요. ... 수직적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친목도모인데 관장, 국장이 다 참여하는 경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친목도모를 해요. 저도 농구를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경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관장 결정 없이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는데 관용차량도 이용했고. 화성시 외로 나갈 때는 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 저도 솔직하게 우리 복지관이 재위탁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우리 복지관이 그냥 선생님이 산재 신청 안 해줬으면 좋겠고 대신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설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신청하라고 말해놓고는 이렇게 나오니까 속이 상했죠

② 절차의 복잡성과 관련 기관들의 낮은 반응성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과 병원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어렵게 산재보험 처리를 ‘결심’했지만,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모든 서류 준비와 절차를 노동자에게 맡기고, 정해진 요건만을 강조하며 현실적

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직장 복귀를 가로 막는 것이다.

이하식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청 등 여러 기관이 계속해서 타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상 불가능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에 반복적으로 직면했다. 이유이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직되고 반응성 낮은 대응은 이규식의 이야기를 통해 잘 드러난다. “근로자한테 정관을 읽어 주”고 노동자에게 정관대로 하라고 하는 식의 행정은, 피해 노동자의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용 장벽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진희의 경우처럼 이의제기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진희의 경우는 노동자가 회사와의 갈등 중임에도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공단의 업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조차 했다.

의료기관의 비협조나 미숙한 행정 절차도 재해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산재보험 승인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동하며, 산재보험 청구 절차에서 병원 원무과의 협조가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노동자는 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어떤 병원과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산재보험 청구와 승인에 큰 차이를 낳고 있다. 이유이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작성에서의 문제와 의사의 잘못된 초진 기록으로 청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령 노동자인 김희석의 경우처럼 노동자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 청구 자체가 좌절된 사례도 있었다. 박희태의 경우에는 원무과 직원의 실수로 산재보험 신청 절차가 지연되면서 회사와 큰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재보험 주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낮은 반응성, 산재보험에 대한 의료기관의 낮은 이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서류를 만드는 데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하식 || 거기서 8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가 좀 낸다고 하니까 실업연금[급여]을 타먹게 해줄 테니까 퇴사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퇴사 못한다고 하니까 퇴사 압력을 넣는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퇴사하고서 실업연금 신청하고 서류 밟는 중에 암만해도 이상하더라고요. 천식 치료도 불투명할 것 같아서, 안되겠다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니까, 거기서는 근로복지공단 가서 신청하라, 공단에서는 노동부에다 신청하라. (실업급여를 받으면 천식 치료를 (산재로)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다 서류를 준비해오라는데, 회사가 잠수 탔는데 어디 가서 나보고 서류를 준비해오라는 건지. ... 처음에 A에서 잘리고 나서 치료비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노동부로 진정서를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에 진정을 냈어요. 거기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래요. 거기서는 또 노동부로 진정서를 내래요. 아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하는 말이 당신이 가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떼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떼오라는 거야, 회사가 사라졌는데. ... 안 되

더라고요. 계속 나보고 가서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잠수타버린 회사에 가서 어떻게 서류를 떼 와요? (그렇게 말하니까 노동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보고 사라진 회사가서 다 떼오라고. (회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아니 회사가 사라졌는데 나보고 어떻게 서류를 떼오냐 했더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래요.

이유이 || 거기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깐요. 다른 병원에 척추 전문병원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거는 산재가 안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작성을 해봐라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 번 넣어보라고. ... 1주일 후에. 신청이 접수가 됐으며 거기 현장 조사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었어요. 뭐 작성하라고 왔더라고요. 그거 다 쓰고, 너무 용지가요. 너무 뭐가 된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걸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거 쓰다가 (한숨) 이게 도대체 뭐 소리야? 그러고요. 그냥 그래도 계속 쓰다가 뭐 소리야? 하고, 겨우 어떻게든지 썼어요. 나도 모르는 말을 갖다가 나는 내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문제 대충 될 소린지 모르니까, 나는 언제 이렇게 다쳤고 이런 일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 그것만 써가지고 낸 거예요. 씨디하고. 내 수술한 씨디 그거하고 진단서 이쪽에서 받은 진단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현장 조사 해야 된다고. ...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나면요. 병원에서 협조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병원에 가깝아요? 소견서나 진단서 써주잖아요? 우리는 2만원이라는 큰돈을 내고 진단서를 받아요. 이의(어이?) 없어요. 정말 몇 줄, 한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쓰고 2만원씩 받아요. 비협조적이에요. 정말 정말 정말 악마 같아요.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쓰는 것도 컴퓨터에 초진 기록 있잖아요? 초진기록도 잘 해주고 해야 하는데 막상 초진 기록 떼보면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게 달라져 있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이 악마의 세상인 것 같아요. ... 공무원은 복불복이에요. 병원도 정말 복불복이에요. 아픈 사람이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병원에서도 진취적으로 해줘야 되고. ... 그것도 서류를 작성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딱 굵어죽게 생겼어요. 서류 때문예요.

이규식 || 그렇죠. 근로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정관 읽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거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쉬워졌어요. 저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다친 사람한테 서류 주세요. 다친 사람한테 진단서 주세요. 다 요구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은 앉아서 하는 거 뭐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산재 난거 해봤는데 그때도 이랬고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고,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바뀌기도 힘들고 내 자식세대 다다음 세대 바뀔는지 안 바뀔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불가능할거라고. 회의적이 아니라 그냥 비관적. 그때하고 지금하고 요만큼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신고절차서비스는 간소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바꿨네.

김주석 || 산재 처리 하러 갔는데 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자기도 위에다 서류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앞에 사고 차량들 인적사항이랑 사고 경위를 알아야 되니까 블랙박스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블랙박스가 어떻게? 왜냐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박은 건지를 알아야 된다, 고의적으로 자기들끼리 박은 건지 저로 인해 추돌한 건지, 차 넘버, 블랙박스, 그 사람들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거 어떻게든지 물어보려고 보험에다가 전화를 했죠. 근데 보험이 그걸 다 알겠어요? 인적사항만 알겠지. 어느 차에 얼마 지원해줬고 그런 것 밖에 모르죠. 막막하잖아요. ... 일단은 누구나 됐던 간에 산재 처리는 노동자나 근로자가 제일 빨리 수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싶는데 고용자는 못마땅하다 그러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다쳐가지고 몸에 대한 건 나중에고 치료에 대한 그게 필요한데 근로자가(고용자) 싫다하면 틀어버리면, 근로자 아니 고용자 동의가 없어도 거기에서 내가 일하면서 다친 거 확인만 된다면 근로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 물론 근로복지공단 말 그대로 근로자 편에 있잖아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다른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좀 어렵죠. 너무 까다로워요. 뭐가 저는 처음 신청해봤지만, 제 댄에서는 까다롭죠.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그 이상을 해달라고 하니깐. 본인도 안 되는 걸 알거예요. 가서 블랙박스 떼 오라는데 안 되는걸 알거야. 안 되는지 알면서도 저한테 요구를 한다는 거는 못주겠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김희석 || (퇴행성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산재 신청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안 해주죠. 신청을. (안 받아 준 다구요? 신청은 하셨어요?) 신청을 하다 하는데, 못 하게 한다구요. (못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건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행성이다, 이렇게?) 내가 이걸 먼저 말씀하는 거는 있잖아요. 경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미뤄가지고 퇴행성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9일날인데, 수술하고 나서 있잖아요, 또 13년도 1월 9일인가? B 의사가 거기다가 쓴게 뭐냐면, 불명손상이라고. (원인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사고 어떻게 난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일 하러도 안 다니고 지금 치료중인데, 날 보고 이런 진단을 내놓는 게 이게 말이에요? 이걸 봐서 그렇게 몰고 가자고 꼬리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쨌서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게 4월 5일 날 사고를 쳤는데, 회사에서 나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병원에 가니까 술한 사람들이 날보고 산재를 신청하라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박희태 ||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원무과에서 제 서류를 받았으면 공단에 신청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말단 직원이 일을 잘 몰랐는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지 신청을 깜빡하고 안 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류가 늦게 들어갔어요. 신청을 해주세요, 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통원 치료 받으면서, 한 2주인가 지나서 그제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나는 퇴원하고 바로 원무과에 신청했는데, 거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신청이 접수됐다니 황당하죠, 저는 빨리 결과가 나와서 쉬고 복귀해야 되는데. 병원에 전화했어요. 지금 문자 받았다, 접수를 안 한 거였냐. 병원에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빨리 처리해서 나는 경제 활동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병원에서선 미안하다, 원무과 막내 직원이 깜빡하고 접수를 못했다, 병원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빨리 처리하고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직접 신청했으면 바로 됐을 걸, 2주 정도를 손해 본 거예요. 늦게 처리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C회사에서 저에게 병가를 줄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3개월인데, 사규가 그런 가 봐요, 3개월을 병가를 줬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복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 회사가 저한테 퇴사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진호 ||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9급을 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국가장에 2급인데 9급은 너무한 것 같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재심을 청구하라고 해요. 이의제기.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단에. 그래서 서울에 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지. 서울에 가면 거기가 어디야, 무슨 동이지? 서울 지역본부가 있어요. 거기로 오라고 해서 비행기타고 갔어요. 간병사 붙여가지고 하루 일당 주고. 갔죠. 들어갔는데 1분 만에 가래요. 딱 들어갔더니 ‘이의 있어서 청구한 거 맞죠’ ‘네’ ‘이름 맞죠’ ‘네’. 그러더니 의사들 막 있어요. 옆에 7-8명. 의사 한 명 와가지고 팔을 지가 들어요. 내가 들어야 들리는 건데, 지가 들어봐요. ‘네, 네, 됐습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재심받은 게. ...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말이, 9급에서 8급 준다고 전화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연금 안 주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8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시마이 하려고.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9급에서 8급 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한테. 당신들 내 팔을 못 쓰고 못 걷는데 무슨 8급이냐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차장이 담당자인데 노동청에 또 재심을 또 넣으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죠. 바로. ‘당신들 어차피 또 노동청에 재심청구 넣으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또 기다리게 할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다 나라에서 하는 기관이고 너네 자료 그대로 넘길 거 아니냐, 그럼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야? 안 해’ 그랬죠. ... 왜 그걸 니네끼리 알아서 회사하고 나라하고 알아서 해결하지, 비급여 부분도 그렇고 왜 근로자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지, 다친 것도 힘들어 죽겠고 그 사람이 다침으로 해서 그 가정이 박살이 나고 그랬는데. 다 그래요. 가장이 다치면 그 집안이 박살이 나요. 특히 저처럼 2-3년 병원생활 하면 그 집안이 공중분해 돼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발 산재를 공단에서 책임이 일단 해주고 차후에 회사하고 하든 나라하고 하든 해결은 니네끼리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중간에 괜히 근로자한테 가가지고 비급여 안되니까 니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거. 회사에서는 모른 척 생까고 배 제라는 거 많아요. 그러면 병원은 환자한테 돈 받으려고 맨날 쪼아대요. 정산하라고. 화상 이런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 아픈 것도 죽겠는데 병원비 계산도. 저는 운이 좋아 회사가 배려를 해줬지만, 물론 내 돈이지만. 그나마 이렇게 왔지만. 일단 수술은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 회사 돈은 산재 공단하고 방법을 좀 찾아서 해결을 보고, 근로자는 치료하고 수술하고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친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런 거 계산하고 있어요. 특히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 오면 머리에 쥐나려고 해요. 돈 얘기 하나니까.

이진희 || 아, 그거는 있었어요. 한번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 와서 산재 승인은 났으나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랑 직접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이미 받았고,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내줄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기네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겠다, 제가 다이렉트로 본사에 전화해서 그걸 조율을 하라는 거예요.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김오규 || 저는 계속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 밖에 없고, 회사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료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회사에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 진술을 해 달라 사실확인서 써 달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당연하게 산재가 인정될 줄 알았는데

이정래 (무슨 근거가 없다고 그러던가요?) 증급속으로 인해서 산재 신청한 사례도 없고, 된 적도 없고,

■ 초래된 결과

① 산재 청구 절차의 지연 혹은 불승인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의 낮은 이해 수준, 회사의 비협조 혹은 산재 은폐 유도,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의 낮은 반응성은 산재보험 불승인에 이르게 하거나 승인의 지연을 가져온다.

이경호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3개월이나 걸린 것”이라고 응답했다. 재해 직후부터 치료비가 발생하고, 휴업으로 인해 생계 보장이 어려운데 산재보험 처리에 신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 기간의 어려움을 노동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김미희의 경우에도 사고 직후 여러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구비와 근로복지공단 내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신청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처리 지연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존 병력이나 과실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다. 김하은의 경우 과거에 디스크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상병에 대해 산재 불승인이 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희태의 경우에는 나이를 문제 삼아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김태현은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허식 || 그때 제가 후산재로 되는 바람에 (후산재가 뭐예요?) 산재가 아직 안 났다가 뒤늦게 산재를 어떻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산재 안 된다고 하다가 근무시간 같은 거 다 따지고 나서 뒤늦게 인정이 되어서 후산재가 된 거예요.

김하은 || 처음에도 산재가 인정이 안됐어요, 목은. 어깨, 이빨 이런 건 산재 인정을 해줬는데 정작 중요한 목

은 안 해 줬어요, 척수가 나갔는데. 왜 안됐냐고 하니깐, 제가 2006년도에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유압술이라고 해서 쇄도 안 박고 거기만 뼈를 채워 넣는 거였거든요, 그게 있어서 기왕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척수가 다쳤는데 왜 그 부분이 기왕증이 되며, 그리고 위치도 틀려요, 척수 4,5번이라고 하면 나는 수술을 7,8번을 했는데... 비싸잖아요, 목이, 이걸 다 불승인 시키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했죠. 이의신청도 어차피 같은 산재팀이니까 안 된다, 영등포 거기도 있어요. ... (수술비가 또 많이 드셨겠네요.) 아휴... 말하면 뭐합니까. (목을 산재로 인정받은 건 언제세요?) 한 2년 정도 흘렀나. 왜냐면 재판이 한 1년 정도 걸렸으니까 (조정 받는 게 1년 정도 걸린 건가요?) 네. (행정소송을 해서 조정을 받은 거죠?) 네, 수원에서. ... 병원비 나온 것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 다행이죠 뭐. 두 번째 수술할 적에는 산재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기왕증이라고 하니깐, 개네는 무조건 불승인 내고 봐요, 정말이에요, 무조건 불승인 내고 봐요, 네가 소송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라, 정말 힘들었어요.

박희태 || 공단에 의사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불승인 나는 데까지도, 그 이유가, 급성으로 터진 건 맞다, 그러나 박희태씨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하다 터진 건 맞지만 퇴행성도 있다, 나이 때문에. ... 산재 결과가 6월 21일인가 났어요, 공교롭게 딱 맞춰서, 그런데 불승인이 난 거예요. 승인은 안 났고 복직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퇴사할 마음은 없고. 그리고 나서 제가 노무사를 선임한 거죠.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

공단 남부지사 B주임이, 저한테, “선생님 승인이 안 났는데 질병으로 다시 한 번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승인이 날 수도 있어요” 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 미쳤어? 나는 다쳤는데? 나 질병 아니야. 그랬다가 제가 고민을 했죠. 다쳤는데 질병으로 신청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떡해. 해야죠. 그래서 한 거예요. 질병신청하면서 노무사 선임을 했고, 노무사한테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질병으로 신청하고 이의제기도 합시다, 해서 두 가지 다 진행하고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사자문회가 결성됐어요. 결국 거기서 만장일치로 불승인을 내린 거예요. “알았어, 이유가 뭔데?” 했더니 딱 한마디로 해줬어요. “재해경위 불확실.” 다쳤는데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다친 건 맞고 진단서에서도 분명히 급성이라고 적혀 있고, 상식적으로 급성이 질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불확실해? 물었더니, 전에 완구회사 다녔을 때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은 거 한 번, 다치기 한 달 전 동네 정형외과에서 받은 물리치료 세 번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그 날 다친 건 맞지만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서 다친 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아프셨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인간이 약해질 때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경호 || (승인을 언제 받으셨다고 하셨죠? 승인) 2016년 3월 (수술도 그때 하시고) 네 (그럼 두 달 정도 걸리셨나 봐요). 제가 한국말 잘 몰라서(웃음) ... (산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린 거... 3개월이나 걸린 거

김태현 || 하루 쉬어도 되는 건데 나는 반드시 출근했어야 하는 조건이었고, 가려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하기로, 고의적이다, 범법자다, 이걸로만 불승인 났거든요. 내가 신호위반한 내 잘못은 잘못된 게 맞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치료비도 지불했고, 보험 처리했고, 법적인 절차도 다 밟았는데, 검찰청에서 약식기소해서 벌금까지 다 냈어요, 신호위반을 했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범법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꼭 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한 게 고의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남 신호위반한 차를 들이받고 드러눕지 미쳤다고 그 새벽에 목숨 걸고 달렸잖나.. 그런데도 그렇게 판정 내린 것에 대해서... 1차 판정을 그렇게 받으니까 재심 신청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 아니요, 저 혼자서 다 했죠. 사고 난 거, 출퇴근한 거, 내가 회사에 있었다는 거, 이런 서류를 내가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안 가르쳐준 부분은 안 가르쳐주더라고 전달하고. 울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더니 그 결과가 참... 늦어지더라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나와야 된다는데, 경찰 판정에서 나와야 된다는데 그게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미뤄졌어요.

김미희 || (바로 산재 신청을 하셨어요?) 금방 안 되더라구요, 산재 신청이. 산재 다친 경위하고 서류도 꾸며가지고 그러다보니까 4월달이 지나가버리더라고요. 5월달 되어가지고 현장 사진도 찍고, 다친 경위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5월 20일날 산재 신청을 했어요. 울산고용복지센터에. 그것도 5월 20일에 넣어도 금방 안 되고 계속 오라오라하고 우에 다쳤냐고 문의하고 답변하고 그랬어요. 복지센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왔다갔다 하

다보니까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8월1일에 현장 조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8월 1일에 나온다고 하더니 7월 말일 쯤 되니까 8월 1일에 못나오고 8월9일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9일에 나왔더라고. ... 서류 해가지고 복지공단에서 가져갔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8월 20일날 연락이 또 왔더라고요. 이 서류를 부산에 보내야한다고. 울산에서 처리 못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심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8월 20일에 부산에 서류 보냈다고 안내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부산에서 심의가 20일 아니면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달 말일이나 9월 10일경 되어야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② 청구 단계에서도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

청구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과 승인까지의 기간 지연은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심화한다. 산재 승인으로 급여가 제공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을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래석의 경우 결국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비급여와 산재 승인 이전의 병원비 정산으로 인해 가족의 도움과 더불어 기존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하식 역시 다친 이후 병원비 마련을 위해 본인의 자산을 처분해야 했다. 이유의 같은 경우도 산재 승인까지의 생활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진호는 병원비를 낼 여력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기도 했다.

아직 산재보험이 승인되기 전에 미리 부담해야 하는 요양급여 분의 병원비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들어가는 치료비용도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 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법률비용이 발생하고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산재보험 승인 전의 모든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산재가 승인되었지만 이후 후유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부분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하식의 경우 공상 처리를 했는데 예상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서 사실상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재활치료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김래석 || 나 소개시켜준 형님도 도망갔어요. 비급여 같은 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처음엔 저희 엄마한테 50만원 30만원 부쳤대요. 저는 가끔 통화는 했어요. 병원에 두 번 왔나 봐요. 도망갔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일당 미수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전전 현장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으려고 그 현장에 간 거였으니까. 왜냐면 이 현장 끝나면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게 많았는데 어차피 이 사람이 불러서 간 거니까 내 공사로 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기잖아요. 산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엔 산재가 안 됐어요. ... 어떻게 해서 몇 달 만에 산재가 된 거예요. 그동안이 비급여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엄마가 엄마 카드로 하고. 내 통장에도 있긴 있었는데 난 누워있으니까. 비급여도 몇천 만 원 나왔거든요 ... (병원비니 생활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면 식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정말 식구들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음... 중환자실에 3개월 있다가 일반병실로 가고 나서는 정신이 있으니까 얘기 듣고 내 통장하고 카드를 엄마한테 빼 쓰라고 했죠. 그리고 집도 사무실도 빼서 보증금도 빼고, 오피스텔도 빼고, 다 뺐어요. 손해보고 뺐 거죠. 급하게 급매, 원래 계약기간이 안됐는데 보증금 빼려면 급매로 내놔야하잖아요. 다쳐서 누운 상태로 했어요. 그때 정리할 건 짝 정리했죠. 저도 돈을 만들 건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이하식 || [공상으로 받은] (180만원보다 많이? 대략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영수증 보니까 9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80만원으로는 턱도 없는 돈인데. 수술만 받고 땡이 아닐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재활치료 받고 있거든요. 계속 몇 개월씩 (목발을) 짚고 다니다보니까 인대도 늘어나고. 염증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이유이 || (2월 말 3월 초 산재 통보받기 전이 가장 힘들었겠네요) 정말 통장에 4만원 밖에 없을 때는 정말 암담했어요. 암담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자꾸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길 가다가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한 번 해봐야 되고, 이것도 산재가 맞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아, 갈 길이 멀고 힘들고 힘드네요.(한숨)

이허식 || 비급여, 의료보험으로 해서 돈을 저희가 먼저 했다가 나중에 받았죠. 제가 갖고 있던 거 갖다 팔고 해서 병원비 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김하은 || 퇴원하기 이틀 전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가서, 내가 교수님(의사)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4개월씩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대요, 물론 많이 다쳤지만, 교수님이 이만 퇴원 하셔도 되겠다 했는데 제가 퇴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병원비 때문에 퇴원 못한다고 말은 못하겠고, 돈이 아직 덜 준비되어서 그렇습니다. ... 회사에서 하는 말을 끝이곧대로 들었어요, 언제쯤 될 꺼다, 언제쯤 될 꺼다, 수십번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개네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날 가서 제가 조합장한테 큰 소리쳤죠, 그 다음날 와서 산재 처리를 해준 거예요.

김태현 || 팔 같은 경우는 회전이 다 안 돼요. 의사는 도수치료를 받아서 돌아오게끔 하라는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도수치료가 자동차사고(자동차보험)로 처리하다보니까, 생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 지금도 A병원 나머지 돈을 못 내고 있어요. 병원비만 6-700만원 들어갔으니까.

이진호 || (대출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살아야 하잖아요. 일시불로 그때 입금해 준 거, 8월달에 해준 거, 7000만원 좀 넘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는 치료비, 생활비 등등 모자르죠. 애들 고등학생인데 돈 많이 들어가요.

도환희 || 그건 맞는데. 어떻게 할까 아직도... 그것도 그렇고 나 처음에 입원하고서 한 9일인가 돈이 날아왔어요. 병원비 중간정산해달라고 해서 내가 회사에 이야기했어 그때는 산재하기 전이지. 차장이, 90만원인가 나왔대요. 그때는 공상하자는 거니까. 그러더니 카드로 90만원 끊어서. 내가 산재 처리 한다고 해서 나중에 비급여가 금액이 나오는 거야. 여기 1층에 산재과 갔더니 하는 말이 카드를 취소를 시켰대요.

이진호 || 변호사가 회사에 민사로 소송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비용과 얼마에 대해서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병원을. C병원을 지정했어요. 검사 항목을 5개 받았어요.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성형외과 등등해서. 한 과목에 백만 원 씩이에요. 그것도 제 돈.

③ 병가 부족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unmet needs)

산재 노동자의 불충분한 치료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회사의 복귀 압박 때문에도 벌어진다. 김주석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이진희의 경우도 회사의 출근 압박으로 의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게 된다.

김주석 || 그 뒤로 제가 근무를 하던 중에 첫날은 사고가 났으니까 입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흉골 두 개하고 갈비 하나가 부러졌었거든요. 갈비 두 개 흉골 하나인가? 부러졌는데 일주일 입원했죠. 근데 사장이 근무하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직원이 왔는데, 제 대타 직원, 잠깐 일할 임시직원 왔는데 와서 교육 좀 시키고

그러라고,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일주일 입원했는데, 가슴 붓대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갔죠.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사장님한테 말 하고 일주일 입원하고 일주일 근무하고 안 되겠으니깐 일주일 더 입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입원했는데, 보험료가 나왔어요. 저도 박았지만 제 뒤에서도 과속을 해가지고 저를 또 박았거든요. 가운데 끼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뒤차에서도 합의금이 나왔어요. 제 치료비, 그것도 사장님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진희 || (수술하고 입원은 몇일 동안?) 2주인가? 출근압박 때문에, 현장 소장이 하도 그래서.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 의사가 퇴원 못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일찍 나왔어요.

④ 산재 청구 과정에서 회사/동료와의 관계 악화

산재보험 청구 이후 혹은 승인을 받고 나서도 산재 노동자의 어려움을 계속된다. 불충분한 치료와 회사 복귀 이후에 트러블메이커라는 인식으로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더 나아가 보복성 해고를 경험하기도 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 청구로 인한 직·간접적 불이익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한 참여자도 있었다.

김진이의 경우 산재 청구 이후 복귀한 직장에서 업무 변경, 직·간접적인 해고 압박을 받았다. 박희태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병가를 사용했지만 기간이 길어지자 회사는 아파도 복직하든지 퇴직하라고 선택을 강요했다. 이후 병가 연장이 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 된다. 이하식의 경우에도 재해 이후 회사에 재입사했지만 사측은 병가 사용을 거부하며 퇴직을 요구했다. 김호식의 경우도 산재 이후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가 충분히 없다고 했지만 회사는 냉대했다. 김주석의 경우 재해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산재 노동자의 어려움은 퇴사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유이의 경우는 자기가 산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유사업체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이하식의 경우도 주로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정래의 경우는 유례없는 수은 중독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였다. 산재보험 외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협조적이었던 원청 회사가 예상보다 보상금액이 높아지자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호식 ||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근방에 정형외과에 제가 돈을 주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백 기간 동안 왜 낫지를 앓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뉘앙스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 A대병원에서 2013년 12월 16일 수술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낀 거예요. 내가 피병을 부린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왜 계속 병원을 다녔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A대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가자고, 나 진짜 아프니까 간다고.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요, 인대가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간병인을 붙여줬어요, 한 1주일 정도. ... 제가 산재 처리를 요구했어요. 요구를 하니깐 안 된다고 짜증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산재 신청 함.) 2014년 1월 말에 산재 승인이 떨어졌어요. 내가 계속 무조건 산재 해 달라. 개네는 안 해주려고 하는데도 제가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산재를 받았어요. 제가 울산 갈 때 돈을 하나도 안 갖고 갔어요. 울산 올 때는 회사에서 차비도 다 줬거든요. 공장 처리했으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서울 갈 때는) 저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KTX는 힘들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한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니가 알아서 가라, 산재 처리 해줬잖아, ... 한 달이 됐는데 왜 복직을 안 하냐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울산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병원 다닌 기록까지 다 보여줬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 정도면 나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거냐고. B정형외과, 회사 지정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누구 말을 믿겠어요, 지정병원인데, 회사 말을 듣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복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A대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갔어요. 10월인가 11월인가에 갔어요. 거기서 수술날짜를 12월로 잡은 거예요. C인가 정형외과 교수가 수술을 했어요. 회사가 그때 알았죠, 애가 진짜 아프구나. ...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문을 닫게 됐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가보다 하고 그만뒀죠. (문을 닫게 됐으니까 네가 사표를 내라고 한 건가요?) 네. 강압적이었죠. 사표를 어떻게 낼까요, 물어보니까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퇴사처리 다 하고. D중공업은 그런 게 있어요. 출입증을 죽이지 않으면 애가 살아있어요. 군산에도 취직이 안 돼요,

이하식 || (다음에 인수된 회사에서도 8개월 정도 다녔다고 하셨잖아요. 이 회사는 왜 또 그만두신 거예요?) 거기서 나가라고 해서. 자꾸만 몸이 아파서 병가를 신청하니깐 더 이상 안 된다고 한 거지. ... (혹시 회사에서 다른 직원분들이나 동료들이 산재 신청 한다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야기는 했죠. 동료들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복잡하다고. 그리고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이유이 || (산재를 넣었던 이력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진 않을까요?) E에서 저를 자르려고 했었는데 그거 떨어진다고 이야기 했다고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아무래도 E에서는 아마 전산 쪽으로나 막을 것 같아요. 분명해요. 막을 것 같아요. ... 네. 마음이에요. 이거는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회사에서 F테크에서 나를 얼마나 나를 갖다가 얼마나 꺾 꺾듯 꺾어낼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나는 이걸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안 되는데...

김주석 || 내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퇴직금 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 너 나한테 피해 입히고 갔는데 퇴직금이 네 입에서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께쌌더니깐 산재 처리 하러 갔어요. 사장이 께쌌어서가 아니라 난 당장 돈이 없으니까 보상 받으려고 산재를 하러 갔었고, 산재를 하던 과정에 민사가 날라온 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날라온 거죠. 나한테. 열 받으니까 그래 노동청에 가서 고발을 했죠. 사장이 퇴직금 안 줬고 법원에다 민사로 내 퇴직금 걸고 나한테 넘어온다.

박희태 || 피를 봐서 다치는 사람들, 누가 봐도 데미지가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팔이 뻐 건 안 보이잖아요, 본인만 아프잖아요, 그러면 욕을 많이 먹어요. 저처럼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했다고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뒷담화. “재 진짜 허리 아픈 거 맞아? 과거에 사회에서 아팠던 애가 괜히 입사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산재 승인이 나면, 기존 급여의 70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애는 놀면서 돈 받으려고 온 애 아니야?” 이런 말도 들었어요. ... 복직해도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니 일을 못하니까. 의사 판단도 그랬고. 나는 아프니 좀 더 쉬운 일을 달라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선 안 되겠죠, 내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럼 퇴사를 하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왜 퇴사를 해요? 회사 일하다가 다쳤는데 내가 왜 퇴사를 합니까. 나는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회사에서는 사규상 3개월을 최대 줄 수 있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잘렸어요. ... 권고사직인데, 보통 회사에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실업급여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이에요. 코드가 26번인데, 그 아래 카테고리 여러 가지가有大요, 03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돼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권고사직은 맞는데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권고사직이예요. 회사도 바보는 아닌 거죠. 권고사직이지만 실업급여 받게끔 해주고 싶진 않았나 봐요. ... 지금도 회사는 저를 보고 저 진상, 노무사까지 써가면서, 노무사 비용이 200만원인데, 재진짜 징하다, 생각하겠죠. 회사 대표이사하고 저 사이에 내용증명을 세 번 주고받았어요. 저, 회사 상대로 내용증명까지 보냈거든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갈 데까지 가요. ... 팀장이 그랬대요. “개 우리 직원 아니야, 만나지 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는 아파서 다쳐서 수술해가지고 빨리 요양해서 나아가서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 애네들이 아파서 복직만 안 하면 다른 직원들을 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웃긴 건 허리 아파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애가 한 명 있고, 팔 골절된 애가 제 입사 동기인데 애도 자진해서 퇴사하고 나갔어요, 다른 이유 없이 다른 일 하겠다고, 허리 환자 한 명은 복직해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저예요. 허리 환자가 세 명, 손가락 골절 한 명인데, 허리 세 명 중에 한 명 복직, 한 명 자진 퇴사, 저도 결론적으로는 퇴사, 한 명만 복직을 한 거죠. 회사로 보면 네 명 중에 한명만 살아남은 거죠, 애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재 진짜 돌아왔네?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위기 ... “임마, 옛날엔 다치면 자연스럽게 퇴사였어.” 그랬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치면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치면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쓰거나 일을 분담해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팀장이, “임마, 요즘 사회가 좋아줘서 인권 보호다 뭐다, 하니까 너는 좋을 때 들어와서 산재 처리해서 요양급여도 받는 거야, 임마”, 이걸 현장 직 회사는 다 그럴 거예요. 생각해보면 웃겨요, 저 같은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이진희 || 휴무인 직원에게 돈 주고 내 휴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소리 높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고용승계는 됐어요. 제가 산재 신청 못한 게 그 고용승계 빌미로 저한테 협박을 해서 못한 거라니까요.

도환희 || (회사에서 작년에 못 갚은 돈이 있으셨어요?) 갈비뼈 부러져서 대출 받은 돈. 치사하게 그걸 한 번에. 아우 내가 진짜. 내가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원래 작년에 공상 처리 하면서 무급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럼 생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대출하라고. ... 어차피 공상했으면 비급여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 무슨 치료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돈이 2만원 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회사에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말아야 하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2만원 씩 들어가는데 해도 되냐고?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보고 하래요. 이야 그래놓고서는. 누가 그러더라고 산재 처리 해버리면 너는 그때부터 회사에서 사람이라고 취급 안 한 대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내가 손가락 잘리고 올 때도 하는 소리가 나 손가락 잘릴 줄 모르니까 애가 기겁을 하고 온 거예요. 산재 처리 할까봐. 오면서 하는 소리가 거기 누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 회사에서는 나 다친 다음에 차장만 왔다갔지. 나는 그냥 본부장이 왔다간 것도 아니고 사장이 왔다 간 것도 아니고 고문님이, 그 고문님이 사장 오빠거든요. 퇴직하고 고문으로 와 있는 거여.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거에 실망감이 엄청 큰 거여.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8층에 있다가 왔는데, 소방관이래. 이만큼 조금 다쳤는데도 다와.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여. 우리나라 사람들 마인드가 이게 자기들 직원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어.

김진이 ||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더 바쁜 곳으로 배치시킨 거네요?) 네. 왜 나 여기서 찍어야 되냐고 했더니 바뀌었대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요?) 1계산대에서 찍어야 한 대요. 손님들이 1계산대로 제일 많이 오니까 거기 캐셔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한 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1계산대로 갔어요. ... (아프셨던 다리가 더 악화가 되었나요?) 더 아파왔어요. 저는 복직해서 좀 쉬엄쉬엄 하려고 했어요. 제가 퇴사를 안 하고 복직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데 가면 똑같은 일을 할 거고 또 사람하고 적응해야 하니까, 옮기는 게 싫어졌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여기서 몇 년 하다가 안 하게 되더라도 옮기고 싶지 않다 해서 복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재 처리 딱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사무실에서 과장한테 그런 거예요. 권고사직하지 그러냐는 식으로. ... (권고사직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산재 신청 전부터 하던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계속 했지만, 산재는 신청해서 치료 잘 받고 복직하라고 했어요. (복직하라고? 아, 선생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나 보구나. 그런데 복직하고 났더니 일은 더 빠센 걸로 주고?) 건 완전히 싸늘하더라구요. (누구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사장이나 이런 사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동료 분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동료 직원들은 티를 안 내잖아요. 티를 잘 안 내고 그냥 말도, 별로 안 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냥 ‘언니 여기서 찍으래.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기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나 혼자만 복직을 잘못했다는 생각 있잖아요. 복직 안한다고 할 걸, 괜히 복직한다고 해가지고 나만 이방인 같은 취급, 그런 취급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 (선생님 느끼시기에 가장 바쁜 계산대로 배치된 게,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집 부렸기 때문에 처우를 그렇게 받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런 거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저 원래 다 안 나온 상태인데, 제가 복직하겠다고 약속 해서 복직한 거고 솔직히 옮기고 싶은 마음 없었고 똑같은 일 할 거면 하던 데가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계산대를 저를 1번 계산대를 저를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안 아팠을 때도 1번 계산대는 안 썼는데 왜 다치고 나서 제대로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직했는데 왜 바쁜 계산대에 저를 세웠는지.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더 나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키라 면 지킬 것이지 웬 말이 많냐, 혼자만 그렇게 태클을 건다’ 이런 식이었어요. 토를 단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누구?) 과장님.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대로 이야기해야하니까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정래 || 그 분들도 저희가 근로상실률이 손해배상을 근로상실률에 따라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근로상실률이 그렇게 높을 줄 몰랐대요. 보통 손가락 하나 없으면 5%, 손이 없으면 10%, 다리 두 개 없어야 근로상실률이 50% 더만요. 상당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손 2개 없고 발 2개 없어야 근로상실률이 80% 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손 다 있고 멀쩡한데도 84%가 나왔잖아요? 자기들도 민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 그걸 가지고 민사 소송 해보니 소액이 엄청 높아져 버린 거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남영전구도 솔직히 이해는 해요. 멀쩡한데 저렇게 소송가가 높아지니까.

■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산재보험 청구단계의 개선 방안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노동자는 정보 부족, 회사의 비협조,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의 낮은 반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본인의 경험 속에서 겪은 고통을 다른 노동자들과 공유하거나 사회에 제안하고 싶어 했다.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공개해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가진 노동자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현재 각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산재 노동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김호식의 경우에는 본인의 산재 승인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조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하식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등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희태의 경우 병원의 협조가 노동자의 산재보험 청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었다. 김오규의 경우는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있으나, 오히려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권유하여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받는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호식 || 법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쪽(노동건강연대)에서 기다리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산재 노동자분들이 산재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7년 동안 보고 겪어 왔기 때문에 인터뷰를 응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

들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하식 ||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가셨어요?)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쪽에서 무료법률센터 변호사님이 노무사 연결을 해줘서 상담해보니까 노무사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동건강연대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건 A전자에서 조금만 가면 남부근로자... 여기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산재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나 해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떼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검토해본다고. 그래서 떼다 드렸지. 산재 신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산재 신청하면서 B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래이래 가지고 생활비도 좀 안 된다 그랬더니 건강연대로 한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준다고 해서 그 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박희태 || 종아리 다쳤을 때, 제가 허리 처음 아팠을 때 동네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근 못하고 갔던 그 정형외과에서 종아리 산재 처리를 한 거였어요, 원무과에서 퇴원하기 전에 해주더라고요, 산재 신청하려고 하니깐 처리 좀 해주세요, 했어요. 그렇게 해주나 봐요, 종아리도 그렇게 했었고, 저는 그런 식으로 다 하나보다 했죠, 해봤어야 알죠. 이번에도 산재 신청 할 거니 원무과에서 해주세요, 말하고는 거기에 서류를 다 맡겼어요.

김오규 || 회사에서 다쳤든 회사 이외에 출퇴근을 하면서 다쳤든 내가 먼저 산재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회사나 이런데서 사업주가 먼저 '자네 이렇게 되었으니까 산재를 써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죠. 산재 신청하면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사업장 내 직원으로서는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사업주가 산재를 권유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3. 산재 승인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통

면담에 참여한 20명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청구 중이거나 산재보험 청구를 사실상 포기했거나 (불승인 이후 재심 청구를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승인이 불투명한 경우,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은 승인 되었지만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요양이 불승인된 경우),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이어서 장애급여를 수령받는 경우 등 다양한 처지에 처해있었다. 산재보험 청구 이전에 공상 처리를 했거나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했던 노동자도 있었다. 산재보험 수급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쨌든 산재가 승인되고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노동자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나아진다는 점이다.

김호식의 경우 추락 이후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이 치료와 요양,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었다. 김라희 역시 물가와 연동되는 장애급여 덕분에, 노동능력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경제적 곤란에서는 상당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진호의 경우에도 신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까지 산재보험을 통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

김호식 || (핸드폰 기록 보여주며) 처음에 다친 게, 우측 충돌 증후군, 아킬레스건 손상, 전전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당시에 산재 처리 안 하고 공상 처리 했으면 이렇게 절단됐는데 어디 가서... 산재 처리했으니까 이만큼 지원받았지.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많은 돈을 어디 가서... 다 개인 부담해야 되는 건데.

김라희 || (휴업급여는 얼마 정도 나왔나요?) 200의 70프로니까 150만 원 정도 나왔겠죠. (휴업급여는 70프로만 나왔고 지금은 240만원인 것은?) 지금 240만원도 다친 지 6년 됐으니까 임금 상승도 됐고 휴업급여는 70프로지만 장애1등급은 휴업급여의 90프로를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죠, 240만원까지.

이진호 || 그렇죠. 지금도 제가 정신과에 약을 타러 가거나 하면, 산재로 해가지고 치료받고 약 타고 와요. 드레싱도 가면 저는 무료로 그냥 처리해가지고. ... 그렇죠. 산재 기간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다행인게, 산재에서 웬만한 건 지원해주고 수술비 등등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휴업급여 나오고 간병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산재보험의 도움이 충분치 못해서 여전히 고통이 지속되고,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4.3.1. (여전한) 경제적 곤란

■ 여전한 의료비 본인 부담

산재보험 수급이 재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역시 (회사에서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의 비급여, 특히 간병비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컸다.

김래석, 김호식, 이유이, 김태현, 도환희 등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했다. 특히 이유이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왜 본인이 경제적 부담을 해야하는지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다. 비급여 부담은 노동자의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도환희의 경우는 공상 처리를 했을 때에는 병원비 일체를 회사에서 부담해 주었는데 산재 청구를 하고 나더니 비급여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 적용이 더 손해가 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화상 산재 노동자인 이진호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엄청나서 상당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산재보험을 적용한 이후에도 본인 부담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간병비 탓이다. 요양이 종결되어도 여전히 간병이 필요하여 부담이 증가된 경우뿐 아니라, 요양 기간 중에 지급되는 간병비가 현실에 미치지 못해서 월 최대 100만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런 경우 휴업급여의 상당부분을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허식의 경우, 진단, 치료, 간병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메우기 위해 휴업급여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간병비 부담은 간병서비스의 미충족으로 이어지며, 치료와 재활 등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비급여는 김라희의 지적처럼 산재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갈등을 낳는 요인이기도 하다. 요양을 종결하면 간병비 축소로 인해 노동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도 종결을 종용하는 공단에게 노동자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고, 김라희의 말처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복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재정 절약을 위해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해주지 않는 기관으로 비춰지게 만든다.

김래석 || 비급여 받은 게 한 4000 되니까. 비급여만. 생돈이잖아요. 그러고부터도 계속 비급여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간병비랑. 그렇게 따지면 4000이 넘을 거예요. 남들 얘기 들으면 근재로 몇 억씩 받더라고요. 전 근재 그런 거 없고, 다쳤을 때도 안 했으니까. 난 비급여도 못 내는데 무슨 근재냐고. 월급을, 이게 1년에 한 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300까지 받은 거예요. 300 받으면 3분의 1이상은 비급여랑 약값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또 공과금 보험료 있으니까 그런 거 빠져나가고. 계속 나오죠. 종결 불 때까지 나오죠. 재작년, 2018년 작년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김호식 ||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가 다 냈죠. 예를 들어 무통주사, 붕대, 거즈 등등. 비급여만 500만원이 들었어요. 대학병원은 비싸잖아요. 원래 산재보험에서 지원받은 것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500만 원을 내가 낸 거예요.

이유이 || 근데요. 산재를 받고나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술비용이 다 비급여예요. 다 비급여라서 산

제가 되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비급여가 총 얼마나 나왔어요?) 320만원인가? 400만원 안팎이었거든요. 거의 다 비급여였어요. ... 저는 정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산재라는 것도 저는 병원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해라. 그 전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비급여를 도대체 왜 만들어놨는지, 병원비 비급여도 공단에서 다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랑 또 싸워야 되고, 저 같은 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다치고 내 돈으로 내고.

이규식 || (초반에 내신 병원비가 다 나왔나요?) 그것도 요양비, 그것도 공단에 몇 번 전화해서 항의하고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비급여 항목이 있어가지고. 비급여 항목 때문에 몇 번 전화하고 싸웠는데... 싸웠다고 보다는 따지고 그랬는데, 건강보험에도 비급여가 있잖아요. 산재는 비급여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재 비급여 처음 알았는데, MRI하고 나머지에서 처치비용이라던가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받은 비용이 한 70~8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영수증 일일이 다 확인 대조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 아 맞아. 이 얘긴 꼭 해야 되겠다. 그 비급여 문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게 공단하고도 언성을 높인 게 그 거예요. 제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 들어간 상황부터는 통증이 심해지고 정신줄 놓고서 진통제 맞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들었다 났다하고 막, 그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거거든요. 엑스레이 CT, MRI, 경추하고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서 MRI 다 찍고 했는데 그게 비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요양비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게 건강보험에서도 비급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받고 내가 받기 싫다고 하면 안 받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는 건데 산재 사고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서 정신없는 사람이 급여 비급여 따져가면서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그거는 산재는 비급여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급여에 대해서 몇% 지급이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엔 지급이 안 되는데 산재는 그래도 좋아가지고 다만 몇%라도 지급이 되고, 아니 그런 약관에 있는 거나 정관에 있는 거 읽지 말고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항상 같은 말 있잖아요. 본인이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비급여는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실려 들어갈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산재하고 다르면 산재에 적용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도 내는 사람이다. 건강보험료도 내고 산재 두 가지를 다 내는데 건강보험에서 안 된다고 해서 산재도 안 된다고 하면 뭐 하러 산재보험 또 내냐? 이중으로 보험료 내는 거 아니냐? 건강보험에서 안 되는 거 해줘야 하는 게 산재 아니냐? 이게 뭐 산재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죠. 결론은. 몇조 몇항. 몇조 몇항은 집에 가서 국 끓여 드시고. ... 그거 안돼요. 그렇게 치면 산재라는 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건강보험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세금을 이중으로 걷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도 사고 난 걸로 보장해주면 되는데, 물론 휴업급여든 그런 거 자체도 안 되긴 하는데, 휴업급여도 실업급여 있고, 다른 데도 보면 나가는 게 중복으로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4대 보험 다 내면서 중복되는 걸 냈으면 다른 거 근로자에 대해서 만약에 보장을 해주려면 확실한 보장을 해야지 건강보험에서 안 되는거 그대로 산재에서 적용을 시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건강보험에서 안 되는 거 산재에서 10% 해드립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산업재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 뭐 하러 세금을 내. 돈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진짜 필요가 없어. 차라리 건강보험 그대로 적용을 하고 건강보험료에서 몇 천원 더 내는 게 낫지. 사업주가 산재보험 십몇 만 원씩 내가면서 그거 다 국가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공돈 같아요. 왜냐면 일하다 다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은데 많지는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 자체가 어디 가겠어요? 그 돈으로 다친 사람들한테 다 쓰던지 다 쓰는 것도 아니면서.

김라희 || 근로복지공단 자체가 산재 환자는 별로 인식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을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 뭔가를 하는 곳 아닌가요?) 농담으로 근로 '복지'자 빼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치료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종결이라는 걸 보게 되면 산재환자들 같은 경우는 간병비가 반 토막 정도 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간병인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지마비에 간병비를 1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종결이라는 걸 보게 되면, 80만 원 정도로 금액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러면 그 차액 50-60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더 힘들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빨리 환자들을 종결시킬까 애쓰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꽤 있죠.

이희식 || (치료받고 간병서비스도 지원받으신 거죠?) 네. 간병은 A병원에 있을 때는 1등급으로 받아서 210만 원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210만원인데 실제로 나가는 건 270-280 됐단 말이에요. B대학병원에 있을 때 두 달 동안은 1등급으로 받았는데 C병원으로 와서 2등급을 받았어요. 178만원인가 받았어요. 거기다 100만 원 정도를 보태서 간병인을 쓴 거죠. 간병비가 너무 (자부담으로 100만원이나 내신 거예요?) 1등급은 210만원 가까이 나오고 2등급은 178만원 나오는데, 간병비는 월급 식으로 250, 270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휴업급여를 150만 원 정도 받으셨으면 그중에 100만원은 간병비로 쓰고 비급여도 쓰고) 비급여는 원래 저 모아놓았던 돈으로 쓰고 (그러면 산재로 받은 돈을 남김없이 다 쓰시면서 살아오신 거네요. 모자라시죠?) 지금은 모자라진 않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었죠.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상태랑 똑같이, 지금도 움직이는 게 별로 없지만 신체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부족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산재에서는 진짜 간병비 같은 것만 잘 챙겨줘도 환자들이 살아가는 데 솔직히 그런 큰 지장은 없을 텐데, 어차피 이렇게 다친 몸이지만 되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간병비적으로 너무 차이가 커요. ... 일단 간병비가 환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라, 나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뛰가 있어야 되는데, 여건도 안 맞고 그러면 혼자 자기 부담으로 써야 된다는 것도 너무 큰 타격이 오는 것 같고요. 병원에서 치료 같은 것도, 환자라는 사람이, 치료면 치료, 한 마디로 밥이 나오듯이 골고루 한가지뿐만이 아니라 골고루 섞어서라도 운동을 하든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치료를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하은 || (그러면 간병서비스는 특별히 받으신 게 없네요.) 없어요. (실제로 간병인을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 간병비가 7만원-10만원이예요, 하루에, 그걸 어떻게 써요. 돈이 있어야 쓰지. (아내분이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병원생활이 다 합치면 6년인데) 목하고 허리수술을 했어요, 그 좁은 데서 자다 보니까 막 비틀어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와이프도 수술했어요, 아이고...

김태현 || 제가 다닌 병원은 도수치료도 없고. 도수치료를 4번을 끊었더니 22만원 들더라고요. 그걸 10회 한다고 하면 55만원이잖아요. 그렇게 치료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 자동차 사고와 별개로 내가 의료보험으로 근육주사를 맞고 있던 말이에요. 이런 건 어디에서도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이진호 || 간병비는 (산재에서) 안 줘요. 왜냐면 제가 장애도 급수가 있잖아요. 간병도 등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 그 밑으로는 정상이니까 혼자 알아서 하는데, 1,2,3급 정도 되면 간병이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2급이었어요 간병. 왜냐면 다리 못 쓰죠, 이 팔이 안 되죠. 먹는 것도 안 되고 씻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되가지고. 1년 반은 24시간 간병을 썼어요. 그 간병비를 누가 냈냐면 제가 내야죠. ... (근데 산재에서 지원되는 건,) 150만원 안팎으로. 지금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150만원이 되는데, 그때는 150이 안됐어요.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그거는 자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나마 다행인 게 산재니까 휴업급여가 적용이 되잖아요. 산재 종결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월급 받던 거에 70%, 그래서 제가 한달에 300정도. 제가 400얼마를 받았으니까. 70%하니까 300얼마가 되더라고요. 300만원 정도 받는 거에다가 간병비로 나라에서 나오는 게 150만원 약간 되는 거 하면 450이잖아요. 그 중에 간병사한테 350을 주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웃긴 게 돈 쓸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비급여가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 다친 사람들은 다 알텐데, 비급여라고 불러요. 급여는 나라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가는 보험에서 해주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비급여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화상은 엄청나요. ... 안 해주려고 하니까. 더 웃긴 건 여기서, 비급여 발생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화상이 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약품이나 이런 게 국내산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급여가 ... 총 3억 5천 중에 2억 5천은 나라에서 해줬어요. 1억은 병원에서 못해주니까 회사가 내든 니가 내든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1억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했겠죠. 비급여 정산 못하는데, 이만큼 돈 없습시다. 그러면 회사는 ‘알았어, 우리가 먼저 내줄게.’ 이거죠. 회사에서 1억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상관계라든가 앞으로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죠? 이게 얼마의 비용이 더 필요할지도 아무도 계산이 안 돼요. 그걸 법적으로 제가 못하니까 변호사가 개입을 하고 변호사가 금액을 산출했어요. 그러면 금액을 산출한 걸 회사 쪽에 청구를 하잖아요. 제 대신에. 예를 들면 회사 쪽에 5억을 청구했어요, 제가 일 못하고 다친거 등등해서. 한 5억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비급여로 1억 내준 거 빼고 4억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 (아, 지금도 간병사를 쓰시는 거는) 지금은 돈이 모자라서 못쓰죠.

도환희 || (근데 비급여는 산재에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 달랬더니 회사에서 하는 말이 그거 녹음시켰는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안 된대. 산재 했으니까 안 된대. 산재 했으니까 비급여 지원 못해준대.

김오규 || (MRI 한 번 찍으면 최소 50만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수술비의 비급여 품목으로 세계 들어갔죠.

■ 불충분한 휴업 급여

불충분한 휴업급여도 산재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였다. 특히 일용노동자처럼 계절적 요인에 따라 평소의 급여 변동이 큰 경우, 불규칙한 임금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고용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휴업급여 수준이 평소 임금에 비해 턱없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김래석처럼 영세자영업을 하면서 가끔씩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재해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산재보험 수급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손실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근로자재해보험 역시 기업에 따라 가입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불안정 노동자는 그나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는 산재보상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래석 || 저는 애매모호했어요. 사업장은 있는데 사실은 내 현장은 아니고, 내 현장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당으로 받으러 간 거니까, 난 일당을 좀 많이 책정한 이유는 우리 식구들이랑 내 연장, 반장으로 간 거거든요. 안 해주는 거야. 계속. 6개월인가. 결국에는 그 형님 상호로 해줬더라고요.

이규식 || (산재 처리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우셨던 점은?) 병원에 입원하면 어려운 건 없어요. 원무과나 다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다. 일반병원은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산재 병원은, 한 가지 저저는 차후에 이야기인데 산재가 끝나면, 산재가 종료가 되면 휴업급여 자체가 100%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 근로지수 0.73에다가 또 0.7을 또 해서 지금 제가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 받았던 급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정해서 하는 휴업급여를 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53%? 54? 나머지 46% 47% 제가 손해인 거예요. 거의 50%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나머지 50%에 대한 걸 제가 손해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걸 근로자재해보험에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로자재해보험이라는 걸 근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의무고 강제가 아니라 사업주 자발적으로 드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든 사업장도 있고 안 든 사업장도 있고, 드는 사업장들은 거기에서 추가로 그 사업장 상대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자동차 보험처럼. 근데 안 든 사업장들은 소송을 가야 되고.

김라희 || (당시 급여는 어느 정도였어요?) 내 급여는 하루에 23만 원 정도 됐는데 산재로 올라간 거는 그 회사에서 그걸 다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얼마정도 올라간 거야, 10만 원 정도 올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산재 처리는 잘 됐나요?) 일당이 반 토막 넘게 떨어진 상태로 지금 받는 급여가 그렇게 형편이 없게 된 거죠. (지금 받는 급여는 240만원이시고. 그건 회사가 써주는 데 달려있나요?) 그렇죠. 회사에서 이 사람의 임금에 대해서 20만원씩 나간다, 거기에 대한 확인서 같은 걸 써주겠죠? 그런데... 그랬어요... (많이 야속하셨겠네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뚜껑 열려요. 내 일당이 23만원이고, 23만원에 대한 확인서가 됐든 뭐든 내 하루 인건비

가 23만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용직같이 일하다 다쳤으니까 일용직일 경우 한 달에 22일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산재에서, 그러면 400얼마에 대한 돈을 가지고 내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올라간 게 하루 10만 원 정도의 돈을 올렸기 때문에 그걸 20일 정도로 계산하니까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이 사람이 최대 벌 수 있는 돈이, 나는 실제로는 46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재 처리할 때 올라간 돈은 200만원으로 올라갔으니

이희식 || (그 후에 산재로 급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휴업급여를 처음에 받으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었어요. 월급쟁이면 200, 250 고정되어 있지만 저는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몇 달은 잘 되고 몇 달은 안 되고 여름엔 한가하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들어오는 건 250-300 벌었거든요, 월급쟁이가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많이 벌 때는 400-500도 벌었지만 ... (월 얼마 받으세요?) 지금 200만원 좀 안 돼요. 이것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많이 된 거예요. (최저임금의 90프로인가요?) 네. 장애연금.

이경호 || (휴업급여가 160, 1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기본월급에서 (기본월급이 얼마였나요?) 몰라, 회사에서... 우리는 일당을 생각했는데, 사무실에서 어떻게 신청했는지 금액이 적게 나와요, 우리는 몰라요, 월급으로 신고했는지 일당으로 신고했는지... 내가 보니까 월급제로 신고한 거 같아요, 240만원으로. 그 금액에서 70프로 나오니까. ... (실제 받은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되었네요). 네. 우리한테는 손해지...) 360만원의 70프로면 얼마지? (그걸로 했으면 돈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럼 200만원이 넘었을 텐데...

이정래 || 휴업급여가 제가 사고날짜가 4월 15일이잖아요? 그럼 휴업급여를 4월 15일부터 세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아파서 병원을 못 갔잖아요? 쉬었잖아요? 최초 병원 간 날부터 휴업급여를 주더라고. 4월부터 10월이 빈 거예요. 사고날짜는 4월인데 우리가 최초 병원 간 날은 10월이니까 이 중간이 딱 없어져버린 거여. 5, 6, 7, 8, 9, 5개월 휴업급여를 안 주더라고. 그것도 한 2년 싸웠어요. 노무사가. 그래서 그놈을 2년 만에 받았어요. (사고가 4월인데 왜 안 준 거예요?) 병원을 왜 안 갔냐는 거죠. 근데 10월에 가보니까 이미 수은중독은 되어있고 그 사이인데 자기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원칙으로만 따지는 거죠. 근거가 없다. 우리는 병원 간 때부터 따진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사고날짜부터 따져야 한다. 이게... 분명 사고는 4월에 당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일도 다 못했는데 휴업급여는 병원 간 날부터 준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더라고요.

4.3.2. 산재보험 승인에도 지속되는 미충족 의료

■ (재활)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미충족

재해 직후 (응급)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에서 지역적 격차가 있었던 것처럼 요양과 재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전문 병원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접근성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치료과정, 특히 재활 단계에서의 의료서비스 질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산재전문 병원에서도조차 재해 노동자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등 반응성 문제도 지적되었다.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의 본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장애등급 산정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활 의지를 저해하고 온전한 기능 회복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이하식의 경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었고, 박희태는 아

에 지속적 치료를 위해 이사를 해야만 했다. 이규식과 김라희의 경우, 적절한 재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시간에 따라 재활치료가 점차 형식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유이, 김희석 등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진호는 산재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화상환자에 대한 이해가 낮아 걱정 온도 조절 같은 화상환자의 고유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진료와 재활 치료 문제 이외에도 이정래, 김래석, 도환희은 요양 종결 이후 장애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잔존 노동능력과 생활에서의 불편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래석의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상당한 기능 회복을 이루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장애 등급 산정에 불리함을 겪었다. 기능이 상대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장애등급 산정이 생활보장과 재활 동기부여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함을 알 수 있다.

김래석 || (장애등급을 받으신 거죠?) 연금 7급 나와서 조정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적어서. 원래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제가 원래 재활을 안 하고요. 계속 휠체어를 탔으면요. 3급이에요. 3급이면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보이면 안 되는데. 심사 보러 갈 때 간병인도 갖지만, 이렇게 가서 걷는 거 보여줬어. 원래는 보이면 안 되는 건데. 휠체어 타고 가고 그랬으면... 근데 공단에서는 많이 다치셨는데 걸네요? 이걸 보는 거야. 나는 몰랐지. 심사를 당연히... 남들 다 그래요. 병원 선생님도 그래. 왜 7급이 나왔냐고? 7급 이의신청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 이것도 나는 바보처럼 그냥 간 거예요. ... (장애 등급 받으라고 누가 안내하셨어요?) 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공단에서 문자나 전화를 줘요. 주변에서 많이 아픈 척 하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있는 상태 보여주면 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척을 해야 했는데... 원래는 저 같은 경추환자들은 1,2,3급 안에 있는 거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했는데, 저는 특이 케이스잖아요. 좋은 케이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희박하잖아요? 굳이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기 싫었어요. 한 달에 200 차이가 나요.

이하식 || (병원은 지금 어디로 다니시는 거예요? A의료원?) 거기도 다니고 A의료원에 재활치료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B병원 재활학과 거기서 재활치료 받고.

이유이 || 공단에서 다 나오니까요. 없던 어지럼증까지 생기니까요. 전 이런 증상 다 이야기 하는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신경을 안 써주시니까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병원도 솔직히 여기 지역 내 아니면 병원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재 병원 수술한 병원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거기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여기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못 만나 봐요.

이규식 || (치료받으시는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 질은 괜찮으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직업이라... 일을 할 때 안전장치를 안 하고 시간과 돈에 포커스를 맞추듯이 거기도 똑같아요. 산재 전문병원들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해야 될 것 딱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김라희 || (C산재병원으로 오셨을 때 초기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당시에 여기에 와서도 수술 같은 거 계속 하셨어요?) 아니요.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여기서 하는 건 재활이죠. 근력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혹시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닝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죠. 치료는 열심히, 이 병원에서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딱히 별로 마비환자들에게 딱히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고, 혼자 생활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거죠. ...

다치고 5년 후부터는, 선생님들이 붙어서 하는 그런 치료는 다 떨어지는데, 지금은 전기치료라든지 전기... 전기치료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2-3년까지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담당 선생이 붙어서, 다리 접었다 폈다 운동 시켜주는 게 있다가, 점점 그런 게 없어지죠. ... (여기서 생활하시기... 가족과 아예 떨어져서 지내시는 게 그 선택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맞았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충주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시는 게 너무 힘들실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요.) 근데 애나 애엄마가 여기에 와서 (살긴 힘들 거예요.), 충주 같은 곳은 그나마 집세나 이런 게 싸니까 그나마 운영이 되는 거지, 두 집 살림을 해도. 여기 와서 살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족들이 같이 있던 하겠지만 (선생님이 충주에서 지내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자주 가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충주에서 살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허식 || 그렇죠. 울산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시흥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전화와서 이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집이 부천인데 왜 시흥으로 가시냐, 우리 지정병원으로 가야 승인을 내주겠다. 저는 모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기네 지정병원에 가면 과장들도 진급도 빨리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병원으로 가면 수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산재에서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김희석 || 다른 뼈를 하면 염증이 생기고 어쩐다 해서. 그 D 의사가 내가 말한 거예요. 수술 전에 이걸 내 동의를 받을 때 나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 이걸 잘라서 목에다 00했는데, 이 구멍을 있잖아요. 신경이 통하는 구멍을 있잖아요. 그걸 작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생뼈를 깎아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만들 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신경이 그냥 압력을 받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E대병원에서. 그래서 원래 5,6,7 수술했는데, 5,6을 있잖아요. 여기를 툭 끊어버리고 늘귀(늘러) 냈죠. 그리고 3,4도 이걸 끊어버리고 늘귀 냈죠. (이번에 E병원 오셔서 수술하신 거는, 몇 번 수술하신 거예요?) 3,4,5를 했죠. (그 전에 D 의사가 그거를 하신 거가 문제가 있어서 손을 봤다는 거죠?) 네. 거기서 또 늘귀서 구멍을 늘귀 버렸죠. 거기서 말하는 게 구멍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는 5,6,7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 뼈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공간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손 쓰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실한 수술을 하고도 개소리 친단 말이에요. 다리가 걸어다니는 거 봐요. 다리 끌고 다녔어요. 이번에 수술하고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늘귀 놓고 3,4도 늘귀 놓고. 그래니까 이게 많이 호전되었죠.

박희태 || (너무 멀지 않아요?) 네. 그게 어려워요. 9호선 증미역. 8월 3일에 여기(가락시장 옆)로 이사 와서 그 후에 물리치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병원을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정형외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진호 || 그 병원이 화상전문병원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 안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 화상 전문병원은 5개 밖에 없어요. 서울에 3개 있고, 부산에 2개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상전문병원을 가장한 개인 병원이에요. ... 보건복지부에서 니네 화상전문병원 해줄 테니까 산재환자들하고... 산재환자들은 계산이 잘 되잖아요. 산재 처리 하면 돈이 잘 나오니까. 그런데 병원은 돈을 많이 남겨야 하거든요. 돈을 많이 남기려면 수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산재환자인데다가 부위도 많고 수술할 데도 많고 하니까 많이 한 거죠. ... 수술을 웬만큼 하고 덮고 그러면 내보내요. 수술을 할 게 없으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원시켜요. 그게 병원의 실체예요. 근데 그 병원이 유독 심한 것뿐이에요. 어느 병원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 병원이 유독 심해요. ... 산재에서 운영하는 재활전문병원이 거기 있어요. F병원에서도 빨리 돈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압박이 들어와요. (압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냥.

(빨리 퇴원하시라고?) 재활병원 가시죠, 하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게 나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을 아,어를 들어야 않니까? ... 화상병원은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놔요. 열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름이건 겨울이건 에어컨을 틀어요. 그런데 여름에 G병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 에어컨을 날짜대로 틀어요. 온도가 되면 틀고. 공기업이나 이런 데랑 똑같은 거예요. (적정온도 유지해야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음이죠 ... 제가 다쳐서 산재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국가장애 2급을 줬어요. 2급이면 그만큼 제가 다쳐서 준거잖아요. 산재에서는 몇 급 준지 아세요? 산재 장애등급 8급 줬어요. 산재로 8급 주면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 8급

줘요. 원직장 복귀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양손으로 세수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으면 8급 나와요. ... 그리고 저 못 걸잖아요 지금. 이 손으로 밥 못 먹잖아요. 근데 왜 이게 8급이냐 이거죠. 그리고 국가장애에서는 왜 2급을 줬냐 이거죠. 국가장애에서는 저보고 하는 말이 다치신 환자분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일 못하구요, 걷는 거 힘들구요, 그러니까 2급 준거잖아요. 너무 안 맞다 이거죠. 변호사도 그렇구요, 재활병원의 교수도 알잖아요. 환자를 보면 산재 몇 급이 나오는지 알아요. 국가장애를 먼저 신청하거든요, 산재보다. 산재 종결보다 빨리하는 게 국가장애니까. 국가장애를 먼저 받으니까 2급이 나왔잖아요. 주치의 교수가 하는 말이, 산재도 정상적으로 하면 3급 4급 나오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구요. 그 의사가 산재 자문 의사예요.

도환희 || 장애가 아니라니까 내가 참. 그럼 뭐가 장애인 거여? 나라에서는 장애가 아니라 그리고 밖에 일반 사람들 인식은 장애라고 인식하고, 회사에서 뽑는다면 회사에서 이거 장애가 아닌데 회사에서 혜택도 없는데 누가 쓰려고 하냐고? 암만 내가 암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해요? ... 아니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책보고는 나도 하겠다. 그 약자들 도움 주라고 있는 건데 느낌이 그거여. 책보고는 나도 해. 그거 보면서 그거? (매뉴얼? 뭔가 유도리 없이 책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정래 || 차라리 다른 산재 환자처럼 다리가 없거나 눈이 빠져버리면 ‘아, 재 눈이 없구나, 다리가 없구나.’하고 장애등급 딱 나올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재 거기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장애를 신청했더니 대한민국에서 중급속 중독으로 산재,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없대요. 인정을 못하는데 더 웃긴 것은 저희가 두 군데서 신체 건강을, 작업능률을 뭐라고 하죠? 작업? 근로상실률. 근로상실률 평가를 받았는데, 이화여대에서 제가 84%, 동생이 79%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몸 둘 다 멀쩡한데 그렇게 나오니까, 남영전구에서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조대(조선대) 가서 해도 또 다 그 정도 나와. 그래도 인정을 못 하겠다. 저희도 소송을 하고 있어도 좀 답답해요. 사실, 국가 근로복지공단도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못 해주겠다. 그리고 민사소송 하고 있는 것도 다시 검사를 해봐라, 또 해봐라, 다시 검사하라는 게 지금 몇 번 째여. ... 그걸로 시비 거는 거여. 어떻게 근로상실률이 79%인 사람이 알바를 할 수 있냐? 이런 식이야.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 애들하고 잠깐 외출하고 나온 사이에 또 찍어서 걸어 다니는 거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찍어가지고 또 법원에 제출했더라고. 봐라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다.

■ 산재종결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산재는 종결되었는데 재해로 인해 초래된 통증이나 후유증, 재해와 연관되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합병증이 남아 있는 경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재해와 관련한 정신건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유이의 경우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면서 산재 요양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지만 그 기간이 종결될 때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산재 종결 이후의 치료비, 생계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극심한 상황이다. 김래석의 경우도 재해 이후 발생한 다양한 정신 질환이 모두 보장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었다. 김호식의 경우에는 재해 이후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진호의 경우, 화상 후유증에 대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기에 비급여를 감당하며 치료 중이다. 이정래의 경우는 수은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이 있지만, 희귀한 사례라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제를 제공받지 못했고, 후유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정신건강 문제이다. 사고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사고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와 더불어 중도 장애, 사회적 고립,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등에 직면하여 상당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산재보험은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래석 || (정신과 약은 보험이 안 돼요? 트라우마로 인한 건데?) 안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비뇨기과약도 안 되는 게 있고요. 50은 아니고요, 30 안쪽 같아요. 일부터 그래서 그 안쪽으로 만들려고 매번 타지는 않아요. 어차피 비급여인 거 아니까. (필요한데도 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김호식 || 2014년에도 계속 아팠고, 2014년 겨울 즈음에 부천 A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어요. 근로복지공단 B병원에서 요양하다가, 다리가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어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운동치료를 안 해서 통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가 변형이 되고 발가락이 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건비 수술을 했어요.

이유이 || 12월 29일 날짜서부터. 제가 종결이 7월 말일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허리가 지금 많이 아파요. 아픈데 공단 쪽에서 저번에 의사 자문 그거 열어가지고 원래는 6월 말일날인가 종결인데 제가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한 달 더 해줬어요. 저는 지금도 현재 더 아픈 상황인데 종결을 하겠다고 종결을 해버리겠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전도 검사를 받으래요. 받았는데 5번 신경이 확실히 손상이 됐대요. 거기서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뭘 어떻게 방법도 모르고 물어볼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지도 모르겠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척추 오른쪽 4, 5번. 근데 수술하고 나서 왼쪽도 당김 증세가 생겼어요. 이거는 수술이 잘못된 건지 어찌 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없던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저만 미치는 거죠.

김주석 || 그건 잘 모르죠.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 했죠. 보험 처리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지. 돈도 없고 치료도 좀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몸도 계속 아픈데 치료 못하니까 통원 치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사비로 계속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가 계속 몸이... 왜냐면 쉬지 못하니까 뼈가 안 붙더라고요. 폐도 아프고. 폐 쪽으로 찢리니까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임신했었는데 그때 유산 돼가지고. ... 그렇죠. 근데 거기 일할 때는 퇴사하기 전에는 몸이 숙달되어가지고 쉬었는데 다치고 나서 제대로 치료 못하니까 그게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이허식 || (갑자기 퇴원하라고 해서 방을 얻어서 계시는 거구나. 계속 병원 치료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렇죠. 지금 저는 상체까지 마비라. (혼자 지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간병인이랑 둘이서 살고 있거든요.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013년에 사고 나고) 2017년, 2016년인가, 7월인가 8월인가.

김태현 || 뼈는 나왔는데 근육이 형성이 안 되었는지 아파요. 지금도 생돈을 들어서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다른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직접적인 마취진통제를 맞고 허벅지에 맞고 다니고 있어요. ... (그 쇠는 평생 몸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오, 제거 안하면 부식이 된대요. 나중에 염증이 생기면 치료가 더 어려워진대요. 1년 지나서 제거하는 게. 산재가 안 되면 내가 생돈 들어서 제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 제거를 안 하면 염증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한다길래 제거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카드빚을 내서라도 제거는 해야 하니까,

이진호 || 대신에 산재를 종결하면 뭘 남겨주냐면, 합병증이라고 해가지고 산재상태에서 따라 틀린데, 짧으면 6개월 주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2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저는 화상이니까 이게 평생가는 치료다 보니까 일단은 2년을 받아놨어요. 드레싱이라고 하죠, 닦아내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이런 과정을 드레싱이라고 하거든

요. 이런 과정을 앞으로 치료를 받아라, 정신과도 마찬가지로. 화상치료는 1년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는 2년을. 제가 지금 정신과 약도 먹고 있는데.

이정래 || 제 약통 보면 이만한(A4 사이즈) 한 게 두 개나 있어. 하나는 심장 수술한 약, 하나는 수은 중독 약, 맨날 먹는데 거기에 보면 통이 또 있는데 그 통은 수면제 약 수면제는 2주 밖에 안 지어주더라고. 지금은 산재가 안 되니까. ... (약을 먹어야 통증도 완화가 되고 치료도 되고 하는 걸 텐데, 못 드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4월까지 먹었어요. 심장 스텐트 수술한 것도 작년 12월이거든요. 몇 개월 안 됐어요. 7~8개월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스텐트도 합병증이라고 인정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약 따로 먹어야지. 그놈 약 먹어야지. 병원 약만 한달에 거의 70~80만원. ... 근데 입원 치료를 했어도 이미 때를 늦어져 약이 없었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수은을 치료하는 약이 있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수입도 안 하고 약도 없고, 독일인가 약이 있대요. 한 알에 120만 원이래요. 그 놈을 수입을 할 수는 있는데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게 한 몇 년 걸린대요.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도 없었을 뿐더러 약이 있었는데 수입할 수도 없고 비싸고 그랬어요. (근데 필요한 약인데 당장 사람이 아픈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때를 놓쳤을 뿐더러 약도 없을뿐더러 때도 놓쳤다. 수은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약 먹는 게 통증완화약, 신경안정제 그런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웃겼죠. 병은 걸렸는데 약도 없고 치료시기도 놓치고, 어쩌란 말이야?

■ 때 이른 업무 복귀로 충분한 요양 불가능

회사가 업무 복귀를 압박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돌봄 책임 때문에 충분한 치료와 요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주석의 경우 충분히 치료 받지 못한 채 회사의 압박으로 복귀했다가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김진이의 경우도 아픈 걸 감수하고 직장에 복귀했다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이규식의 경우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게 된다.

이규식 || (입원 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아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애들을 혼자 키워요. 딸 둘. 꼬맹이들이 어려서 5학년 3학년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을 그런 게 못 돼요. 이주 조금 넘게 있었으니까,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더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나왔어요.

김주석 || 회사는 다녀야 되고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얼마인데 저희가 50% 지원해서 자기들이 50%에 대한 보상을 금액으로 정했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도 사장이 퇴사하니까 알죠. 말은 그래요. “어찌 퇴사했나? 더 일하지.” 말은 그래요. 과장은 나한테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과장이 임의적으로 나와서 일하라 그랬겠어요? 아직 회복이 아예 안 됐죠. 일주일 입원하고 일주일 나와서 일하고 다시 일주일 입원하고 나와서 있었으니까. 불지도 않았어요. 가슴에 압박붕대 감고 있었어요. 무거운 건 많이 안 들고 따라다니면서 잔 것들 들어김고 그랬죠. ... 아무래도 여기 다치면 움직이면 아프거든요. 탑차가 승용차만큼 편안합니까? 도로도 뭐 시골길이라 도로같이 편편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만둔다고 했어요. 몸은 안 낫고 있지, 병원에서는 적어도 못해도 한 달은 입원해가지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붙는다고. 거기서는 말했듯이 일주일 만에 나오라고 하니까 뭐 진전이 없죠.

김진이 || 그 다음날은 제가 앉아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픈 걸 아는데 제가 질뚱거리면서

다녔어요. 손님들이 이때까지 앉아서 일 안하던 캐셔가 갑자기 앉아서 하니까 막 거부반응 보이듯이, 저 캐셔만 왜 앉아서 찍나는 식으로 이때까지 안하던 일을 한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일어나서 짝 다리 짚고, 한쪽다리에 힘을 실어가지고 왼쪽다리 오른쪽 다리 다 부딪쳤지만, 왼쪽다리로 있으니까 왼쪽다리에 힘을 실어가지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다리까지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절뚝거리면서 다녔어요.

4.3.3. 사회적 복귀 어려움

■ 장애로 인한 복직 혹은 구직의 어려움

재해 이후 치료와 요양을 마친 노동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복직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에서 중증 장애를 입어 사실상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없는 일부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요양 종결 후 다시금 생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이미 산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숙련·저임금 노동자였던 이들의 원래 일터에는 이미 본인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산재 청구 과정에서 회사와의 마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해도, 충분한 요양 기간 동안 치료와 재활을 하지 못해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거나, 남아있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복직하거나 비슷한 업종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지만 산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산재보험의 직업재활 및 취업 프로그램 탓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면담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산재 종결 이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가 실현된 경우가 드물었다.

김희석, 이하식의 경우 이미 본인이 맡았던 일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환희는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일부 있었지만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이미 수차례 다친 경험이 있었고, 산재 청구 과정에서 마주한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 탓에 직장 복귀를 망설이는 중이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사고 이전에 비해 낮아진 본인의 역량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고령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자체가 불투명했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도 이전에 주로 육체노동과 미숙련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자격증 획득이나 사무직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하지만 산재보험이나 여타의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김래석 || (수술) 4번. 지금은... 뭘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많이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 일도 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되죠. ... 빵집도 하고 싶고요. 아니면 편의점 하면서 제가 앉아서 편의점은 할 수 있잖아요. 잠깐 잠깐, 계속은 못하겠지만. 요즘 그렇지 않아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뭐 해볼까. (한숨) 막막하네요. 그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은 당분간은 상태가 더 악화만 안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김호식 || 한 번은 제가 장애를 입었다고 하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후천적인 겁니다. 그럼 뭐하다 다치셨어요? 산재 노동자입니다. 산재요? 그럼 또 다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 소속으로 80만원 받고 역도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이, 저 사람 산재네? 오래 못 버텨, 금방 나가, 이런 마인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물론 일자리를 해줘요. 해주면 뭐하냐고요. (산재 노동자들이 하기) 힘든 일을 시키는데. 몇 개월 못 버티는데. ... 되게 웃겨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고,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회사 측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잖아요. 몇 개월 채용할 동안은 돈을 받으니까 채용했다가 그 기간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싸리 지원금 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하식 || 그 쪽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어요. 제가 산재 신청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 고용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이에요. 다른 걸 뭘 할까하고서. 완전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회복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의사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쭈그러서 앉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이규식 || (앞으로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해야겠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확한 계획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자체가 최소 6개월이니까, 6개월이라는 게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6개월이고 뭔가 들고 힘을 쓸 수 있는 건 그다음에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없어요. 이거 하나 나아 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지.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김희석 ||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신 상태예요? 아니면 회사에 적이 아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회사에서 퇴직을 안했죠.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내 이래서 ...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복잡해요 얘기가. 그 다음에는 내가 마지막 3월달에, 13년도 3월달부터는 안 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랬죠. 이게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병원의 증명도 없고, 진단도 없는데 내가 뭘 일하러 가겠는가.

박희태 || 편의점도 하려고 가봤는데, 그것도 물건을 드는 일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다 못해 남자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대리 기사, 택배? 이런 거 정말 택배 없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직하실 텐데, 다시 사무직 일자리를 알아보실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직은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일을 하든가. 능력은 없지만. 사업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도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찾는 건 계속하고 있어요.

이경호 || 실리콘도 있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드니까. 그냥 유리를 드는 게 아니라 팔(팔꿈치 아래)을 돌리면서 들어야할 때가 많거든요. 두 명이서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팔을 돌려야 돼. 돌리면서 유리를 들면 아파. (더 이상 이 일은 못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이진호 || 장애등급 받았는데. 2급이면 높은 거잖아요. 많이 다친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일 못해요 2급이면. 이 정도 다치면은 회사에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거고, 저는 회사 측에 좋게 이야기해서 저 다치거 이만큼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야기해도.

도환희 || (복직에 대한 마음 때문에 소송과 작년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거군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민이 없었지. 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아니면 회사에서 그러더라고. 회사에서 왔었어요. 몸이 나오면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갔다가 또 문제 생기면 그것도...

김미희 || (그럼 지금 일은 안 하고 계신가요?) 일은 못하죠. 팔이 안 올라가니까. 계속 물리치료하고. ... 팔이 아파가지고 다른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정래 || 일을 해도 쉬운 일밖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못 쓰잖아요? 심장 때문에. 지금은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 (집에선 어떤 거 하세요?) 처음에는 공부를 좀 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눈이 안 보여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접었어요. 눈이 보여야 무엇을 하지.

■ 근로복지공단의 구직 훈련/서비스가 나아졌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은 산재 노동자들의 재해 이후 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자신감 하락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데 매우 불충분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하지 상황에서 요양 종결에 직면한다. 20명의 면담 참여자들 중 단 한 명만이 병원 내 직업, 심리 재활 서비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라희의 경우 병원에서 운영하는 심리재활 프로그램인 목공예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향후 목공예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꿈꾸게 된다. 하지만 김라희마저도 근로복지공단의 구직 서비스와 취업교육에 대해 “전혀 필요 없는 걸”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인식은 이규식도 동일했다.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구직에 대한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 이유이의 경우도 여러 가지 취업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환희도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심리재활이 매우 불필요하게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공단의 구직 서비스가 불충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라희는 근로복지공단이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주변에서 공단을 통해 취업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본인의 경험을 돌아봐도 공단이 취업과 관련해 형식적인 질문과 응답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홍보하는 1:1 맞춤형 직업복귀 서비스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원래부터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게 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

이유이 ||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거의 과정을 몇 번을 했어요. 이제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만 배우라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차단을 시켜놨어요? 4번인가를 배웠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다보면서 아 이 길은 내가 배웠지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리사 자격증을 땀어요. 지금 무거운 걸 드는 게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갔다가 배웠으니까 그만 배우라 라고 그걸 막아놓았잖아요? 이것도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이게 국민인데 사람이 조금 자기 저거를 위해서 조금 그런 거는 막아놓으면 안 되는데...

이규식 || (지금 혹시 구직에 관련해서 도움 받으시는 기관이 따로 있으신 건?) 없어요. 그것도 산재가 종료하

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하는 건데 경제활동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고 경제활동이라는 것도 언제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원밖에 없는데 이것도 노동건강연대 그것도 진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 업주가 산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산재 비협조 적으로 나와서 맨날 며칠을 뒤흠고 뒤흠다가 거기서 어떻게 노동건강연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재인가 그런 거 알아보다가 그거 검색하다가 산업재해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있어? 그 전에 여기 솔직히 관공서 쪽에 구청이나 전화를 했어요. 나 이래서 다쳤는데 애들하고 먹고살 방법이 없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를 못해요.

김주석 ||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돈이긴 한데. 일을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히 앞서 일했던 데가 저한테 잘 맞았거든요. 근무지 환경도 그러고 일하는 패턴도 저랑 맞고 했는데 그런 데를 찾고 싶는데 잘 안 나오죠. 일자리 그런 쪽만 나오면. ... 공단이 있어서. 근처에 엄청 많잖아요. 일자리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단이니까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러지. 안 해봐서 자신이 없어요. 계속 앉아서 뭘 한다는 게.

김라희 || (목공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여기 병원에 심리재활 프로그램으로 있는 건데, 그거 하나는 이 병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근로복지공단이 이후 구직도 지원을 하나요? 취업교육 같은 거) 한다고는 해요. 전혀 필요 없는 걸 해서 그렇지. (어떤 걸 하나요?) “구직활동을 하시겠어요?” 전화는 받죠. 공단에서. 저는 치료 중이라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전화를 끊는데, 정작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겠습니다” 하면 취직할 회사가 없는 거죠. 회사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식이죠. 또 만약에 이런이런 회사가 있다 해도, “저 휠체어 타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편하시겠는데요?” 뭐 이런 식이죠. 좀 있으면 “구직하시겠어요?” “나는 휠체어 환자니까 휠체어 타고 출근할 수 있는 데 알아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 또 때 되면 전화오고. 똑같아요. ... (병원에 선생님처럼 오래 계시다가 종결하신 후에 취직하신 사례를 좀 보셨어요?) 공단 통해서 취직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취직을 좀 하시나요?) 네. (공단이 능력이 없구나.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지가 없는 거겠죠.

이경호 || (구직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을 준 게 있으세요? 회사 알아보실 때) 유리쪽으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자리가 없고, 주야간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애기들이 있어서 안 되고, 어떤 곳은 월급이 너무 적고

도환희 ||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셨어요?) 이게 너무 괴리가 생긴 게 진짜 크게 다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찮아요? 화면 보여주면서 열심히 살라 그거죠.

■ 개인적 회복 노력

치료 이후 직장 복귀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직을 위한 자신감과 기능 회복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의 개인적인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재해 이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에 몰두하거나 식물 재배, 목공예 같은 기술훈련, 다른 노동자들과의 교류 등에 노력하고 있었다.

김래석의 경우 교회를 통해 재해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재해 이후 사라진 사회 네트워크를 대신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김호식과 이진호의 경우 SNS와 공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언을 해주면서 본인의 경험을 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도 고통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김래석 || 교회에서 진짜 먼 거리였거든요. 한 2년 동안 맨날 찾아왔어요.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처음 병원의 안산이었거든요. 그거의 힘일 수도 있고, 의학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담당 선생님은 찾아가면 주기적으로 가니까요. 보면 신기하다고 그래요. 근데 다들 그래요. 신기하대요. 기적적이라고. ... 지금은 병원 친구들이 많아요. 아픈 애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그렇게 위안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몸이 안 좋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견뎌요. 제가 도움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휠체어 탄 형들이 많아요. 하반신 마비 형들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돕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또 그게, 지금 조그마한 다른 교회를 다녀요. 병원교회, 병원교회는요. 구로는 몇만 명 돼요. 근데 병원교회는 다 몸이 안 좋아요. 병원교회는 저보다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다 안 좋은 사람들, 콧줄 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콧줄 끼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간병인이랑 같이 오고, 이런 조그만 데가 낫겠다. 소소한 행복을 찾자 그래요. ... 저도 말을 좀 해야겠네요. 가끔 강아지한테 이야기는 많이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저 거도 좋아해요. 꽃, 식물 키우는 거. 집에 가면요. 화분도 많고요. 요즘은 구피도 키워요. 혼잣말도 하고 정신 병자처럼. 혼잣말도 종종해요. 재밌어. 강아지한테도 하고 구피들한테도 하고 꽃들한테도 하고, 누가 보면 또라이같을 텐데, 가끔 나 혼잣말해요. 밥 주면서

김호식 || 저같이 중증장애인이거나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강연을 하러 많이 다녀요. SNS로 저를 보고 연락을 주세요. ... 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 장애인진흥체육회에서 기업체육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얼마 주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를 저한테 8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돈벌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산재로 50만원 받아요. 연금 50만원. ... 의족이 아프다고 안 차면 평생 못 차는 거예요. 그걸 인내해야 굳은살이 생기는 거거든요. 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군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이것 못하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 처음 독립했을 땐 힘들었어요. 자주 넘어지고.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일주일만 해보니까 또 내 것으로 습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청소, 빨래, 씻는 거. 샤워할 때 어떻게 할 지 다 터득을 했죠. 어머니는 더 자랑스러워하시죠. ... 장난 아니었죠. 무너질 수 없는 게 가족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칭얼대면 어머니는 더 안쓰러워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는 더 뿌듯해하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 어머니한테 성질내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또 받아주고. 아프니까. 절단되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라톤도 하고 역도선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제가 언제 그런 걸 해보겠어요. 운동선수라는 걸 해 보고, 강연이라는 걸 해 보고, 병원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 보고, 모델도 해보고. 몸 관리하려고 술도 안 마시게 되고.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앞만 보고 가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몸만 불편할 뿐이지 다 할 수 있어요.

김라희 ||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치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목공예라는 걸 시작하게 됐는데, 목공예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통증을 이겨내는 데에도 좀 수월하고요, 거기서 성적을 내서 세계대회 선발전을 준비하는 중이니까, 주중에는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오후 4시 반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목공예 연습하고 ...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혹시 이후에 생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직을 하시거나. 대회에 나가면 기능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체육계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일반 구직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취득 하던지,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 제자 중에 세계 대회 1등하고 그런 걸로 작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곳에 가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공방을 할 수도 있겠죠. (산재가 종결되면 이후의 삶에 대해 혹시 구상해보셨어요?) 저는 목공예 내년에 선발전할 거고, 거기에서 잘 면 세계대회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목가구’로 직종 변경해서 그걸로 다시 세계대회 나가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걸로 열심히 연습을 더 하려고요.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5년이나 더..)

만약 세계대회 출전하게 되고, 집안에 금전적인 도움도 될 것이고, 상금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총주에 내려가서 내 연금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을 일정 부분 메꿀 수 있는 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걸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상금이 얼마나 돼요?) 전국대회 1등은 1200만원, 세계대회 금메달 따게 되면 상금하고 20년 연금 포함해서 2억 정도 된답니다

박희태 || 안에만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계속 사람들 만나요. 컨디션 허락하는 한에서. 지금은 송파도서관이 가까워서 책도 빌려서 보고. 이번 노동건강연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알아보고.

이진호 || 다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다치신 분 중에서. 제가 먼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다친 분들이 처음에 다치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서 2-3년을 훌 지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 그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연계해줘서 상담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4.3.4. 부정적 결과와 악순환

■ 장애와 후유증으로 일상 기능 저하

중증 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장애와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재해정도에 따라 일상 기능의 저하 정도는 달랐지만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의 대부분은 큰 작든 일상 기능의 저하를 경험했다.

김호식, 김래석, 이정래, 김라희 등처럼 중증 재해를 입은 경우, 심각한 신체장애, 섭식장애나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환상통을 비롯한 극심한 통증, 시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김래석의 경우 하루에 30알 정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정래는 간헐적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인터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진호는 사고 이후 장애 때문에 혼자 옷을 입는 것 같은 일상적 생활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김희석처럼 보행이 어려워지거나 안면 경련 등 회복이 어려운 기능 저하를 보였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재 발생 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해 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재해 직후 뿐 아니라 산재 승인,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래석 || 그때 떨어졌을 때 머리가 다쳐서 피도 많이 났어요. 음식물을 잘 섭취를 못해요. (목을 가리키며) 여기에 장애가 있어요. (목에 흉터/수술자국이 있음) ... (지금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으세요?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저는요. 저녁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CRP가 있어서 남들이 터치하면 찌릿해요. 힘들어요. 하루에 진통제를 제가 약을 하루에 한 30알 먹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김호식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검색해서 보여줌) 이 희귀병을 얻었어요.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아산병원 다 갔는데 살릴 수 없다고 엉덩이까지 다 절단해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대병원에서 (다리를) 살릴 수 있다, 걸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요. 앞으로 병의 경과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추후에 계속 생각하셨겠네요. 2015년은 계속 치료를 받으신 거죠? 일을 못하고) 네., (통증이 어떠셨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네. 마약 성분 약만 먹으면서

이하식 || 등산도 다니고. 옛날 천식 앓기 전에는 싸이클 등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항상 기차에다가 자전거 실고 천안까지 내려가 가지고, 천안에 가면 산이 타기 좋게 되어 있어요. 뽕뽕 돌다가 오는 거죠. 쉬는 날 되면 애들 뒤에다 태우고 등산도 가고. 그렇게 다니다 천식 앓고 다리 이렇게 되고 나서는 더 저기 하더라도. 우울해지고. 자꾸만 생각을 이상하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신 상태세요? 5월이면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요.) 5월 21이니까 두 달째죠. 일상생활 하는 자체가 다 일이 되어버린 거죠. 옷 갈아입는 거부터 해서 화장실에 갈 때 요만한 턱 넘는 것까지 다 노동이 되고, 그렇게 돼 버렸죠. (치료는 얼마나 더 하셔야 돼요?)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담당 의사가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뒤통치 종골이라는 게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떨 때나 하중을 받는 데기 때문에 쉽게 안 낫고 후유증도 남을 확률이 많고, 보통 2~3년, 길게 가는 사람들은 평생 간다고도 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발바닥하고 여기가 찌릿찌릿한 느낌.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도 발을 심하게 하면 아프고 걸린다고 하는데 뒤통치가 다친 사람들은 그게 거의 100%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2~3년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르네요, 상황이, 똑같이 다쳤는데. 선생님은 통증이 심하신가 봐요. 통증이 없는 하지마비도 있잖아요.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통증이 초반에 비해 많이 나아지셨어요?) 아니요, 점점 더 심해지죠. (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웃음) 의사도 모르니까 (의사도 모른대요?) 네. ... (그럼 잠은 몇 시 정도에 주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통증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는 편이고,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잘까요..? (아이고.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파서 못 자시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죠, 그냥 아파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다고 휠체어에 앉아서 뭘 하거나 욕창이 무서워서 할 수가 없고.. 그런 시간이죠. ... 네. 그러다보니까 잠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그것도 못 잘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못 자니까 못 먹고, 그런 걸로 갔었죠. (못 자면 왜 못 먹어요?) 모르겠네요. (식욕이 없어져서요?) 네. 지금도 식욕촉진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배가 고프다든지 음식이 뭐가 먹고 싶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나마 무슨 약간의 공복감 같은 거라도 생기니까, 그거 덕분에 하루에 한 끼씩 먹죠. (그 약을 먹으면 배가 고프는 게 아니라 배가 비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구나) 약간 그런 (그 전에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셨던 때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2-3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던지 이런 느낌 자체도 없고 그렇죠.

이하식 || 혼자 무서울 때는 몇 번 있었죠. 병원이든 집 근처이든 불났을 때. 병원에서 불났던 적 있어요. 그 때는 정말 아찔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7층에서 불이 나서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못 내려올 정도로, 사지가 떨쩡하면 걸어서 내려갈 텐데 계단도 내려갈 수도 없고, 연기 마셔서 다른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어요, 아래 층에 있던 사람들은 연기는 안 마셨지만, 저는 2층에 있었어요. 7층에 있던 사람들은 다 실려 갔어요. 그럴 때가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잠깐 간병인이 어디 나갔을 때는 무서운 생각밖에 안 들고, 뭘 소리만 나오든 무섭고, 호식이한테도 다른 동생한테도 무서워서 전화한 적도 있어요, 무슨 소리 날 때.

김희석: || 그 전에 여기서 수술 받기 전에는. 다리 계속 끌고 다녔죠. (혼자서 걷기는 하셨어요?) 네. 걷기는 걷지. (그런데 많이 힘드시고?) 다리가 거들거들. 허벅다리가 허덜허덜. (지금 얼굴이 약간 떨리시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사고 이후에?) 다 사고 후유증이에요. 신경을 건드려 봤단 말이에요.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 손상이라고 썼어요. 척수손상, 신경손상.

이경호 || (팔이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팔을 돌릴 때 불편해요. (어깨를 중심으로 팔을 크게 돌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 아래의 팔을 180도 회전하는 동작을 보여주세요) 물건 들 때 팔을 돌려야 하는데 아파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른쪽을 수술하셨죠?) 네. 수술을 해도 100프로 안 낫는대요. 약 먹고, 계속 약 먹을 수도 없고. 한 번씩 약 먹어요.

이진호 || 그렇게 많이 못 걸어요. 지금은 3년 정도 재활을 해서, 처음엔 아예 못 걸었구요. 아예 마비가 되어서 못 걸었고. 지금은 3년 되니까 재활해서 지금은 옆에서 누가 거들어주면 몇 발짝씩은 가요. 그런데 많이 못 가요. 여기에 신경이, 중심이 잡아주는 게. 저는 그게 반이 죽어가지고 넘어가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만히 서 있다가도 특히 눈 감고 서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척수에 신경이 반이 죽어서 그렇다고. ... 신경과 교수님 말로는 신경은 한 번 죽으면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쪽 다리로 내려가는데 보면, 여기를 툭 치면 툭. 이게 신경이 죽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영구 장애가 나왔어요. 이 팔(오른팔)도 거의 다 안 펴져요. 펴지지도 않고 접히지도 않고 이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 (밥 먹는 거 빼고, 옷을 입거나 하는 거는.) 안 돼요. (옷 입는 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한 쪽으로 걸치던가, 아니면 저는 항상 애들한테 부탁해서, 애들이 입혀줘요.

김미희 || 밤에 잘 때도 이쪽저쪽 들지를 못해. 이게 안 돌아가니까. 억지로 들고 이렇게 하면 가기는 가지. 그런데 아프지. 팔이 확 안 돌아가요. 반대쪽 손으로 끌면서 가면 갈수는 있지만.

이정래 제가 원래 눈이 1.5 / 1.5 인데 수은중독 걸리고 나서 눈이 안 좋아져요. 안 보여. 딱 3년, 3~4년 만에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 몸이 이렇게 망가질지는 몰랐죠. 내가 응급실, 119타고 병원 간지가 3년. 숨이 안 쉬어져요. 오른쪽하고 왼쪽 발이 좀 안 좋거든요. 갑자기 힘이 빠지면 탁하고 넘어지고 열 몇 번을 깰스 한 것 같은데, 오른발만. ... (수은중독 때문에 치아도 빠진 거예요?) 네 싹 빠졌어요. 빠와 관련된 것들은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빨이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붓고 (언제 통증이 올지 모르는데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와요. 통증이. 그거 꽤 왔었어요. 수요일날. 그 통증이 오면 많이도 안 와요. 딱 5분 오거든요. 5분 오면 하루를 죽어요. 거의. (어디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전기 쏘듯이. (온몸으로?) 이렇게 발사 싹 되는 거야. 티비를 보면 미나마타병 보면 떨리는 사람 있잖아요? 한 2~3분 사이에 그렇게 떨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죽는 거야. 어디 가서 누가 보면 그런 병 있잖아요? ... 아, 잠깐만요.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경직이 온 것 같았음. 목소리가 떨리고 손으로 다리를 잡고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통증이 온 거예요?) (겨우 말을 꺼내며) 안 되겠는데. (인터뷰 중단)

■ 정신건강 악화

면담에 참여한 산재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재해 그 자체로 인한 충격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한 지지의 부재, 청구 과정에서 겪는 회사, 동료, 병원, 근로복지공단 등과의 갈등, 장애나 저하된 기능으로 인해 치료와 재활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정신건강 문제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기조차 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면담한 노동자 중 일부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고, 자살충동에 대해 언급한 이도 있었다.

약물치료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퇴직금 문제, 임금체불, 주변의 배신, 사고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 산재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조건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산재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본인들뿐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래석 || 제가 정신과 약 먹거든요. 트라우마도 있지만 제가 다치고 나서도 못 받은 거래처 돈 도망간 사람이 많아요. 면회 와서 다친 거 보고 다 밀린 미수금 같은 거,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몸이 이러니까. 못 받은 돈이 꽤 돼요. 웃긴 게 다치고 나서 그 전에 미수금들을 받을 날짜들인데, 제가 다치니까 회수를 못 하고 다쳤잖아요. 배신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저보다 덜 다친 동생도 많거든요. 지금은 병원 친구들 동생들이 많아요. 지금은 제 주위에 병원 친구밖에 없어요. 사회친구는 제가 안 만나요. 고향친구는 좀 만나는데 사회친구는 하나도 안 만나요. 일 다닐 때 사람들도 이제 없어요. ... 하늘을 못 봤어요. 낙하했잖아요. 하늘을 못 봤어요. 계속 고개 숙이고 다니고. 계단도 잘. 지금도 계단 못 오르고. 높은데서 추락한 거니까 그걸 잘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이겨낸 것 같아요. 지금은 잠을 많이 못 자요. 불면증. 하루에 잠을 깊은 잠은 2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계속 깨요. 아무 이유 없이 깨요. ... 얼마나 동생들 있으면 좀 오래 있으면 제가 화를 내요. 미치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 사고 나고. 그 전에는 안 그랬죠. 올라와. 막 화난 것 같이. 집에 가서 엄청 후회하거든요. 근데, 1시간 이상 이야기하면 막 올라와. 험한 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욕은 엄마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욕을. 엄마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혼자 벽치고 그래요. 집에 있으면. 그 전에는 안 그랬죠. 사고 나고 나서 감정 조절이 되게 안 돼요. ...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제가... 정신과 약 중에 우울증 약 가라앉히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좀... 먹으면 몸이 처져요. 못 일어나요. 완전히 정신과 약은요. 완전... 병든 병신 만들어요. 먹으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 근데 거기에 진통제가 8개 있어요. 그걸 안 먹으면 이상하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살이 찢어져요. 그때는 감정조절이 진짜 안돼요. 누가 옆에 있으면... 죽겠어요. ... 신체적인 게 6, 마음이 4.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통증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오면 짜증이 나요. 하아(한숨) 통증이 오면은요. 조절이 안돼요.

김호식 || 우울증도 있어가지고, 왼쪽 팔에 칼 흉터가 있는 게, 죽으려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어요.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밝아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내가 먼저 만나려고 하고. 그땐 사람들 피했어요. 만나기가 싫었어요.

이하식 || (혹시 요즘 기분이 우울하시거나 마음이 힘드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진 않으시겠지만 어떠세요?) 지금 심리상담 받고 있어요. 그쪽에서 뭐라 그럴까? 화산폭발로 하는 식으로 너무 저기 우울증 비슷하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약물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고 있어요. ... 처음 천식 발병하고 나서 항상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자고 광고산까지 올라갔어요. 죽을라고. 그러다가 애들 다 저기하고 나서 정리하자고 마음먹고 내려왔는데, 또 이러니까 마음도 뒤숭숭 하더라구요.

이유이 || 근데 제 형편은 (아이를)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저 이거 끝나면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도 두 달이 걸리고 두 달 넘게나 걸리니 좀 답답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살아서 뭐 하나. 병원에서 치료 받는데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그냥... 피병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깐요. 그때도 살아서 뭐 하나? 내가 그렇게 살았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았나? 내가 거짓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에 확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나? 내가 계속 사람들에게 계속 팔시를 받고 계속 돈에 얽매이고 이게 없이 살 거면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저도 막 웃고 싶은데 자꾸 생활고에 찌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지고 자꾸 표정에서 웃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하더라도 대답을 무뚝뚝하게 하고, 듣는 사람이 안 좋게 보고 하니깐...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작은 목소리) ...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자살 그런 거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저한테 막...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게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이 제대로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놓기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놨으면 그거에 걸맞게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신청하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저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솔직히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놓은 건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거 없거든요.

김라희 || (장애를 받아들이는 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힘들어요. (그 과정에 혹시 우울증 같은 걸로 치료받거나 상담 받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야 거의 대부분 정신과에 다니는 게 일상적인 거고요. (진료 안에 정신과 내용이 있나요?) 그건 개인 선택 사항인데 얼마 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고 다른 걸로 갔었는데, 요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네

요,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정신과에 가려고 했는데 ... (상시적인 통증을 갖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 같네요. 음... 그런데 왜 시간이 가면서 더 힘들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병원 나가서 살아갈 것에 대한 불안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건 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체력이 바닥나면서 의지도 바닥난다고 해야할까요.. 좋지 않은 생각이(자살을 의미) 들어도 그 전에는 '애가 어리니까' 그 생각 하나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요새는 이겨내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초기가 몸도 더 힘들었을 것 같고 통증도 더 심하셨을 것 같은데) 글썄요...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지니까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고

이허식 || 저 원래 진짜 깊이 생각 드는 건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해요. 아,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는 건 말을 아예 안 꺼내요. 간병인도 그렇고 제가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애가 있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깊이 파고 드는 건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해요. (뭔가 해결하는 데에 힘이 드는 문제는 아예 회피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해함) ... 퇴직금이고 뭐고 임금체불이라 완전 한마디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하은 || (산재 사고 이후에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으신 건) 많았죠, 지금도 많아요. A대 병원 아직도 다닌다고 했잖아요. 아주 안 좋게 썼어요.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았거든요. 살면 뭐해요, 평생 도둑이 아니에요, 이거. 수급비 받아서 생활하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삶에. ... 얼마 안됐어요. 심장 수술하기 전인가 후인가. 거실 쇼파에 앉아 있어서 저기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청소기예요, 아니면 큰 옷, 한 번 크게 놀랐던 적은, 옷이 저기에 있는데 꼭 나를 누가 보는 것 같아, 그땐 내가 진짜 놀랐단니까, 섬망도 아니고

김태현 ||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기에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불 확 싸질러버리고 다 죽자는 생각도 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하겠지만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아이들이 더 고통 받는다면 차라리 다 같이 죽자는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해서 살아서 뭐하겠나,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데. 나는 이때까지 법 지키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걸로 먹고 살아왔는데, 세금 다 내고, 세금 안 낸 적도 없고 위반한 적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국가가 안아주지 않는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진호 || 저도 2년 넘게 병원에 있으니까 미쳐요. 병원에서만 나가지도 않고 2년 넘게 있으면 사람 정신이 왔다갔다 해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어차피 종결도 해야 할 것 같고. 산재 종결이 늦어지면 회사하고 소송 문제가 있잖아요. 치료비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런 게 늦어져요. 그 기간만큼 뒤로 가는 거니까. 변호사하고 제가 상의하다가 그러면 일단 종결합시다 해서 8월 31일날 퇴원하면서 산재 종결을 하죠 ... 통증이 아직도 있어요. 화상이기 때문에 가려워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정신과에서도 잠은 자야 되니까 강제로 수면유도제를 섞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거 안 먹으면 아예 잠을 못 자요.

이정래 || (수면제를 드시면 잠이 드세요?) 처음엔 한 알 먹어도 잘 잤는데 그 다음엔 두 알. (먹고나면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멀쩡해요. 왜 멀쩡하냐면 한두 시간 잘 때도 악몽을 꾸니까 악몽 안 꾸고 한두 시간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두 시간 자는 게 진짜 좋더라고. ... 제가 시도를... 했거든요. 자살 시도를. (아 진짜요?) 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우울증상도 많이 오고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그런 증상이 많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 ... 6명 해가지고 30억이 넘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는 소송하기 싫으니까 합의로 가자. 5000이 됐든 6000이 됐든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솔직히 이득이거든요. 엄청 이득이지. 인당 소액 소가가 30억이니까 인당 5억씩은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생활이 급하니까 빨리 합의를 해주라. 우리는 10% 20%만 해도 합의 불 생각이 있었었어요.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4년 동안 이려고 있는 게. ... 당시에는 참 웃겼죠. 병은 걸렸는데 약도 없고 치료시기도 놓치고, 어찌란 말이야? 죽으란 말이야? 저도 수은중독이라는 걸 처음 봤으니까 다 죽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죄인가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산재에서 돈이라도 나오고 보상이라도 받아서 애들이라도 잘 살 수 있겠죠. 이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사회관계망 축소와 사회적 고립

산재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지는 데에는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이 더욱 약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재해 이후 장기간 병원 생활로 인해 가족이나 동료와 단절되고, 사고 이후 경험한 각종 관계에서의 상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관계의 악화, 사회 참여 기회의 부족,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의 부족 등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고통스러운 재해 경험과 이후 상황들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래석, 김희석은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에 대한 말하기가 이런 치유 효과로 이어진 것은 그동안 산재 노동자가 경험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김래석은 재해 이후 지인의 도망, 교제하던 여성과의 이별 속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이해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금전적 지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래석 뿐 아니라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재해 이후 사람이 만나기 싫었으며, 가족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본인을 지지해줄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김라희의 경우처럼 병원 치료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거나 이허식처럼 간병 문제로 가족과 헤어진 경우도 있었다.

가족과의 물리적 단절 이외에 심리적 단절도 다수 언급했다. 주로 생계부양자였던 남성 노동자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돌봄의 대상이 되자 가족에게 냉대를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산재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와 고립은 치료 과정에서의 물리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제도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 재해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해나 지지보다는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서, 남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표현은 평소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고, 타인으로부터 공감받기를 원했는지 보여준다.

김래석 || 누구 만나기도 이제는 그러니까. 다치고서 아가씨도 떠났거든요. 한 1년 있다가 도망갔어요. 하여튼 간 사고 나고 나서 음... 몇 번을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믿고 의지한 사람들도 몇 번 병문안 오더니 연락도 아예. 지금 7년 지나니까 지금은 아예 서로 교류도 안 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할 수

도 있는데. (한숨) 원래 강자가 약자한테 다가서야지 약자가 강자한테 다가서면 좀 그렇잖아요? 전 지금 약자이기 싫는데 상황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이런데. ... 버린 느낌이에요. 주변에도 그런 느낌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 선생님한테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저는 얘기를 들어주는 편이에요. 제가 다치기 전에도 형 동생들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내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깐 또 좋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야(한숨)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식구들한테 하기도 그래. ... 오늘 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깐요.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그동안 말을 많이 안 해서 답답했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마음 편한데 다른 쪽으로 몸이 힘들니까 약간 그런데. 음... 말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이야기 들어만 주시잖아요? 선생님도 힘드시텐데... 편안하네요. 말을 많이 하니깐 속이 후련하네요. 이런 거 몰랐어요. 어디서 말을 할 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힘드시는 거 같아요. 들어주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 (그럼 금전적인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요?) 금전적인 거 말고... 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소통의 자리?

김호식 || (건강하시다가 장애를 입으셨는데, 그때 우울증 너무 심하게 왔을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 만나기도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내 자신이 창피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거의 집에 있고 숨어 있고 싶고, 사람 많이 있는 데를 다니기 싫어했어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날까봐. 피해 다녔어요.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에 나가려고 했죠. 점심시간에는 동네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출근하니깐, 그때 많이 움직이려고 했죠. (친구들은 계속 만나셨어요?) 그뻐 안 만났어요. 이제야 조금씩 만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연락을 해요. 그때는 연락처를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은 연락처 알아봐서 연락을 해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안 좋은 생각만 많이 했어요. 늘어지고 약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몸도 비대해지고... 지금은 더 행복해요.

이하식 || (지금 부인분 혼자서 돈벌이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집사람이, 지병을 오래 앓다보니까 지금 뭐랄까 좀 냉랭하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서로 냉랭하고. (혹시 고관절 다치시고 난 후, 그 전과 비교해서 가족들하고는 어떠세요?) 천식 앓고 나서는 어느 정도 생활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 다치고 나니까 집사람도 냉랭하더라구요. 알아서 하라고.

이규식 ||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가 더 생긴 거.(살짝 웃음)

김라희 || (여기 와서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가족과 떨어지신지) 6년이에요. (네, 사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아이가 한창 이별 때 떨어지셨네요.) 네. 어쩔 수 없죠. ... (6년 동안 여기 근처를 안 벗어나셨어요?) 네 (한 번도?) 네. 2년은 병원에 입원해있었고, 부모님이 서울 사셔서 거기서 몇 달 통원 치료를 해봤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건 통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 (네.. 그때 당시에 치료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생각지도 않았죠. (만약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다면 아예 이사를 올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랬었겠죠.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아내 분도 충주에서 계속 살아오셨던 거구나.) 네. (아이도 종종 아빠 만나러 오나요?) 한 달에 한 번 왔다 가요. 2박3일, 금요일에 와서 일요일에 가요. 지난주에 왔다갔는데. (헤어질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건 뭐, 말해봐야 (뭐하겠어요...) ...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어려우신 게 뭐였어요?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몸에 대한 것 혹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단 가족관계가 되겠죠. (떨어져 지내는 거?) 뭐... 떨어져 지내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혼이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나요?) 네. 대인관계는 다치는 순간 일정 부분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가족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나 하나 다침으로써 온 가족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 가족은 어떠세요? 아내 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잘 버텨내고 있어요. (아드님은 너무 어려서, 아이가 인식하는 모든 순간 아빠는 다 쳐 있었네요, 아이는 어떤가요?) 아까 얘기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빠로선 힘들죠, 나 하나 다침으로써 아이한테 그런 증상이 생겼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게 힘들죠. (그 트라우마는 증상이 어떤 데요?) 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 엄마도 노력을 하고. 일례로 가게를 가더라도, “엄마, 같이 가” 그런 게 있죠. (유지원 보내기도 힘드시겠네요, 처음

예) 네 (아이가 적응하기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보통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시간이니까) 네. (다른 관계는 포기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연락하시거나 그런 친구나) 거의, 아예 단절이죠. 내 스스로도 굳이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 스스로 일정부분 끊어냈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단절됐죠.

이허식 || 이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어차피 간병인이 필요할뿐더러 제 아버님이랑 간병인이 같이 있기는 애매하잖아요. 혼자 있을 테니까, 간병인이랑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빠도 그게 낫겠다고 하시고 (간병인 분은 아버님과 같이 계시기는 왜 힘든 거예요?)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니까. 아버님은 일도 다니고 마치고 돌아오면 쉬셔야 하고 간병인도 편하게 못 있고 ... 아니요, 사는 건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데, 어디 가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좀 힘들죠. (어디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세요?) 놀러 가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워낙 노는 거 좋아해서, 밤에도 누굴 만나고 싶고 어딜 가고 싶고 해도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니까. ... (이런 생활은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병원은 언제까지 다녀야 하고?) 병원은 통원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언제 종결이 떨어져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 그런 건 저는 아예 모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도 살아가려면 제가 의지할 부모님이나 간병인 밖에 없는데, 일단은 저희 아버님도 일을 해야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겠지만, 저도 같이는 아직은 못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버님도 또 일 나가고 하면 간병인이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려고 살아야죠. (쓸쓸하게 웃음) ...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지라기보다는, 인간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서 지금까지도 다 연락은 하고 살아요. 연락 하면 할 말도 이제 없고 너무 오래 이렇게 지내와서 얘기해봤자 만나는 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김희석 || 오늘 대단히 기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싶으셨나봐요.) 이런 말이 A[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었던 의사]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그렇게.

이정래 || 집에 있으면 애들하고 있으면 애들이 날 막 무시하는 것 같고 와이프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수은중독 있으니까 조금 안 좋은 면도 보이고 그러니까.

■ 빈곤으로의 추락

장해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거나 간병비 등 비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자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종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의 다수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재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에 처하게 된다. 이미 재해 이전에 존재하던 취약성이 결합한 결과이다.

생계부양자였던 이들은 산재보험을 수급받더라도 의료비 부담, 평소의 소득보다 감소한 휴업급여 등으로 재해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산재보험 신청 과정 중에 있거나 요양이 종결된 상황에서 무급 병가(휴직)인 경우에는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도움이나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김미희처럼 소득이 전무한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이 있다 해도 김희석의 경우처럼 대단히 낮은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김라희처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자녀 돌봄 때문에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빈곤층으로 추락했지만 산재급여와 일부 사회보장 제도의 도움을 통해 생활을 꾸려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와 급격한 생활수준 하락은 삶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하식 || (지금 회사에는 어떤 상태이신 거예요? 병가? 퇴직하신 건 아니라면서요?) 퇴사처리는 아직 안 한 거 같더라고요. 지금 병가로 넘어가 있고. (무급 휴직상태? 이런 건가요?) 그렇죠. 돈이 안 나오니까.

이유이 || 정말 안정이 없어요.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제가 아프지 말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프면 돈도 깨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전 그게 제일. 그 생각에 거기에서 떠

김주석 || 하아(한숨) 그냥 뭐... 막다 막다 보니까 빗만 늘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카드 값도 항상 우리가 쓰던 만큼 썼는데 생계가 끊어지니까 카드 값도 오마가 되고, 내다가 다음날 되면 똑같이 오마가 되고, 내다가 결국은 막히더라고요. 지금 다 막혔어요. 나지가 않아요.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면, 딸한테도 아무 일 없고 잘 지나갔네 이런 생각들을, 딸이 아파봐요. ... 제 와이프도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었나봐요. 쉬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게 계속 일하라고 할 순 없고, 와이프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때 댈러 오고 살림은 제가 하고. ... 결혼할 때 일 다니면서 결혼했고, 퇴사하고 일도 그만두고 퇴사하고 사고 후유증도 있고 퇴사하고 법원도 지고 퇴사하고 우리 와이프 애도 유산되고, 뭐 빚은 늘고, 물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빚은 생기겠지만, 거기서 나온 뒤로 인생이 좀 바뀌었죠. 좀 내려갔죠. 아주 내려간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살림에 밀어서 내려가면 좀 힘들긴 하죠.

김라희 || 그런 건[일을 하는 것] 애엄마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애 같은 경우가 애가 아주 어렸을 때 다쳐서 (아이가 몇 살 때?) 두 돌 즈음 다쳤으니까요. 간병인이 쉬는 날 애기엄마가 나를 간병하기 위해서 잠깐 와 있느라고 애기 엄마 아는 사람한테 아이를 잠깐 맡기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애가 되게 심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애 엄마하고 떨어지는 걸 아이가 못 견뎌하죠, 힘들어해서 중간에 애기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니까 직장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접고 차라리 없는 돈으로 아껴서 쓰는 게 낫지,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 못 보겠다고 해서 지금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김하은: || 그리고 병원 생활이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나야 뭐 병원밥 먹는다지만, 와이프도 밥 먹어야죠, 일반 생활용품도 사야 되고, 병원에서 살아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병원 생활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심장 수술할 때도 꽤 들어갔어요, 사비로. ...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장애인연금 4만 정도 나와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 (가구 전체에 대해서요?) 네. 솔직히 밥은 먹어요. 나가서 짜장면을 못 먹는다 뿐이지, 집에서 밥은 먹어요. (자제분이 있으시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그 애 키울 때에는 그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개 중3때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어려웠죠. 그래도 자기가 대학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제대해서 지금 독립해서 정왕동인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개한테 야, 생활비 좀 줘라, 이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못하겠어요. 나는 개한테 베풀어준 게 많았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손을 벌린다? 이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수술할 적에도 아들한테 이야기 안 해줬어요, 부담 줄까봐. 마누라가 이야기해서 병원에 왔지만, 나는 진짜 싫었어요, 싫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싫더라고요. (아드님이 예민한 사춘기 때 다치고 집안이 어려워지셔서 마음이 더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아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넉넉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수급자 집안이니까. 나도 개 차비만 주고 딱 점심값만 줬거든요,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개가 알아서 몇 푼 벌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거지로 살았죠, 끝까지.

김희석 || 우리 마누라가 맨날 쓰레기 주워요. 쓰레기 안 줬으면 못 사는데. 박스 주워 살아요. (언제부터 그걸 하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저 한 4,5년 되었죠. 안 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폐지 주워가지고?) 내가 일할 때는 돈이 한 달에 3-400만원씩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김태현 || (총 6개월 기간이 흘러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거 ... 네. 스스로 준비를 한다니깐 그나마... 아이들이 어질어서 위안이 되지만 생활하는 데 교통비라든가, 애들이 써야할 용돈이라든가, 4인 식구가 먹어야 되는 돈,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것도 아직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 신용카드로 계속 대출을 받아오다가 이번 사고로 나온 보험금으로 일정 정도는 갚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신용대출의 이자며... 19프로 20프로니까 1000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한 달에 거의 18만원이잖아요. 거기다 원금도 갚아나가야 되고.. 신용도도 안 좋아서 찢끔찢끔 받다보니까 더 양이 많고. 이번에 보험금 받으면서 대출을 갚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계산해보니까 산재만 받아지면 생활의 어려움은 그나마 좀 풀릴 것 같아요. 병원비 내가 준 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재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안 받으면 진짜 파산 신청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 산재가 안 된다면 몸이 성하지 않더라도 일하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파산 신청할 정도로 힘들어져요.

김미희 || 병가 내면 월급 한 개도 안 받아요. (아 그럼 사고 난 이후로 계속?) 지금 8-9개월 돈 없이 지냈죠. (노동건강연대에서) 몇 푼이라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보내주신 거 외에는 전혀 소득이 없으셨던 거예요?) 5-6개월 돈 한 푼 안 나와요. 회사에서. 그러니 애를 먹죠.

이정래 || ([병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런 것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할 수가 없어. 누가 병원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가서 상담을 받죠.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빨리 민사소송 끝나고 다만 얼마라도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부족

재해 이후 노동시장 지위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빈곤층으로 추락했을 때, 가족 등 사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들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면담 참여자 대부분이 본인 혹은 가족이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를 방문하여 지원을 수소문한 적이 있었고,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다.

이중 일부는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회보장 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장벽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여타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자체도 부족했다. 예컨대 중증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장애인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호식 || 수급자는 안 돼요. 산재 노동자는 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산재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거니까 하나를 포기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90만원이에요. (그럼 산재급여를 포기하고 수급자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비가 훨씬 큰데 왜?) 해 주지를 않아요. (알아보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산재로 받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가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금액도 차이도 제법 많이 나는데...) 어제 돈 들어왔는데 방값 내고 핸드폰비 내면 없는 거예요. 방값이 30만원인데. 짱이에요.

이유이 || 저는 이거[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생계비 지원] 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내려고 했는데 두 달 넘게 기다리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통장에 돈이요. 4만원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고.

이규식 ||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지 않아요?) 제가 걸리는 게 많아서. 제가 채무가 있고, 애들하고 주소지가 다르고. 관리법령에 있는 그대로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일을 하는 게 일용직이긴 한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일용직이에요. 프리랜서 일용직이라고 해서 작년 8월부터 일한 걸 소득신고를 했어요. 그 전에 다른 데 아르바이트 한 게 있어서.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있잖아요? 그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헛웃음) 그 3인 기준에 제가 7만원인가 오바 되가지고 신청을 못했어요.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그래서 전화를 했죠. (방법이 없대요?) 네. 이미 신고가 되어가지고. 법이라는 것도 딱 정해진 그 내에서만 되는 거고, 옆에 사람이 죽어도 법적으로 법령으로 이걸 안 돼 이러면 죽는 사람 그냥 뒤야 하는 거고. 물어봐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러니까 가령 어디 알아보시든지 다른 방법 조차 제시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업무 자체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다 알아보고 발로 뛰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제가 검색 몇날 며칠 안 했으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지원 받는 거 없어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

김라희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등급을 받으시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산재와 중복이 되어서 신청 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산재가 종결이 되어야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산재에서 나오는 간병비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울질을 하게 되죠. 산재에서 받는 돈으로 사람을 쓰는 것과 활동보조인을 받는 것 중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저울질 하게 되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산재를 포기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저울질해 보셨어요?) 아니요. 우리 같은 하지마비 경우는 활동보조 그거 턱없이 모자란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김하은 ||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구직하면 지금 받는 수급비에서 어느 정도가 삭감되냐고 했더니, 깎이긴 하는데 일을 하고 난 후에 병원을 더 자주 간대 아파서, 그래서 자기는 일하길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일자리야 있대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고. 일을 해봐야 지금 받는 수급비에서 10만 원 정도 플러스되는데 약값 들어가면 그게 뭐냐고, 그분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준 거죠. (산재 재요양을 해서 받는 것과 의료보험으로 해서 받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산재도 똑같은 수가래요, 물어봤는데, 의료보험이나 산재나 수가가 똑같고, 비급여 항목 안 주는 것도 똑같고, 상황은 똑같아요, 다만 재요양으로 하면 저게 나오는 거고, 그거, 하루 일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고, 단, 산재로 하면 긴급의료지원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도 나는 산재를 거쳤다가 여기를 가야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리로 가면 왜 산재로 안 하고 이리로 왔냐고 그러거든요,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나보고 어떻게 수술했느냐고 묻길래 내가 산재로 그랬다, 산재 재요양 신청했는데 안 되어서 여기로 신청했다 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부정수급인 줄 알고. 액수가 크잖아요. 전체 치료비가 크잖아요, 심장수술 이번에 4천백만원 나왔어요. 액수가 크니까 그런 건 거른다고, 주의 깊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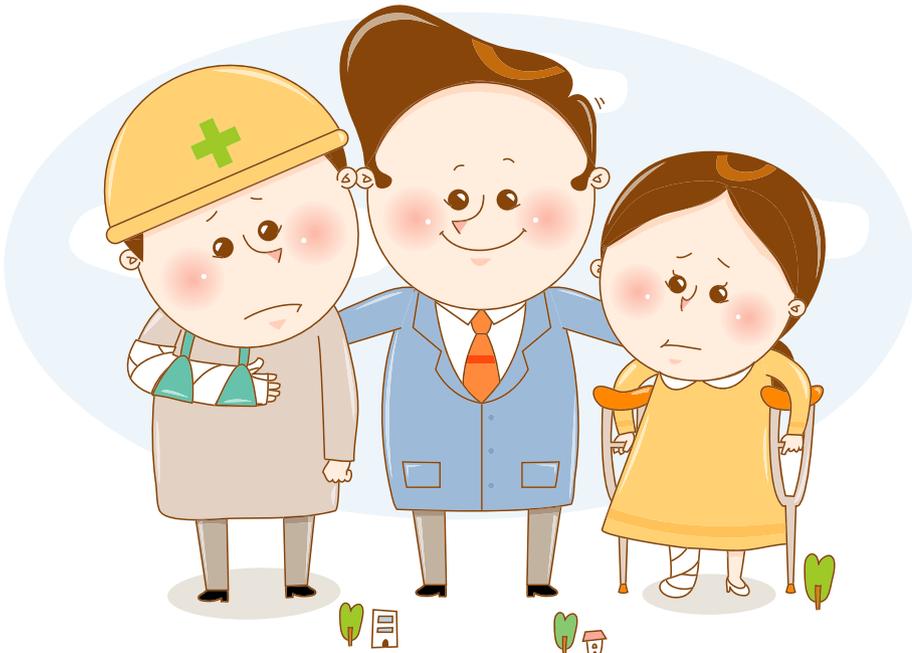
김희석 || 그 어디냐. 동사무소에 가서 이걸 신청했죠. 동사무소에 신청하니까 이게 가서 ‘산재를 가서 신청할 거를 왜 여기와서 하는가’(라고 동사무소 직원이 말해서). 근데 이게 이미 그때 신청이 올라가서(복지부 장애등급 신청을 말함) 6급이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동사무소에서 말하는 게 이게 틀리지 않은가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6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다시 투여(재신청)하면 안 되는가 했는데. ...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거급여, 월세 지원받는다든가 그게 아마 정확한 명칭이 주거급여일거예요. 주거급여 말고도 의료급여라고 또 있어요. 그건 혜택 못 받으신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게 왜 같이 안 됐을까?)

박희태 || 국민연금공단도 가야 되고 건강보험공단도 가야 돼요. 퇴직된 상태라서 보험이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내야하는 돈이 10만 원 이상 나와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다 제 아래 피부양자로 있었거든요. 부모님 보험료를 확인해보니 50-60만원을 내야하는 거예요. 재산이 좀 있으세요. 두 분 다 연금을 받고 계세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정산을 한 번 하셔서 연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 연금으로는 매월 그 건보료를 낼 수는 없으세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매제 아래로 올리든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할지. 임의계속가입자로 해서 부모님을 제 아래로 두면 제가 8만원씩 내면 된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8만원도

커요.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김태현 || 지금 장애등급 받으려고 손해사정사 분하고, 장애등급 받는 기관이 여러 개더라고요. 한 군데서 처리하면 다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장애등급하고 산재의 등급이 틀리고 국민연금 내는 산재 또한 다르고 다 따로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야 알았어요. (그럼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외에 긴급지원 같은 거 신청해본 적 있으세요?) 노동건강연대가 처음이에요. 동사무소에 생계비 지원받으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돈 한푼 못 벌고 지출만 있었다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신상을 다 털어야 되고. 서류 준비하라고 알려주는데 그 서류 받아놓고 안 했어요. 너무 추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130만원 받으려고 오만 신상, 가족 신상을 다 털어야 되는데

이진호 || 저도 그래서 물어봤죠. 동사무소가 집 옆에 있거든요. 처음에 왔어요 그걸 신청하시겠냐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제가 뭐뭐를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집에서 일상생활 하거나 목욕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소소한 일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는?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해요. (그거는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지금 소득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아마 자부담이 조금 책정이 되긴 할 텐데 간병인 쓸 때만큼 큰 돈은 아닐 거고.) ... 동사무소 직원이 몰라요. 맨날 전화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거든.



4.4. 면담 내용 요약과 소결

지금까지 산재 노동자와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피해노동자/환자의 관점에서 한국산재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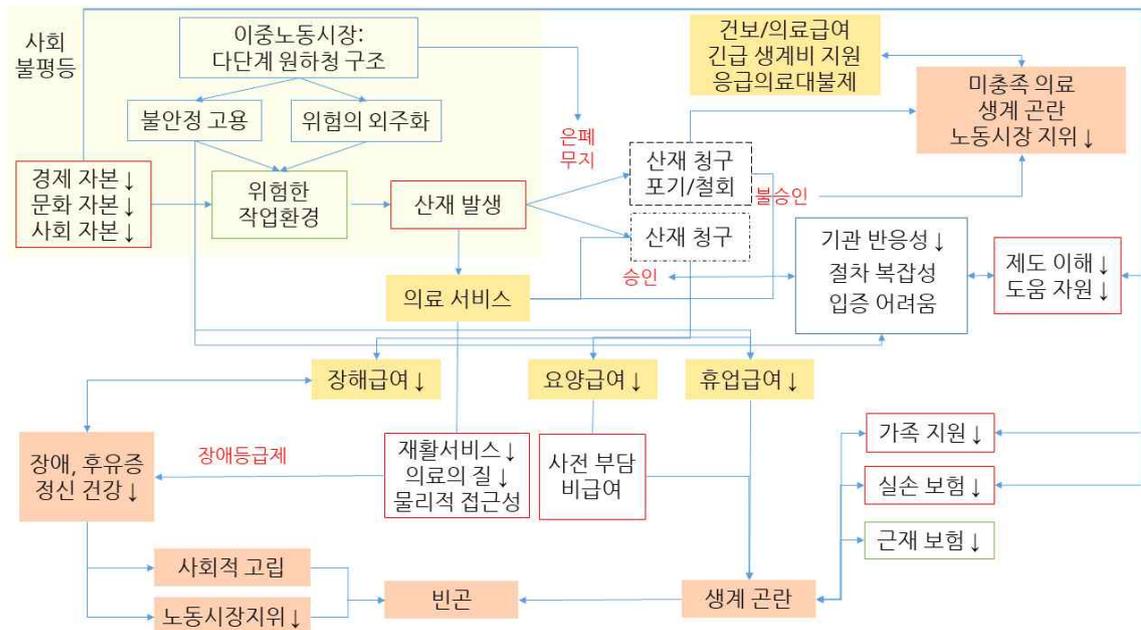


그림 3 심층 면담을 통해서 도출한 현재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첫째,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산재 발생 이전부터 각종 사회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자원이 빈약하고, 이러한 자원의 열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전 과정에 누적되고는 했다.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고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해주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을 구축하지 못한 이들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 고착된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나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며, 게다가 이런 기업들일수록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산재를 경험하고, 충분한 보상이나 치료, 요양을 하지 못한 채 작업장에 복귀하거나 더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고는 했다. 산재보험 제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생애과정에 걸친 사회불평등의 누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산재보험 제도에 접근하고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에 처해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즉, 전문 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렵거나 제도이해의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 재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들, 산재보험 청구로 인해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미 낮은 인적 자본에 덧붙여 산재 때문에 노동시장 복귀가 더욱 어려워진 사람들을 초점에 두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산재가 발생하고 승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재해 발생 직후 긴급 대응 단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시 지역 의료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했지만, 중증 외상에 대한 초기 처치가 잘못되거나 심각하지 않은 외상에 대해서 진단과 초기대응이 부적절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확인되었다. 이 단계는 아직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시점이고, 따라서 사측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일 수술 같은 중증 상황에 닥치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해진다. 게다가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고, 가족들이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나중에 산재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저축이나 여유 자산이 없다면 경제적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나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산재 청구 이전에라도 사측에서 미리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잘 갖춰진 기업복지 덕분에 이 시기를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호의적 조건을 전제로 사회보장 제도가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해도 사측의 압력이나 대체 인력 부족 때문에 서둘러 업무로 복귀했다가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고,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병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도 했다. 재해 그 자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더해서, 재해 초기의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경제적 부담은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건강과 생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 단계는 말하자면 환자에게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까지는 산재보험 제도가 개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한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긴급지원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산재를 청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어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특수고용이나 자영업자 같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노동자 주체 역량의 취약성이 문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산재 위험에 많이 노출된 노동자일수록 대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이 취약하다. 이들은 산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지위 때문에 산재

청구에 나서기 어렵고, 또 산재를 신청하려 해도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거나 주변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자원도 부족하다. 이들은 의료비용 부담이 크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어야 산재를 청구했다. 의료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산재 청구를 권유하거나 안내한 경우, 또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청구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걸림돌이 남아 있다. 우선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고, 자료 수집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주들의 이런 태도는 개인 특성이라기보다 개별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산재보험의 특성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 (사실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규제 당국의 현장 점검 우려, 그리고 하청업체인 경우 원청과의 계약해지에 대한 우려 탓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업의 권위주의적 문화나 반노동정서 때문에 산재 청구에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만이 문제는 아니다. 산재보험 청구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반응성이 낮은 탓에 노동자들은 어려움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영세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불안정고용조건에 처했던 이들은 근무이력이나 산재 정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렇게 주체 요인과 구조 요인이 만나서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는 우선 산재 청구 절차의 지연이나 불승인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한층 심해진다. 또한 병가를 낼 수 없는 처지 때문에, 혹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충분한 요양을 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unmet needs)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재활을 가로막거나 이후 노동시장 지위하락을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산재를 청구했다는 것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동료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해와 과실 산정을 둘러싸고 회사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하든 패소하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 자체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셋째, 다행히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재가 인정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건강회복과 생계유지에 안전망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아도 여전히 경제적 곤란에 시달린다. 요양급여에서 비급여의 몫이 크고 특히 간병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합병증이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데, 산재 종결이나 합병증의 불인정 때문에 부담은 한층 더 커진다. 만일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급여 부분을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휴업급여의 불충분함도 문제인데, 원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이거나 일용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불규칙한 이들은 휴업급여 산정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미충족이다. 산재 종결조치나 앞서 기술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혹은 업무복귀에 대한 압력이나 병가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요양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비용부담이나 시간만이 아니라, 재활서비스의 질과 가용성, 접근성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직업재활까지 고려하여 체계화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병원들 이외에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은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소수의 산재전문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임시로 주거시설을 구하거나 장시간 이동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충분한 기간에 걸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남는 경우 원래의 일터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미 인적자본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재로 인해 장애까지 얻게 된 경우, 그 어려움은 배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직 훈련/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 노동시장 복귀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회관계망이 축소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일부는 극단적 절망으로 인해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하기도 한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기존의 의료비 부담에 더해 노동시장 이탈이나 지위하락으로 인한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이다. 산재보험의 장애급여나 장애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생활지원 서비스 등이 다른 복지제도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며 복잡하고, 또 제도 간 연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5. 결론

앞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논했던 것처럼, 산재보험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 제도로서 꾸준한 개선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처해 있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산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아프고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직접 부담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이들이야말로 산재보험 제도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산재보험 개혁안은 그동안 다각도로 제시되었지만, 우리 연구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특히 산재 노동자의 관점(people centered, patient-centered)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이론적 정합성을 가지고 잘 설계되었느냐의 문제보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때로는 제도 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노동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재(實在)의 일부이다. 사회보장 제도는 대상자의 이런 특성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애초에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산재를 경험할 가능성도 낮다. 마찬가지로 ‘산재 승인률이 높아지고 급여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통계로는 급여가 지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계 상황의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경감해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는 산재 노동자들의 경험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며, 일부는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일부는 당장의 미시적 변화를 요구로 하는 것들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 같은 시민사회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그림4>에 표시된 ①~⑥은 심층 면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기초하여,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종합한 개입의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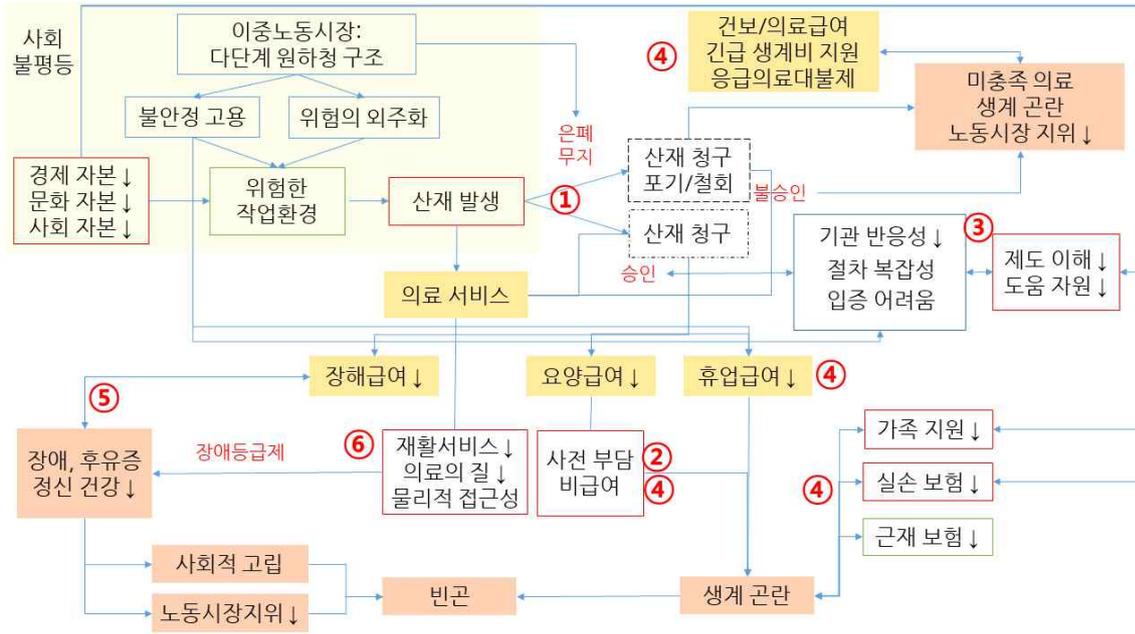


그림 4 심층 면담을 통해서 도출한 현재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입 지점

첫째, 산재가 발생하기 전, 혹은 산재 청구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대비책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한 재해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노동자에게 급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폭넓게 인식되어야 한다. 최소한 노동자 스스로의 심리적 장벽이나 무지로 인해 산재 청구를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의 산재 은폐/회피 압력이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동현장에서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 불평등 때문에 이 또한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어렵다. 불법행위의 발각과 처벌에 앞서, 현장 말단까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부정수급 예방’을 홍보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의 아주 일부만 권리캠페인에 투자해도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대중 캠페인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재 발생 직후 단계에는 무엇보다도 응급/긴급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 아직 산재 청구를 하기 전에 직면하는 병원비 부담, 생계 부담 등을 긴급하게 완충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 절차가 간소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 네트워크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이들이라면, 산재가 승인된 이후 손실을 쉽게 복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결정

적 시기'가 생계와 의료서비스에 중대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피해노동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병상에 있는 노동자나 돌봄 부담이 있는 가족이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당국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산재 청구 단계에서는 절차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가 대리인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이를 대행하거나, 취약노동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산재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대안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요양기관의 확대,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사의 문진과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청구 프로세스 확립 같은 구체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적 대리인 알선의 경우에도, 인력의 확보와 연계망 확립, 보수체계 구축 같은 구체적 세부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과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사업주, 이에 공모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재는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기업은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행정 제재에 대한 우려, 이후 원청과의 계약에서 걸림돌로 작동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 사실을 은폐한다. 예방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형평성 관점에서 개별실적효율을 폐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산재 승인 이후에도 중증 질환인 경우 비급여, 특히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고, 실손의료비를 보충할 수 있는 사보험도 갖지 않은 취약노동자의 경우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산재보험 급여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 수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 건강보험에서 간병 급여화가 이루어진다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중대재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산재보험의 추가 급여가 절실하다. 또한 휴업 급여에서도 불안정 고용과 현재의 산정체계 때문에 불리함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산정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

다섯째, 심각한 장애나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을 위한 케이스매니저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부분의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은 신청주의에 기반하며, 부처마다 또 개별 프로그램마다 연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 당장 제도의 통합적 설계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복잡한 체계를 조율할 수 있는 케이스매니저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의료적 재활과 직업 재활 모두 현재로서는 양과 질 측면에서 불충분하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재활서비스는 질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 가용성과 물리적 접근성에서 취약하다. 일단 공적인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와 병행하여 안정적 재활이 가능하도록 중간집 (assisted house) 형태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주거와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의 편의성, 주거에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산재보험이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도록 설계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사회적으로 기원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낮은 ‘건강 역량(health capability)’은 산재보험의 적용과 이용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을 교정하지 않는 이상, 산재의 발생과 산재보험 보호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산재보험이 작동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맥락과 주체 요인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형평성 렌즈를 통해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